研究報告 100

農水產物 都賣市場 活性化方案

可樂洞 農水産物 綜合都賣市場을 중심으로

金 柄 鎬 (首席研究員) 金 正 璂 (責任研究員) 趙 明 紀 (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則関

머 리 말

1960 年代 이후의 髙度經濟成長過程에서 農水產物 流通分野는 하나의 落 後된 분야로 남아 있었으며, 1970 年代 후반들어 農水產物 流通問題는 生 產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農水產物 都賣市場은 流通機能面에서 核心的인 流通機構임에도 불 구하고 制度市場으로 發達되지 못하고 그 機能을 주로 類似都賣市場에 依存함으로써 農水產物 流通上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背景下에서 政府는 서울市 可樂洞에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을 建設하게 되었으며,이 都賣市場은 우리나라 최초의 農水產物 公營都賣市場으로서 農水產物 流通近代化에 劃期的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도 地方都市를 비롯하여 계속 政府投資에 의한 公營都賣市場이建設될 것으로 믿어지며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의 建設 및 運營經驗은 앞으로 建設될 다른 公營都賣市場의 建設 및 運營經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본 研究는 이러한 時代的 狀況下에서 현재의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을 중심으로 市場建設의 推進過程에서부터 運營에까지 전반적인 現況과 문제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 綜合都賣市場의 活性化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本 研究의 결과가 可樂洞및 앞으로 建設될 公營都賣市場의 活性化를 위한 指針으로 이용되길 바라다.

끝으로 본 研究를 遂行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農水產部,서울市 및 管理公社 그리고 可樂洞 市場內의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5,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築 鎭

目 次

머리 말

第1章	序	論		
1.	硏究의	目的 및	背景	1
2. {	硏究의	內容 및	方法 ·	2
第2章	都實市	市場의 概	丧	
1.	都賣市場	楊의 槪念	· 과 重要性 ·······	4
2.	既存 都	賣市場の) 形態斗 問題點	11
第3章	可樂》	同 農水産	物 綜合都實市場의 開設 및 運營現況과 問題	跳
1.	開設現沒	兄과 意義	{ ····································	18
2. ī	市場의	施設		19
3. î	市場의	去來實態	《分析	24
4. 1	市場의	組織運營	體系	35
5. ī	市場의	運營上「	問題點	45
第4章	去來制	制度 및 で	苛役業務 改善方案	
1. 5	去來制度	隻 改善方	ī案······	47
2 1	50. 学彩	久 孙 羊士	· / / / / / / / / / / / / / / / / / / /	0=

第5章 指定都賣人 및 仲買人制度 改善方案
1。指定都賣人의 集荷機能强化 및 資金循環改善 76
2. 仲買人制度 및 運營改善 88
第6章 農水産物流通關聯法規 및 税制改善方案
1.農水產物都賣市場運營에 관한 法令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107
2 . 農水產物都賣市場 活性化를 위한 稅制改善方案111
附錄:可樂洞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의 事業推進 經緯122

表 目 次

第2章	
表 2 - 1.	都賣市場 類型別 市場數, 1983 12
表 2-2.	青果物市場施設斗 去來量
表 2-3.	都賣市場 形態別 青果物 去來量 比重, 1980 13
表 2-4.	都市規模別 青果物都賣市場 分布, 1983 14
表 2-5.	立地別 水產物都賣市場 分布, 1983
第3章	
表 3 - 1.	可樂洞 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의 主要施設 現況 21
表 3 - 2.	項目別 總事業費 內譯, 1979 ~ 8423
表 3 - 3.	需要豫測을 위한 基礎資料 24
表 3 - 4.	서울市 農水產物 需要豫測 25
表 3-5.	可樂洞市場의 1日 平均 搬入物量, 1985.6.19~11.25 26
表 3 - 6.	可樂洞市場의 物量上場實績, 198528
表 3 - 7.	部類別 1日 平均 競賣實績, 1985 29
表 3 - 8.	主要品目의 都賣市場 價格比較, 青果物, 198530
表 3 - 9.	主要品目의 都賣市場 價格比較,水產物,198531
表 3-10.	移轉對象 商人의 市場場所別 規模39
表 3-11.	移轉對象 商人의 取扱商品別 規模39
表 3-12.	移轉對象 商人의 商人類型別 規模39
表 3-13.	可樂洞 市場의 商人規模42
表 3-14.	入住方法上의 問題點 42
表 3-15.	入住時期의 選好度 42

第4章	
表4-1.	青果物의 競賣可能品目 分類 57
表 4-2.	水產物의 競賣可能品目 分類 58
表 4-3.	龍山圈市場 勞動組合 現況 및 活動, 1982.12 68
表 4-4.	市場移轉 前後의 荷役人員數 實態
表 4-5.	青果物 指定都賣人別 荷役裝備購入 現況 70
表 4-6.	水產物 指定都賣人別 荷役裝備購入 現況 71
表 4 - 7.	荷役機構別 長・短點 檢討 75
第5章	
表 5-1.	年度別 作目班 組織 狀況 81
表 5-2.	先貸資金 貸與現況86
表 5-3.	可樂洞市場 法人別 資金實態 및 所要推定, 青果物
表 5-4.	可樂物市場 法人別 資金實態 및 所要推定,水產物
表 5-5.	人的會社의 物的會社의 區別 96
表 5~6.	日本 中央都賣市場 仲買業數의 推移 98
表 5-7.	取扱規模別 仲買業者 狀況, 1982
表 5-8.	日本 中央都賣市場의 販賣先別 取扱狀況, 1982101
表 5-9.	日本 中央都賣市場 賣買參加者 業態別 業者數103
表 5-10.	龍山市場圏 商人分布 現況, 1983.6105
表 5-11.	都賣會社別 商人現況, 1985.7.15105
第6章	
表 6-1.	農水產物 流通關聯事業者의 分類113
表 6 - 2.	市場形態別。業態別 稅種斗 稅率115
表 6 - 3.	基本稅率表
表 6 - 4.	所得標準率, 1982 年度分117

圖 目 次

第2章	
圖 2 - 1.	都賣市場의 諸機能
圖 2 - 2.	經濟成長斗 農產物都賣市場의 重要性
圖 2 - 3.	都賣市場의 有無에 따른 去來形態 1(
第3章	
圖 3 - 1.	可樂洞 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 位置圖 20
圖 3 - 2.	市場建物의 配置圖22
圖 3 - 3.	可樂洞市場의 靑果物。水產物의 搬入量 趨勢22
圖 3 - 4.	무우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32
圖 3 - 5.	배추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32
圖 3 - 6.	사과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33
圖 3 - 7.	배의 都寶市場 價格 趨勢 33
圖 3 - 8.	갈치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 34
圖 3 - 9.	고등어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34
圖 3-10.	냉태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35
圖 3-11.	可樂洞市場의 管理運營 組織圖 36
第4章	
圖 4 - 1.	都賣市場의 競賣節次 51
第6章	
图 6 - 1	韓國의 和원활 系115

第1章

序 論

1. 研究의目的 및 背景

최근 政府는 農水產物 流通近代化 推進施策의 一環으로 可樂洞에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을 開場하였고 地方都市에도 政府投資에 의한 公營都賣市場의 建設을 推進中에 있다. 이와 같이 政府投資에 의해서 設立되는 公營都賣市場은 대부분 대규모의 綜合都賣市場으로서 旣存 都賣市場과는 市場運營面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都賣市場 管理・運營만 보더라도 그동안 開設者와 都賣會社間에 機能的 連繫가 부족했고 증대되는 物動量과 消費者의 欲求, 급변하는 流通環境이 制度市場組織과 機能만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問題點을 노출시키고 있다.

流通近代化를 위해서 새로운 施設의 建設 못지 않게 그 施設의 活用 및市場管理。運營體系의 確立 또한 重要하다. 다시 말해 都賣市場에서 活動 할 商人組織을 여하히 運營하고 각 商人機能을 相互間 어떻게 調整하며 특히 個人委託商에 의한 相對賣買體系를 仲買人 中心의 競賣體系로 轉換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試行錯誤를 最少化할 수 있는가를 강구하는 것

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課題는 最近 開場된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建設計劃을 비롯하여 移轉을 前後하여 發生한 諸問題點을 導出 檢討·分析하여 市場의 早期活性化에 기여함은 물론 釜山,大邱 등 地方大都市에 建設豫定인 公營都賣市場의 合理的인 設計를 위한 基礎資料의 提供,市場管理 및 市場機能의 正常化를 위한 施策方案을 樹立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研究의 内容 및 方法

本 研究는 農水產部의 委屬課題로서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開場에 즈음하여 파생된 諸般 問題點을 打開하는데 必要로 하는 措置方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첫째,仲買業의 規模의 大型化方案으로서 法人化의 可能性을 모색하였고, 둘째,去來의 迅速과 公正을 기하기 위하여 競賣士 資格의 강화 방안과 資質向上을 위한 具體的 方案을 찾아 보았으며,

세째, 競賣去來의 定着化를 비롯한 去來方式의 改善方案을 比較, 檢討하 였으며,

네째,指定都賣人의 公共的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出荷 先渡金 및 對仲買人 運轉資金 등의 規模의 效率的인 運用方案을 모색하였고,

·다섯째, 그동안 關聯機關의 노력을 통해 流通關聯 稅制가 어느 정도 改善되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이의 가능성을 재차 모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都賣市場 去來價額의 약 0.8~1.0%에 달하는 費用을 수반하고 있는 荷役業務改善方案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또 본 연구는 연구추진방법상 現象에 대한 정밀한 관찰을 요하므로 기이전을 마친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實市場의 設計 및 移轉對策樹立過程에 있어서의 調査結果 및 研究報告書를 再檢討 比較하였으며, 둘째 可樂洞市場 入住 8個 指定都賣人法人, 60 여명의 仲買人 등에 대한 設問調査

를 실시 그 結果를 分析 檢討하였고, 세째, 서울市 市場推進班,市場管理 公社 및 市場運營推進委員會에서 論議된 會議內容들을 면밀히 分析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日本의 仲卸業 및 賣買參加業에 관한 諸般 內容을 參考,比 較。分析하였다.

第 2 章

都賣市場의 概要

1. 都賣市場의 概念과 重要性

가. 都賣市場의 概念

都賣市場은 農水產物이 收集되어 分配되는 流通過程의 中間段階로서 農水產物을 產地에서 消費地로 연결시키는 物理的 역할과 農水產物 價格의 公正한 형성과 市場情報를 수집 전달하며, 또한 生產者에게 生產資金을 대여해 주는 財政的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機能과 場所를 제공하여 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農產物은 일반 工產品과는 달리 그 收集過程이 매우 複雜 多樣하고, 農產物은 국민의 食糧資源이라는 차원에서 골고루 확산될 수 있어야 하므로都賣市場은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都賣市場의 概念과 그 必要性은 나라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규모, 생산조직(형태),생산시기 및 수집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농산물 생산조직이 대규모적이고 규격화되어 질수록 도매시장의 機能은 物理的인 면에서 보다 單純化될 수 있을 것이며, 생산 자체가 商品生產化되고 都市化에 의한 人口集中은 都賣機能을 더욱 必要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

라 小賣組織 및 그 機能이 大型化, 規格化되어 질수록 생산과 소비의 直 去來도 형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都賣市場을 거치는 物量의 비 중은 감소하게 된다.

나. 都賣市場의 機能

都賣市場은 商的流通機能,物的流通機能,情報蒐集 및 傳達機能, 需給 調整機能의 4가지로 區分하고 있는데 이를 各 機能別로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商的 流通機能

商的流通機能이란 農產物의 賣買去來(buying and selling)에 관한 機能으로서 소위 소프트웨어(soft ware)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都賣市場機能中에서 核心的인 것으로서 價格形成,代金決濟,金融機能 및 危險負擔 等 4 가지가 있다.

- (가) 價格形成機能:都賣市場의 中心的 機能은 去來雙方間 그때 그때의需要와 供給狀況을 反映하여 價格을 形成하는 機能이다. 需要者는 特定時間의 特定財貨에 대하여 一定한 基準에 따라 評價를 하게 되며 그 評價를基礎로 하여 一定한 合議點에 도달 價格을 形成하게 된다. 이와 같은 價格形成은 어떤 市場이 지니는 位置 다시 말해 市場占有率(market share), 品質의 多樣性,商品種類의 구색정도 등에 따라 그 影響力을 달리하게 하는데 價格形成에 있어 先導的 役割을 하거나 追從的 役割을 하게 된다. 이때 市場이라는 範圍內에서 形成되는 價格과 個別的 去來에서 形成되는 價格과는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다.
- 이러한 점에서 都賣市場에서의 公開的인 去來는 價格形成上 公正性과 適正性을 나타내게 된다.
- (나) 代金決濟機能:生產者 및 出荷者가 小賣商이나 消費者에게 直接 販賣하지 않는 限 農產物 去來는 都賣市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販賣代金의 精算은 都賣市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통상 市場內 指定都賣人등 都賣會社나 都賣商들은 生產者의 生產活動 및 家計經濟를 도우며 必要한 物量을 確保하기 위하여 先渡金(前渡金)을 貸與하는 바,이와 같은

貸與金 回收를 市場을 통해 完成하게 된다.

都賣市場에서의 販賣代金決濟는 빠른 時間內에 正確하게 이루어지도록 制度的으로 保障돼 있는 바,開設者에 대하여 一定한 去來保證金을 現金 또는 擔保物로 預置토록 하고 있으며 開設者를 비롯 市場許可者는 監督 및 命令權을 가지고 다른 債務에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 (叶) 金融機能: 앞서의 代金決濟機能에서도 잠깐 言及되었듯이 生產者는 營農費 또는 家計費 등을 協同組合, 一般銀行 및 個人私債業者 등으로부터 대金하기도 하지만 都賣市場으로부터도 制度的으로 借入할 수 있다. 이경우는 대개 일정한 契約이나 約束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一定時點에서 특정한 會社나 商人에게 特定生產品을 出荷할 것을 前提로 하는 경우와 일정한 利子를 支給할 것을 條件으로 融資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외같이 都賣市場은 生產者와 金融機關, 또는 都賣會社들과 資金의 融通 내지 貸付를 함으로써 流通의 運營效率을 增進시키는 機能을 하게 된다.
- (라) 危險負擔機能:市場內에서 生產者에 대한 代金淸算은 法令 및 規定에 의해 보장하는 것이 一般的인 경향이다. 그러나 販賣代金의 未決,販賣不能 또는 賣買差額의 負發生(販賣價보다 購買價가 더 높은 경우)등에 대해서는 都賣會社,仲買人 기타 都賣商이 그 損失을 負擔하게 됨으로써 去來에 따른 所有權移轉 또는 代金精算 過程에서 危險을 줄일 수 있는 機能을 지닌다. 그 밖에 特定商人만을 對象으로 하여 農產物을 出荷할 때 거기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다시 말해 販賣의 不確實에서 오는 出荷者의 危險을 分散시키는 機能을 가지는 바 都賣市場에는 항상 多數의 購買者가 常住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購買者의 談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이다.

2 物的 流通機能

(가) 集荷機能:市場에서 去來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生產物이 集荷되어 야 하는데 集荷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都賣會社(指定都賣人)의 責任下에 產地를 開發하고 開發된 產地를 中心으로 受託을 받거나 買取를 하여 필요로 하는 量과 種類를 確保하게 된다. 都賣市場은 보통 多種 多樣한品目과 規格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구색을 맞춤으로써 都賣市場機能을 遂行

해 나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豊富한 集荷는 都賣市場 機能遂 行의 先決要件이 되므로 各種 資金,情報 및 營農技術 등을 提供하는 등 꾸준히 產地를 開發해야 한다.

- (나) 分散機能:都賣市場에 集荷된 農產物이 最終消費者에게 到達되기 위해서는 都賣會社로부터 仲買人 및 賣買參加者에게로, 다음 段階로는 仲買人으로부터 小賣業者에로의 細分荷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分散機能은 遂行程度 및 方法에 따라 都賣市場의 運營效率 또는 流通發展水準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分散機能은 原則的으로 迅速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
- (다) 貯藏 및 保管機能:都賣市場이 아닌 一般市場이나 商店에서도 저장· 보관기능은 수행되지만 都賣市場에서는 주로 仲買人들에 의하여 大量 購入에 따른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라) 運送機能:都賣市場의 固有機能은 아니지만 指定都賣人이나 仲買人 등이 流通圓滑化를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제공 側面에서 수행하는 機能이다. 이것은 指定都賣人은 所屬仲買人의 商活動을 助長 鼓舞하기 위해,仲買人은 去來小賣商의 物品輸送을 圓滑하게 하기 위해 提供하는 것이다.

한편,이러한 輸送은 市場外와 內로 區分할 수 있는데 主로 競賣場에서 仲買人店舖까지 또는 仲買人店舖에서 場外 小賣商店舖까지 運送하는 것 이다.

③ 情報蒐集 및 伝達機能

都賣市場에서는 各種 流通關聯 資料들이 生成,作成되어 진다. 이와 같은 資料들은 情報로서 구실을 하게 되는데 특히 市場內에서의 情報는 關聯 當事者에게 매우 重要한 意思決定道具로서 作用하게 된다. 즉,市場管理를 擔當하는 機關은 政府의 都賣市場政策 施行指針으로 使用하게 되고都賣會社는 價格動向,生產。出荷動向,消費動向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것을 生產,出荷者 뿐만 아니라 仲買人 및 賣買參加者 等에게 提供하게 된다. 또한 都賣市場에서는 新品目,品種의 紹介와 宣傳의 場所로서도 機能하게 된다.

4 無給調整 機能

都賣市場의 存立目的과도 직접적으로 關聯된 重要機能으로 一定한 供給 圈에 대하여 시시각각으로 需要와 供給의 狀況을 나타내며 또한 指定都賣 人,仲買人에 의한 搬入。搬出과 貯藏。保管 등을 통하여 供給量을 調節 하고 價格變動을 통하여 需要量을 調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機能 은 情報의 蒐集。傳達을 통하여 調節을 圓滑하게 하는 것으로 都賣市場 諸 機能의 成敗를 左右하는 指標이다. 一般的으로 需給調節機能이 發揮되지 못하면 物價不安과 연결되고 都賣市場 無用論의 標的이 되기도 한다.

一 簡称形成機能(價格發見機能,評價機能) 一 代金決濟機能 一 金融機能 一 金融機能 一 金融機能 一 金融機能 一 物的流通機能 一 物的流通機能 一 物的流通機能 一 特報蒐集・傳達機能 一 情報蒐集・傳達機能

圖2-1 都賣市場의 諸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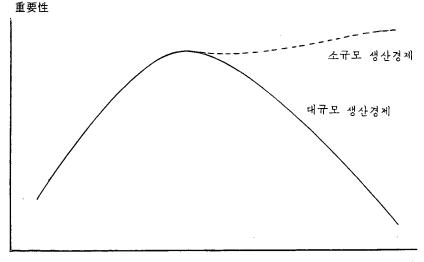
다. 都賣市場의 重要性

都實市場의 重要性은 經濟發展 정도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經濟 發展 初期段階에는 重要性이 相對的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減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산이 대규모 전문화하고, 소매점이 조직화된 경제사회에서는 도매상이 중계기능으로서 都實市場機能을 대체하고 있음을 많은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생산규모가 소규모인 국가에 있어서 도매시장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일정수준에 머물고 있다〈圖 2-2〉.

우리나라 農產物 流通構造를 살펴보면 產地市場의 경우 아직도 매우 영세적이고 商品化。規格化되어 있지 못하여 生產者에게 많은 不利益은 초래하는 요인이 많고, 소비지시장에서도 소비자에게 商品의 質과 價格選擇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農產物 流通構造의 양국단 문제들을 해결하고 產地市場과 消費地市場 體制가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려면 도매시장이 그 중간 단계의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다 또한 所得의 증가로 流通量과 良質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한 정확하고 신숙한 유통정보 생산의 기구가 필요하여 지는 때인 만큼 이러한 면에서 效率的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活性化될 필요가 있다.

圖2-2 經濟成長과 農産物都資市場의 重要性

都寶市場의



所得水準

라. 都賣市場의 必要性

國內 農業이 自給農에서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商業農形態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農水產物은 大量生產,大量去來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은 產地에서 收集機能과 소비지에서의 分散機能을 담당할 수

있는 商的,物的施設 및 制度가 完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都 賣市場은 收集 및 分散機能을 담당하는 中間段階로서 큰 비중을 가지게 되 며 收集된 農水產物을 大量으로 保管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하며,또한 需給 均衡을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經濟・社會的 價值를 부여할 수 있다.

都賣市場의 존재와 그 活性化가 갖게 되는 의미는 〈圖 2-3〉에서 보여 주는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찾아 볼 수 있다.

 (1) 都賣市場이 存在하지 않을 경우
 A
 (2) 都賣市場이 存在하는 경우

 A
 1

 B
 8

 E
 10

 B
 8

 E
 4

**B **

**B *

圖2-3 都質市場의 有無에 따른 去來 形態

(1)은 都賣市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A, B, C, D, E라는 去來主體들이 서로 去來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10回의 複雜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2)의 경우에서처럼 都賣市場이 존재하는 경우 去來를 5回로 單純化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2)의 경우는 去來主體들이 서로 緊密히 접근할 수 있으므로 交通費의 節約과 市場情報交換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資料:經濟企劃院,「流通近代化基本計劃 解說」, 1983.11.

農水產物 流通에 있어서 都質市場은 영세하고 분산적인 生產과 消費를 연결시키는 기능과 더불어 生產者와 消費者 중간에서 需給의 적절한 調整, 商品의 集配,販賣代金의 신속한 결제등 전문적인 商的機能 이외에도 都 質市場은 消費者가 원하는 다양한 農產物의 種類와 數量을 集荷하게 하고, 生產者에 대해서는 안정된 價格으로 出荷를 촉진하며, 안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이루게 하는 場所로서 物的機能을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必要性을 찾아 볼 수 있다.

마. 都賣市場의 開設意義

- (1) 農水產物을 綜合的으로 취급하는 現代的 施設의 都賣市場을 建設하고, 公共投資에 의한 公的市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2) 農水產物의 大量,迅速,公正去來 및 基準去來價格 形成市場으로 育成
- (3) 기존 都賣市場의 流通 및 都市開發上 問題點 해소, 즉 都賣去來를 主導하고 있는 類似都賣市場의 陽性化를 추진하고,施設落後 및 場所狹小로 발생되는 交通,人口,環境問題 해결
 - (4) 迅速・正確한 流通情報의 蒐集・傳達機能確立
 - (5) 生產者의 販路擴大, 直出荷를 통한 所得增大
 - (6) 流通費用 節減을 통한 生產者와 消費者 동시 보호

2. 기존 都賣市場의 形態와 問題點

가. 既存 都賣市場의 形態

우리나라 農水產物 流通에 있어 都賣機能을 수행하는 市場形態에는 法 定都賣市場,農水畜協共販場,類似都賣市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3年 기준으로 全國에는 280個所의 都賣市場이 있으며, 이중 法定都賣市場이 61個所,農水畜協共販場이 123個所,類似都賣市場이 96個所로 나타났다〈表 2-1〉.

市場類型別로 볼 때 農水畜協共販場이 제일 많아 43.9 %를 차지하고 있다. 都賣市場의 地域別 分布를 보면, 釜山이 45 개소로 서울보다 6 개소 많고 慶南 39 개소, 慶北 25 개소, 全南 24 개소, 全北 20 개소 順으로 나타났다.

또한 取扱品目에 따라 部類別로 구분하여 보면 靑果物 都賣市場이 186

개소로 가장 많으며, 水産物 都賣市場 87개소, 畜産物 都賣市場이 7개소이다.

表 2-1 都寶市場 類型別 市場數、1983

單位:個所

_	- IGN												
	區分	青			果		ζ	Ã	Ĕ	畜	<u> </u>	産	1 = 1
市道	<u>剜</u>	法定	共販場	類似	小計	法定	共販場	類似	小計	法定	共贩場	小計	合計
서	울	3	6	15	24	1	3	8	12	2	1	3	39
釜	Щ	14	5	14	33		4	6	10	2		2	45
大	邱	2	4	7	13	1	1	3	5	1		1	19
仁	Ж	2	5	4	11		4		4	1		1	16
京	畿	1	4	8	13		2		2				15
江	原	1	3	2	6		5		5			:	11
忠	北	1	3	5	9	2	1		3	'	·		12
忠	南	2	-2	2	6	1	1	2	4				10
全	北	3	9	1	13	2	5		7				20
全	南	2	8	3	13	1	7	3	11				24
慶	北	6	9	5	20	2	3	ĺ	5	į			25
慶	南	5	11	6	22	2	15		17				39
濟	州	1	_	2	3		2		2				5
合	計	43	69	74	186	12	53	22	87	6	1	7	280

註:1) 市級 이상에 위치한 양육지 위판장 包含.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地域別 既存 都賣市場의 施設 및 去來量은 서울시 靑果物 都賣市場의 경우 建坪이 45,415 坪, 垈地 58,261 坪, 都賣商人 1,538 名, 1日 平均 去來量 4,837 톤,建坪當 1일 去來量은 164 ㎏이다. 부산시의 靑果物 都賣市場의 建坪은 11,497 坪, 垈地 24,818 坪,都賣商人 825 名, 1일 平均去來量은 1,769 톤이다. 大邱市의 靑果物 都賣市場의 建坪은 6,012 坪, 垈地 9,616 坪,都賣商人 288 名,1日 平均 去來量은 1,127 톤이다.光州市의 靑果物 都賣市場의 建坪은 2,842 坪, 垈地 4,271 坪,都賣商人 200名,1일 平均去來量은 468 톤이다〈表 2-2〉.

都賣市場의 類型別 占有比重은 서울시의 청과물 총 반입량 2,604천톤중

4,271

2,719

법정도매시장이 24.4%, 共販場이 3.4%이고 유사도매시장이 72.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品		分	서	울	釜	山	大	邱	光	州	大	田
市	場	數 (個)		21		36		8		6		2(1)
肂		坪(坪)	45	,415	11,	487	6.0	012	2,	482	2,4	113

24,818

9,616

表 2-2 青果物市場施設과 去來且,1980

96 200 都賣商人數(人) 1,538 825 288 345 4,837 1,769 468 1 日平均去來量 (%) 1,127 143 187 建坪當1日去來量(kg) 164 154 187

58,261

資料:農水產部·韓國農村經濟研究院.

地(坪)

岱

釜山市도 총 거래량 606천톤중 法定都賣市場이 29.4%, 共販場이 7.8% 인 반면 유사도매시장이 62.8%로 가장 높다. 5개 大都市 총 거래량면에서 보면 23.5%가 法定都賣市場, 8.6%가 共販場, 67.8%가 類似都賣市場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表 2-3〉.

區 分	서 울	釜山	大 邱	光州	大 田	計
法定都賣市場	635,409	178,527	26 ,100	19,727	53,940	913,705
५ %)	(24.4)	(29.4)	(6.6)	(11.9)	(44.0)	(23.5)
共 販 場	88,541	47,450	102,800	49,928	47 ,802	336,521
% (%)	(3.4)	(7.8)	(26.1)	(30.1)	(39.0)	(8.6)
類似都賣市場	1,880,188	380,706	265,400	96,025	20,832	2,643,151
₩ (%)	(72.2)	(62.8)	(67.3)	(58.0)	(17.0)	(67.8)
計	2,604,138	606,683	394,300	165,682	122,574	3 ,893 ,377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農水產部·韓國農村經濟研究院.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기존 農水產物 都賣市場들은 대개가 설립 된지 오래 되어 經營規模와 施設이 매우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다. 또한 이 들 市場의 위치를 보면 교통이 混雜하고 地價가 높으며 敷地擴張이 어려 운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공통된 特徵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 農水產物 都賣市場은 그 기능 자체가 일정수준에 국한되어 그 규모가 작고 도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都市發展을 예견한 장기적인 都市開發計劃에 따라발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유통현실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合理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韓國的 都賣市場 模型定立의 필요성이 있다.

나. 既存 都賣市場의 立地

기존 都賣市場의 분포를 보면 靑果物의 경우 전체의 43.5%가人口 100만명 이상의 大都市에 立地해 있으며,人口 30만명 이하의 기타 都市에전체의 39,3%가 위치해 있다. 또한 類似都賣市場과 法定都賣市場은 대도시 分布比率이 높은데 반해 共販場은 인구 30만 이하의 기타도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產地農協의 產地共販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靑果物 都賣市場은 소비인구의 비중이 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表 2-4〉.

表 2 - 4 都市規模別 青果物都資市場 分布, 1983

단위 :개소(%)

市場類型別	Z Z	Z地別	大都市	中都市	小都市	其 他	計
法		定	21 (48.8)	3 (7.0)	7 (16.3)	12 (27.9)	43 (100.0)
共	販	揚	20 (29.0)	4 (5.8)	7 (10.1)	·38 (55.1)	69 (100.0)
類		似	40	3	8	23	74
			(54.0)	10	(10.8)	(31.1)	(100.0)
	計		(43.5)	(5.4)	(11.8)	(39.3)	(100.0)

註: 1) 大都市는 人口 100 萬以上 都市,中都市는 人口 50~100萬 都市,小都市는 人口 30~50萬 都市,其他都市는 人口 30萬 미만 都市.

2) 표본수: 法定 43 個所, 共販場 69 個所, 類似 74 個所.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또한 水產物市場을 보면 전체 도매시장의 57.5%는 揚陸地 港口都市, 42.5%는 內陸地 消費都市에 입지하고 있다. 揚陸地 도매시장중에는 人口 100 만명 이하의 中·小都市에 위치한 것이 전체의 41.4%로 가장 많은데 이는 產地水協 委販場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法定都賣市場은 소비지 中·小都市,類似都賣市場은 소비지 大都市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特徵이 있다〈表 2-5〉.

表 2 ~ 5 立地別 水産物 都賣市場 分布, 1983

單位:個所(%)

市場類型	到 Z	2地別	消費地 大都市	消費地中·小都市	揚陸 地 大都市	揚 陸 地 中小都市	計
法		定	2 (16.7)	7 (58.3)	-	3 (25.0)	12 (100.0)
共	販	揚	4	8	8	33	53
大	规义	993	(7.5)	(15.1)	(15.1)	(62.3)	(100.0)
類		似	11	5	6		22
		B	(50.0)	(22.7)	(27.3)	_	(100.0)
	計		17	20	14	36	87
	n i	_	(19.5)	(23.0)	(16.1)	(41.4)	(100.0)

註:1) 大都市七 人口 100 萬以上 都市,中・小都市七 人口 100 萬未滿 都市.

2) 五본수:法定 12個所, 共販場 53個, 類似 22個所.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畜產物市場의 경우는 7개 都賣市場이 모두 人口 100 만명 이상의 大都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최근에 설치한 비교적 양호한 시설을 갖고 있다.

한편 都賣市場의 도시내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都賣市場이 小賣市場의 중심지로부터 去來物量의 증가와 함께 생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都賣市場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都心에 위치하면서 小賣市場에 인접하여 小賣機能까지를 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旣存 都賣市場은 立地別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 시장이 都心에 위치함으로써 도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交通混雜의 요

인이 되고 있다.

- (2) 人口過密地域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流通物量 증가에 대응한 市場 擴張이 불가능하다.
- (3) 대부분의 都賣市場이 도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의 확대에 따라 分配費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다. 既存 都賣市場의 常面問題

대부분의 농수산물 기존 都賣市場은 그 기능자체가 일정수준에 국한되어 그 규모가 작고, 都心地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 발전을 예견한 장기적인 都市開發計劃에 따라 발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大都市 都賣市場의 規模와 시설, 위치 및 進入路와의 연결상황, 거래방법, 관련수수료, 인력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 경제의 발전과 유통환경 변화에 비추어 봄으로써 기존 도매시장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기존 도매시장은 그 規模가 너무 작아서 현재의 去來需要는 물론 앞으로 증가될 거래물량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도매시장내에 교통 混雜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아 效率的인 상행위를 영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수반되고 있다.

둘째, 기존 都賣市場의 시설은 위생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社會的 費用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세째, 기존 도매시장들의 위치는 소비자의 便宜爲主로 發生이 되어 都 心地에 위치하여 있다. 서울의 용산시장, 釜山의 西面 釜田洞 일대 시장, 대구의 七星市場, 光州의 陽洞市場, 대전의 大田靑果水產과 농협공판장은 그 예이며, 이들 주변지역은 교통이 混雜하고 不良施設이 들어서서 사회적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 각 지방단체로부터 도매업을 지정받은 都賣會社法人이 都賣市場의 부지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效果的인 시장운영 보다는 도심지 시장시설 賃貸業에 관심을 더 갖고 있어 시장 운영의 개선과 유통의效率化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都賣會社法人의 運營資金이 부족하여 仲介人이 직접 貨主로서 代金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物量確保를 위한 先渡金의 지급이 제한 되고 있다. 반면에 法定都賣市場 주변의 소규모 유사업자들은 去來貨主는 적지만 先渡金의 限度가 없고 서류나 수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先渡金 支給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이들은 附加價值稅를 納付 할 의무가 없고 去來를 전후하여 去來物量을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 고 또 경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급화되지 않은 物量이 類似業者에게 반입된다. 따라서 市場價格形成이 公共化되지 않아 통계를 알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가 일어나기 쉽다.

여섯째, 一定率의 각종 수수료는 去來物量과 관계없이 策定되어 있어서 去來物量이 증가하는 데도 생산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流通費用을 지 불하게 하고 있다.

일곱째, 仲介人과 下賣人등이 시장건물에 店舖를 차리고 商品을 진열하고 있어서 商品의 專門化에 맞춘 市場配置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을 더욱 惡化시키고 購買者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第 3 章

可樂洞 農水産物 綜合都賣市場의 開設 및 運營現況과 問題點

1. 開設現況과 意義

60年代 以後의 급격한 經濟成長으로 都市化。產業化가 진행되었으며,國民所得의 증가는 食品需要의 高級化와 多樣化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農水產物 流通은 그 機能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저렴한 費用으로 迅速하게 보다 많은 量의 신선한 食品을 消費者에게 供給해야 할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1,000 만 人口를 수용하고 있는 서울市의 農水產物 流通體系는 制度市場을 통한 公正한 去來方法이 아닌 類似都賣市場의 번창으로 정상적인流通經路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競落價의 심한 변동,商品의 品質低下,消費者 物價의 不安定등을 초래하여 生產者와 消費者 모두에게 被害를 주고 있다.

물론 農水產物 流通部門에 대한 國家의 관심과 投資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投資가 뒤따르지 못해 流通施設은 前近代的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物動量의 滯貨,流通費用의 增加,價格形成構造의 위약,都心의 公害問題 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해소하기위한 方案으로 流通施設의 現代化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市가 江東區 可樂洞에 대규모로 建設한 農水產物 綜合都賣市

場은 農水產物 需給 및 流通部門의 問題點과 都市機能의 애로첨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內・外資 약 800억원의^D 事業費로 建設된 可樂洞 新市場은 서울市 農水產物 需給 및 流通改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政府가 農水產物 流通部門 長期計劃으로 구상하고 있는 서울市 4大圈市場 및 地方都市 綜合都賣市場 建設과 運營에 규범이 될 것이다. 따라서 可樂洞 新市場의 開設과 아울러 市場活性化는매우중요한 意義를 갖고 있다 하겠다.

2. 市場의 施設

가. 市場位置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은 서울市 江東區 可樂洞 289번지 일원으로서. 서울 중심지역 (C.B.D)으로부터 東南方 약 15 km, 잠실 신시가지 중심으로부터는 약 2.5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圖 3 - 1〉. 이 地域은 人口가 急伸張되는 地域으로 현재 交通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서울市地域 搬入 農水產物의 약 64%가 搬入되는 京釜高速道路와 6%가 搬入되는 松坡路에 가깝게 位置하고 있어 市場與件上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20

한편 市場의 東側에는 城南市와 연결되는 幅 50 m의 松坡路와 隣接해 있고 北側에는 南部循環道路,西側으로 7 km 거리에 良才洞인터체인지,南側 11 km 거리에는 板橋인터체인지가 각각 位置하고 있어 市場으로 搬出・入되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¹⁾ 畜產物 都賣市場(屠畜場 병설) 建設事業費 제외.

²⁾ 韓國農村經濟研究院,「서울시 農水産物 綜合都賣市場斗 全國農水産物 流通綜合計劃研究事業計劃書 」,1981.8. pp.25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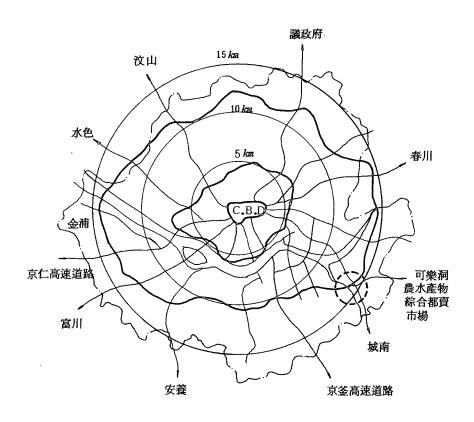


圖 3 - 1 可樂洞 農水産物 綜合都質市場 位置圓

나. 市場施設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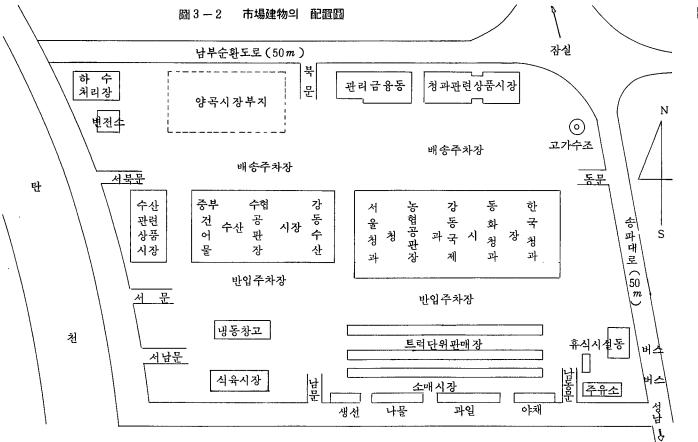
현대적 施設을 갖춘 대단위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이 서울市 可樂洞의 166 千坪 垈地에 建設되었다. 이 市場은 建物面積 60 千坪으로 單一建物市場으로서는 세계 최대,全體 市場面積規模는 프랑스 農水產物都賣市場에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크기이다. 이 市場에는 靑果物,水產物,畜產物의農水產物 都賣市場과 트럭단위 販賣場,小賣市場,關聯商品市場 등이함께들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다목적인 農水產物 都賣市場의 면모를 갖추고있다.

市場別 規模를 보면 32千坪 規模의 青果物市場은 지하 1 층, 지상 3 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 1 층에는 각종 機械設備와 지상 1 층에는 競賣場,仲買入店舗,貯溫倉庫등이 있고, 2 · 3 층에는 事務室과 食堂등이 위치하고있다. 12 千坪 規模의 水產物市場도 1 층엔 競賣場과 仲買入店舖가 들어있고 지하와 2 · 3 층은 機械室,事務室 등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一般 消費者들이 많이 이용할 小賣市場은 960 坪 規模로 幅 35 m의南側 道路와 인접해 있다. 小賣市場의 店舗數는 818 個所로 이중 青果店舖가 717 個,水產店舖가 101 個이다. 이밖에 畜產物市場, 1,162 坪의 트럭단위 販賣場과 1,728 坪의 青果物關聯商品市場, 776 坪의 水產物關聯商品市場 그리고 1,421 坪 規模의 冷凍倉庫, 964 坪의 休息室, 동시 駐車能力 4,850 臺의 駐車施設이 들어서 있다〈表 3 - 1〉.

表 3-1 可樂洞 農水産物 綜合都寶市場의 主要施設現況

單位: ㎡ (坪) 備 品 積 考 分 面 547,265(166,000) 垈 蚍 規模 197,142(60,000) 物 都 106,859 1 奇 (競賣場,仲買人店舗 458, 貯溫倉 靑 果 市 婸 賣 (32,325)庫), 2층(食堂), 3층(事務室) 市 1 층 (競賣場, 仲買人店舖 204, 39,844 水 產 市 婸 婸 庫), 2・3층(事務室) (12,053)施 肉加工室, 內臟處理室, 貯藏庫, 屠畜場 畜 產 市 婸 13,879(4,198) 設 트럭단위販賣場 3,840(1,162) 代金計算所 32個, 동시주차 448臺 靑 果 聯 包裝資材,加工食品,特產品 5,712 品 市 婸 (1,728)農藥品,修理所등 정포 164 個 商 包裝資材, 통조림類, 乾魚製品, 간이식당 기 水産 關 聯 2,565 商品 市 婸 (776)등 점포 63개 타 4,698 冷凍室(-40℃),冷藏室(-20℃),貯 冷 凍 倉 庫 附 氷 100t,製氷 20t/일 (1.421)帶 休 息 施 設棟 3,186(964) 목욕탕,食堂,休憩室 所 690(209) 注油機 8臺, 貯油能力 200 KI 泩 油 施 管 理 11,635 1층 銀行, 2층 食堂, 3층 流通情報室, 棟 (3,520)4・5층 管理事務室 設 金 融 車 婸 174,800(52,877) | 同時駐車能力 4,850臺 駐 青果店舖 717,水產店舖 101 小 賣 市 婸 3,175(960)

資料:서울市 農水產物 都賣市場 管理公社, 1985.



이와같이 市場內에는 모두 15個棟의 建物이 있는데 그 가운데 8個棟은 靑果,水產,食肉市場등 市場建物이며,나머지는 附帶施設 建物이다.이들 각 建物은 取扱品目間의 密集으로 인한 混雜을 방지하고 搬入,搬出이 용이하도록 主進入路의 양측으로 분리 위치되어 있다〈圖3-2〉.

다 市場事業費 内譯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建設에 所要된 總 事業費는 1984년말 현재 79,981百萬원이다. 事業費를 財源別로 보면 總事業費의 43.4 %에 해당하는 34,724百萬원은 政府에서 調達되었으며 30.7 %인 24,540百萬원은 借款資金, 나머지 20,717百萬원은 서울市 資金으로 충당되었다.

項目別로는 建築工事費가 27,881 百萬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土木工事費 21,096 百萬원이며 그밖에 敷地買入費 6,435 百萬원, 機械 • 電氣設備費가 각각 7,109 百萬원, 6,916 百萬원이 所要되었다〈表 3-2〉.

表 3-2 項目別 總事業費内譯, 1979~84

單位:百萬科

								<u> </u>
		総	事業費	(1979 ~	- 84)			
晶	分	國 庫	서	울	市	合 計	備	考
		四	地方費	借款	計	Ti III	<u> </u>	
總	計	34,724	20,717	24,540	45,257	79,981		
敷地	買入	4,868	1,567	_	1,567	6,435		
建	築	9,442	5 ,440	12,999	18,439	27,881	ļ	
土	木	10,332	5,768	4,996	10,764	21,096		
機	械	2,211	1,541	3,357	4,898	7,109		
電	氣	3,387	1,569	1,960	3,529	6,916		
造	景	-	480	357	837	837		
其	他	4,484	4,352	871	5,223	9,707		

註: * 1979年부터 1984년 말까지의 總事業費임.

** 畜産物 都賣市場의 施設事業費는 不包含.

資料: 서울市, 1985.

3. 市場의 去來實態 分析

가. 서울市 農水産物 需要豫測

서울市의 1978 年度 農水產物 總搬入量은 靑果物 2,288 千톤 (果實 411 千톤, 菜蔬 1,877 千톤), 水產物 390 千톤 (鮮魚, 乾魚, 貝類 包含)으로 集計되었다. 이를 1人當 消費量으로 환산하면 年間 靑果物은 285 kg (果實 51 kg, 菜蔬 234 kg), 水產物은 49 kg이 되다.

이를 기초로 하여 品目別 所得增加率과 所得彈性値를 적용해서〈表 3 - 3〉, 1986 年度 서울市 人口 1人當 消費量을 推定한 결과 靑果物은 1人當 年間 1978年 285 kg에서 1981年 312 kg, 1986年에는 341 kg으로 증가하였고, 水產物은 1978年 49 kg에서 1981年 56 kg, 1986年에는 66kg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86年의 서울市 總需要量은靑果物 3,568千톤(果實 750千톤, 菜蔬 2,818千톤), 水產物 695千톤으로 推定되었다〈表 3-4〉.

表 3 - 3 需要豫測을 위한 基礎資料

구 분	1970-78	1979 -81	1982-86	1987-91
도시가계 1인당 소득증가율(%)	9.0	8.0	7.0	6.0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과 실	0.90	0.70	0.50	0.30
채 소	0.35	0.30	0.20	0.10
수 산 물	0.70	0.60	0.50	0.40
연평균 1인당 소비증가율(%)				
과 실	8.1	5.6	3 . 5	1.8
채 소	3.2	2.4	1.4	0.6
수 산 물	6.3	4.8	3.5	2.4

資料: 成培永外, 「서울市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建立을 위한 補完調査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10. 이러한 需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은 龍山市場 閉鎖以後 적어도 靑果物의 1日 去來量이 3,030톤 (果實 640 톤, 菜蔬 2,390 톤, 菜蔬中 무우·배추가 1,310톤)이 去來되어야 하며,水產物의 1日 流通量은 540 톤이 要求되었다.33

7 H	과		실	채	소		수	산	물
구 분	1978	1981	1986	1978	1981	1986	1978	1981	1986
1인당유통물량	51.24	60.34	71.66	234.00	251.26	269.34	48.62	55.96	66.47
(kg /년)									
1일유통물량 (톤)	1,174	1,526	2,143	5,363	6,354	8,051	1,114	1,414	1,986
총반입량(천톤)	411	534	750	1,877	2,224	2 , 818	390	495	695

表3-4 서울市 農水産物 需要豫測

資料:成培永外,前揭書,1980.10.

나. 市場의 搬入物量과 競賣動向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開場 前에는 과연 새로운 都賣市場으로 適正水準의 物量이 確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新市場에 대한 기대감으로 開場初期(6,7月)에는 物量이 過多出荷(1日 平均 4,370 톤)되는 현상마져 나타났다.

靑果物의 경우 8月 중순에는 菜蔬類 端境期로 生產量 減少와 10月에는 동번기 및 秋季장마로 搬入量이 다소 저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非經濟的 이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日 平均 去來量은 3,400톤 水準을 유지

^{*} 시장개시일 년 350일.

³⁾ 각 搬入地點에서 都賣市場을 經由 각 小賣圈까지 靑果物을 分散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을 最少化하기 위한 取扱物量을 L.P 모델에 위해 算出한 결과임. (成培永外,「서울市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建立을 위한 補完調查研究」, 農經研, 1980.10, p.124).

하고 있다. 水產物의 경우는 7~8月에 발생된 비브리오균 사건으로 需要가 격감하였으나 10月 이후 盛需期 到來로 搬入量이 증가추세에 있다 〈表 3-5〉, 〈圖 3-3〉.

이와같이 볼때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은 去來物量의 確保面에서 점차 안정세에 進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搬入된 物量의 上場實績을 살펴보면 水產物은 全量 上場되고 있으며, 靑果物도 89%의 높은 上場實績을 기록하고 있다. 靑果物의 上場은 開場初期에는 既存市場의 商去來慣習의 급격한 變化를 최소화하기 위하여記錄式 上場制度를 暫定的으로 인정하였다가 10月以後 實質上場의 積極的인 推進으로 上場實績이 다소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表 3-6〉.

表 3 - 5 可樂洞市場의 1日 平均 搬入物量, 1985. 6.19 ~11.25

단위: 싸

								1	<u>171 • 71</u>
	구 분	합 계	청	과	물	수	신	<u> </u>	물
월 별		압계	소 계	채 소	과 실	소 계	선 어	패 류	건 어
6	월	4,870	4,594	4,381	213	276	61	174	41
7	월	3 ,86 9	3,625	3,165	460	244	89	93	62
8	월	3,507	3,293	2,605	688	214	64	65	85
9	월	3,743	3,420	2,515	905	323	96	123	104
10	월	3,043	2,684	2,167	517	359	98	145	116
11	월	3,506	3,059	2,667	392	447	104	212	131
평	₹	3,657	3,379	2,780	599	278	84	112	82
가락시 적정물	장 ¹³ 량추정	3,570	3,030	2,390	640	540	3	340	200

註:1) 가락시장의 적정물량 추정치는 1986년임.

成培永外,「서울시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보완조사연구」,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10. p.124 참조.

資料: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1985.

11月

10

 (%)
 청과물

 5
 4.5

 4

 3.5

 3

 2.5

 1

 0.5

8

0

圖 3 - 3 可樂洞市場의 青果物 水産物의 搬入量 趨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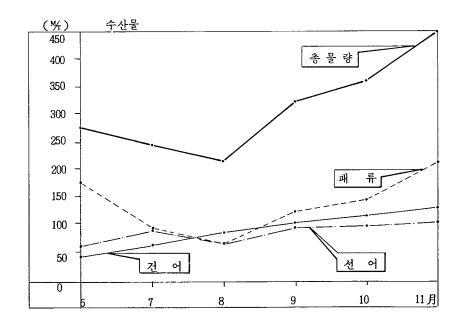


表 3 - 6 可樂洞市場의 物量上場實績, 1985

單位: %

7	7분	계				청 과			수				산			
월별		반	입	상	장	%	반	입	상	장	%	반	입	상	장	%
7	계	304,	898	27	4,638	90	278	,401	248	,191	89	26,	,447	26	, 447	100
8	월	108	,787	99	9,326	91	102	,085	92	674	91	6	, 652	6	, 652	100
9	월	105,	180	98	,163	91	95	,796	85,	77 9	90	9	,384	9	, 384	100
10	월	90,	931	8	0,149	88	80	,520	69	,738	87	10	,411	10	,411	100

資料: 서울市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公社, 1985.

開場初期부터 11月末까지 실시되어 온 記錄式 上場制의 의미는 可樂洞新市場으로 移轉해 온 仲買人들로 하여금 旣存 龍山市場에서 행하여 왔던 委託去來物量을 指定都賣會社에 上場케 하여 2~3%의 上場手數料를 내도록 한 制度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可樂洞 新市場으로 移轉해 온仲買人들이 과거 商去來慣習을 脫皮하지 못하였고, 한편으로는 指定都賣人들의 物量確保能力이 미약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指定都賣人의 集荷問題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의 仲買人 일부를 任意抽出하여 去來 制度에 관한 設問調查를 한 결과, 현재 競賣에 參加하고 있는仲買人은 靑果物의 경우 58.8%, 水產物은 87.5%가 參加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으며, 특히 靑果物의 仲買人中 7.8%가 競賣에 參加하는 方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都賣市場에 上場된 物量의 競賣實績을 보면, 靑果物은 15%미만, 水產物은 70%가 競賣를 통해서 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表 3 - 7〉. 이렇듯 靑果物의 競賣實績이 낮은 이유는 靑果物의 82.3%를 차지하고 있는 菜蔬類의 標準化,等級化가 아직까지 定着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賣場이 混雜한 관계로 集荷施設場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賣場內外에 많은 種類의 雜商人들의 商行爲로 都·小賣機

구	월 별	8 월	9 월	10 월		
	상 장 량(%)	2,990	3,064	2,325		
청과	경 매 량(썃)	425	360	347		
	경매비율(%)_	14.2	11.7	14.9		
	상 장 량(%)	214	335	347		
수산	경 매 량(州)	150	207	207		
	경매비율(%)	70.1	61.8	59.6		

表 3 - 7 部類別 1日 平均 競賣實績, 1985

資料: 서울市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公社, 1985.

能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더욱 混雜을 빚고 있다. 또한 競賣가 끝 난 物量은 빠른 시간내에 分散되지 못하고 있어 賣場의 이용이 効率的으로 運營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都賣市場機能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仲買人들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都小賣機能의 완전분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의 都·小賣機能 분리와 賣場의 効率的인 利用을 위한 方案으로 현재의 小賣棟 (960 坪)을 仲買人店舖로 活用하여 菜蔬仲買人을 그곳에 移轉시키고 小賣商人을 위한 店舖는 糧穀市場敷地로 移轉시키는 方案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競賣에 있어서 現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의 競賣時間은 큰問題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品目에 따른 競賣所要時間이 問題가 되고 있다. 競賣 始作時間은 部類別 또는 季節別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物量이 集荷되는 시간에 따라 競賣 始作時間에 密接한 影響을 주고 있다. 즉 靑果物은 5月에서 8月末까지는 보통 새벽 3時와 오전11~12時에 競賣가 이루어지며, 그외의 季節에는 오전 9~10時 사이에競賣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水產物은 대부분의 物量이 밤 12時 이후에集荷되어 鮮魚類는 새벽 2時 이후, 乾魚類는 3時 이후에 競賣가 시작되고 있다.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實市場의 競賣方法은 手指式 競賣方法을 사용하고 있으며,동일 品目에 대해 競賣士 1人이 競賣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競賣士 1人體制는 靑果物의 盛需出荷期에는 公正한 價格形成과 上場된 物量의 신속한 分散機能을 하기에는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品目의 盛需出荷期에 競賣士 1人이 70명 이상의 仲買人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價格識別能力을 選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동일 品目에 대해서 2人 이상의 競賣士가 競賣를 각각 주도해 나가는 體制로 발전될 必要가 있다.

다. 主要品目의 價格動向

表 3 - 8 主要品目의 都質市場 價格比較、青果物,1985

單位 : 워 區分무우(상품 1 접) 배추(상품 1 접) 사과(상품 15 kg) 배 (상품 15 kg) 타시장 가락시장 타시장 가락시장 타시장 月旦 가락시장 타시장 가락시장 8,500 26,500 33,600 26,000 22 29,075 27,140 27,742 10,628 6 29 25,500 30,820 28,642 30,400 7 21,214 24,840 33,214 28,800 27,357 10,342 6 7 23,071 41,785 32,640 27,571 10,428 13 25,760 45,357 33,920 7 20 21,857 25,760 26,714 11,214 7 47,857 27,500 11,500 20,142 25,300 37,120 27 47,500 8 21,500 23,690 39,040 26,357 11,500 3 8 25,600 25,300 35,900 41,900 14,357 11,071 10 40,000 33,829 14,143 11,000 8 31,329 26,220 17 36,129 36,800 11,000 10,081 8 24 26,371 24,840 8 31 24,171 25,530 44,329 42,240 11,357 10,060 43,671 42,880 7,357 9,915 9,333 25,114 27,370 9,666 9 7 7,945 7,333 9 25,500 28,290 49,914 42,240 8,598 8,677 14 63,957 55,360 10,422 9,278 7,050 6,999 9 27,842 28,980 21 6,582 6,333 28,371 30,130 76,071 66,880 9,260 9,000 9 28 7,500 6,333 70,000 63,360 8,250 8,833 10 5 29,500 29,670 55,285 49,600 15,800 15,333 10,742 10,933 27,185 28,060 10 12 15,333 10,395 10,833 32,042 38,400 11,828 10 19 19,250 23,920 10,833 25,314 32,640 12,214 13,833 10,642 10 26 19,614 21,160 23,385 27,250 12,600 13,333 10,514 10,833 11 2 21,800 21,850 11,314 11,166 17,557 11,657 13,333 19,090 21,900 24,960 11 9 11,333 24,342 960, 24 14,600 14,278 11,857 19,320 11 16 19,542 25,200 11,428 15,667 11,600 11,333 23 14,585 19,320 25,142 11 11,611 11,828 30 14,471 18,170 33,357 25,920 14,285 15,667 11

資料: 서울市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公社, 1985.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에서 형성된 主要 品目의 價格을 他市場 價格과 비교해 보면, 靑果物인 배추, 무우, 사과, 배의 可樂洞 市場의 價格은 他市場의 價格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表 3-8〉,〈圖 3-4.5,6,7〉, 水產物中 고등어, 갈치, 냉태의 價格은 노랑진 水產市場 價格보다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表 3-9〉,〈圖 3-8,9,10〉. 이는 곧 可樂洞 市場이 物量確保面에서나 價格形成面에서 일단 安定段階에접어 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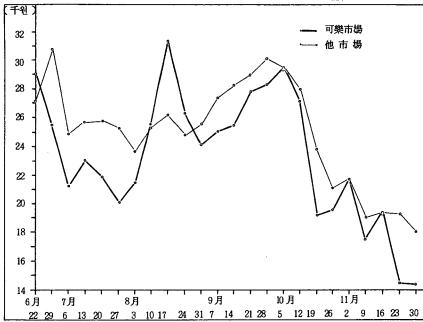
다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市場의 管理組織 및 市場商人의運營이 좀더 効率的으로 體制를 整備해 나가는 것이 都賣市場의 活性化를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表 3 - 9 主要品目의 都膏市場價格比較、水產物、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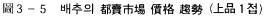
單位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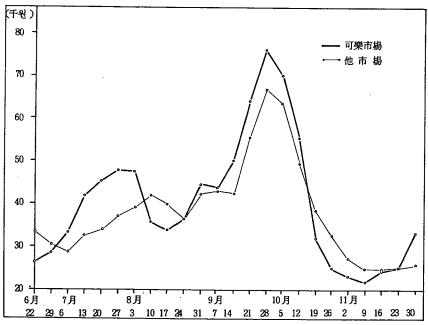
	區分	갈치 (중품 <i>kg</i>)	고등어 (중품 <i>kg</i>)	냉태 (취	중품 <i>kg</i>)
月日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6	22	962	1,105	861	555	305	324
6	29	998	980	857	574	292	323
7	6	1,106	1,000	885	611	278	3 18
7	13	1,001	1,006	923	618	302	312
7	20	958	955	833	583	302	312
7	27	1,010	889	702	500	298	318
8	3	996	789	804	495	306	318
8	10	977	883	774	641	294	314
8	17	1,016	973	845	567	278	306
8	24	1,062	933	853	634	243	306
8	31	1,020	933	649	636	222	312
9	7	899	1,000	735	689	281	323
9	14	886	984	610	556	297	324
9	21	943	944	616	533	309	324
9	28	807	933	625	567	319	324
10	5	828	911	757	634	319	324
10	12	938	867	755	600	317	324
10	19	974	895	726	627	317	314
10	26	969	934	799	617	323	312
11	2	1,073	983	843	6 00	365	324
11	9	1,005	1,067	868	602	375	324
11	16	1,034	1,100	876	689	380	350
11	23	1,091	1,133	905	733	388	376
11	30	1,103	1,200	907	700	416	409

資料:서울市 農水産物 都賣市場 管理公社, 1985.



闘 3 - 4 무우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上品 1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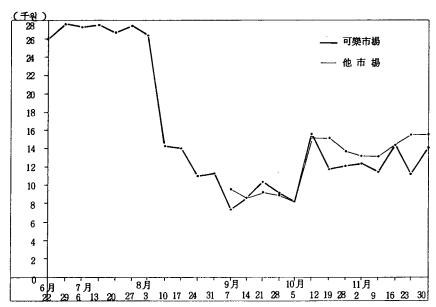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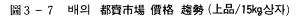


圖 3 − 6 사과의 都寶市場 價格 趨勢 (上品/15kg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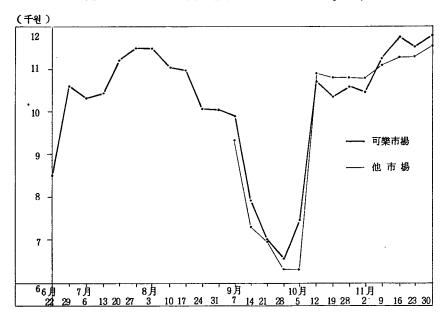


圖3-8 갈치의 都寶市場 價格 趨勢 (中品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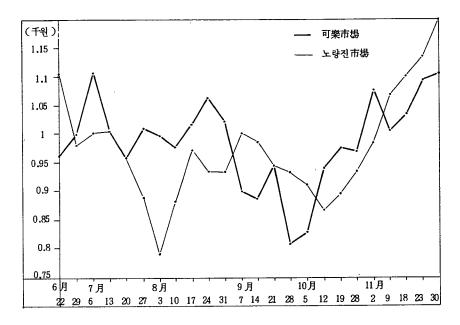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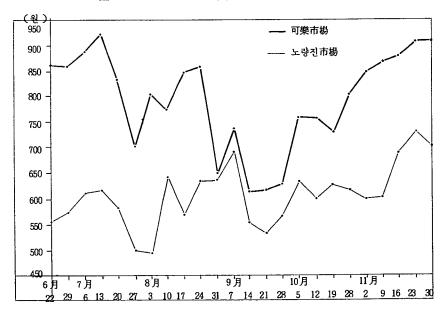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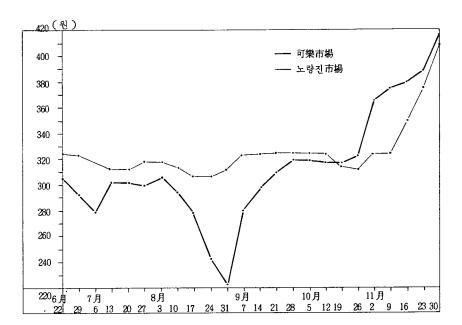


圖 3 - 9 고등어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中品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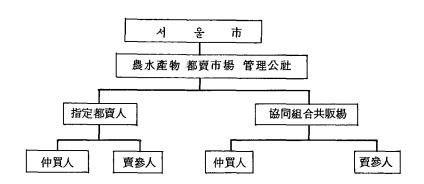
闘3-10 냉태의 都賣市場 價格 趨勢 (中品 kg)

4. 市場의 組織運營體系

가. 管理運營體系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의 管理運營體系는 都賣市場의 管理業務外運營業務를 분리하여,管理業務는 開設者인 서울市를 代行하여 設立된서울市 農水產物都賣市場 管理公社로 하여금 담당케 하였고,運營業務는 指定都賣人인 都賣會社가 맡고 있다〈圖 3-11〉.

이같은 管理運營體系는 旣存 都賣市場의 體系와 비교해 보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旣存 都賣市場은 대부분 民間人이 運營하고 있으며 그 方法은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都賣業을 指定받은 指定都賣人이'都賣市場業 務를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都賣市場建設이 대부분 영세



闘3-11 可樂洞 市場의 管理運營 組織圖

한民間資本에 의하여 이루어 짐으로 施設 및 規模가 영세하다. 또한 運營面을 보면 法定都賣市場은 일반적으로 商去來活動과 市場管理業務를 市場會社가 하고 있지만, 類似 都賣市場의 경우는 대부분 市場會社가 店舗賃貸業만 수행할 뿐 都賣市場 商活動과는 전혀 무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類似都賣市場은 農安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각종 보고의무가 없을 뿐더러 農水產部 또는 서울市의 監督을 회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投資에 의해 設立된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의 管理運營體系는 大規模 綜合都賣市場에 적합한 形態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都賣市場 管理公社는 都賣會社間의 業務調整과 共同利用施設의 管理 등을 통해 市場의 効率性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점에서 서울市에 의해 設立된 管理公社에 의해 運營하는 것은 ① 專門人力 確保의 容易性 ②流通與件의 變化에 대한 適應의 容易性 ③競爭 價格形成可能 ④公正去來 定着可能 ⑤流通統計 및 情報提供作成 容易 ⑥生 產・出荷者에 대한 서비스活動 可能등의 長點이 있다.

한편 管理公社의 주요 機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ㅇ 市場內 施設物 및 裝備의 유지관리
- 施設物의 賃借 및 賃貸料 徴收
- ㅇ 市場參加機關 및 市場利用에 관한 指導 및 監督

- ㅇ 流涌量增加에 따른 施設擴張 및 改善
- ㅇ 市場情報機能의 유지 및 통제
- ㅇ 청소 경비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
- ㅇ 商品의 質과 위생에 관한 監督
- ㅇ 共同施設物의 運營, 市場運營에 대한 便益提供
- 施設物의 使用料 徴收
- ㅇ 商人에 대한 教育

管理公社의 組織도 이러한 機能을 効果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한다. 그러나 管理公社의 組織運營上 ①公社人員과 管理機構가 비대해질 우려가 크며 ②中央政府의 流通政策 目標達成이 困難하고 ③公社收支均衡을 위해 市場使用料를 引上시킬 可能性이 크며 ④都賣市場 建設地域마다 公社를 設立해야 하는 등의 短點도 있으므로 設立과 管理公社組織運營에는 많은 努力이 있어야 한다.

나. 都賣市場內 商活動 從事者 形成

① 商人 組織間의 關係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內에서 商活動에 직접 종사하는 事業者로 서는 指定都賣人,仲買人,補助仲買人,賣買參加人,關聯商品商人,小賣商人이 있다. 이들 商活動 從事者는 商活動 수행에 있어서 橫的。縱的 양면으로 상호 대립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 緊密한 關係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는 都賣市場 活性化를위한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다.

따라서 商人組織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農安法에 根據를 둔 새로운 商人 創造와 다른 하나는 旣存 市場商人의 移轉으로 나 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 建設되는 公營都賣市場은 旣存 市場商人의 移轉問題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② 商人 入住計削의 重要性

市場의 移轉에 따른 결과로 초래되는 商人의 移轉問題는 단순한 經濟行為 主體를 移轉시킨다는 經濟的 意味外에도 商人의 生活環境 즉 住居地域

子女教育問題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됨으로 그 移轉計劑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必要가 있다.

특히 農水產物 市場의 移轉은 去來商品인 農水產物이 지닌 流通組織의다양성 때문에 商權의 순조로운 移轉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波及影響은社會。經濟的인 면에서 매우 크다. 즉 旣存 農水產物 都賣市場을 閉鎖하고新市場으로 移轉함에 있어서는 生產者,消費者 및 商人 등 모든 側面에서불편과 損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新市場의 商權이 빠른 시일안에 형성되도록 努力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移轉計劃은 移轉에 따른 混雜을 사전에 예방하고, 市場機能이일 시적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市場의 移轉時期 및 期間, 移轉對象地域,移轉對 象商人,入住對象 指定都賣會社 選定 등에 관한 事前計劃의 內容이 충분히 검토되어 합리적이고 客觀的으로 樹立되어야 한다.

이러한 移轉計劃을 効果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入住計劃의 樹立, 執行, 監督을 담당할 特別班을 편성하여 計劃을 樹立하여 計劃이 完了될때까지 行政指導를 펴 나갈 必要가 있다.

다. 入住商人의 分析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의 入住商人을 對象으로 設問調查 結果와 그동안 서울市가 計劃。施行한 入住對象地域,對象商人,入住方法,入住時期 등을 分析함으로써 앞으로 開設될 公營都賣市場의 商人移轉이 効率的으로 이루어지는데 參考資料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으로 移轉해 온 對象市場은 龍山(青果,鮮魚),南大門(鮮魚),中部(乾魚)市場과 청량리 水協共販場 周邊 鮮魚를 包含하되 龍山市場은 都·小寶機能 전체를 移轉하고,기타 市場은 都 賣機能만을 移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既存 市場의 商人을 新市場으로 移轉함에 있어서 新市場의 施設規模를 고려하여 適正商人 숫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可樂洞 市場의

表 3 - 10 移轉對象 商人의 市場 場所別 規模

	地 域			主取扱品目	商 人 數 (명)
龍	Щ	市	場	青果,鮮魚	3,941
南	大 門	市	揚	鮮魚	132
中	部	市	揚	乾魚	604
청	량 리	市	場	鮮魚	153

資料:서울시 제공.

表 3-11 移轉對象 商人의 取扱商品別 規模

單位:명

合	計	青	果	水	產	關聯	商品
4,830)	3	,218		225	3	187

資料:서울시 제공.

表 3~12 移轉對象 商人의 商人類型別 規模

單位 : 명

合 計	委託都賣商	中間都賣商	小	賣	商	露店商
4,830	1,053	2,856		535		386

資料:서울시 제공.

경우는 龍山市場地域 閉鎖에 따른 전체 商人의 移轉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可樂洞으로의 移轉計劃이 알려지자 去來實績이 없거나 부진한 商人들이 龍山市場에 몰려 예상 移轉商人 숫자를 상회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서울市 (開設者)는 入住商人의 基本方向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入住計劃을 마련하였다. 첫째,入住 對象者는 1983 年末이전부터 移轉對象市場에서 農水產物 去來 營業者로 한다. 둘째,入住對象選定은 기조사된 상인 명부와 기타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確認한 商人을전산처리로 대상자를 確定한다. 세째,入住商人은 仲買人,補助仲買人,

賣買參加人,小賣商人,關聯商品商人으로 구분 入住토록 하고 關聯商品商 人을 除外한 商人選定과 入住管理는 指定都賣人 責任으로 하다.

商人別 入住計劃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市는 商人別로 計劃人員,對象者 決定基準,入住場所,入住方法을 包含 細部計劃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仲買人

- 計劃人員: 1,553名(青果 1,145,水產 408)
- 法人別 確保基準

青 果 部 類	鮮 魚 部 類	乾 魚 部 類
200 명 이상	100명 이상	200명 이상

○ 對象者 決定:仲買業 許可基準 適合者

區	分	分 去來物量(年) 去來金額		保 證 金
靑	果	500톤 이상	2 億 이상	600 만원
水	鮮 魚	100톤 이상	2億 이상	600 만원
產	乾 魚	100톤 이상	5億 이상	1,500 만원

○ 入住場所:仲買人店舗 662 個

○ 入住方法:店舗當 青果 2.5名, 水產 2名 基準으로 所屬法人 責任下에 入住

(2) 補助仲買人

○ 計劃人員: 1,553名

ㅇ 對 象:中間都賣商人中 仲買人 추천받은 분배 能力者

○ 入住場所:都賣市場(트럭單位販賣場,仲買人店舗,競賣場)

・ 營業形態: 추천한 仲買人 責任下에 商品分配(都賣營業), 점차 仲買人 同業 또는 法人化 유도

• 入住方法: 추천한 仲買人 責任下에 수용, 仲買人 店舖外 고정장소 배정 불가

(3) 賣買參加人(移轉對象 市場商人)

○ 計劃人員: 519 名

ㅇ 對 象:일정한 場所없이 多量商品을 分配할 수 있는 都賣業者

(중판) 및 納品業者로서 指定都賣人 추천을 받은 자

- ㅇ 入住場所:트럭단위판매장 및 競賣場
- 營業形態: 競賣參加 購入商品 分配, 多量 需要處 供給專擔
- 入住方法:所屬 指定都賣人 責任下에 수용(고정장소 배정 불가)
 - * 이전대상 시장의 賣買參加人 登錄은 별도 登錄基準(중매인 물 량처리 水準) 적합자 등록

(4) 關聯商品商人

ο 計劃人員: 387명

○ 對 象:關聯商品 都賣營業者

○ 入住場所:關聯商品 店舗 101 개

○ 入住方法:店舗當 3~4명 基準 소속단체 責任 入住

(5) 小賣商人

ㅇ 計劃人員: 818명

항 象:仲買人,補助仲買人,賣買參加人과 關聯商品商人을 除 外하 小賣 및 露店商人으로서 指定都賣人 추천받은 자

- 入住場所:小賣店舖 431 個
- ㅇ 入住方法:店舗當 1名 基準 소속법인 責任

開設者인 서울市는 商人移轉問題를 두고 그 計劃樹立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努力을 投資하여 商人을 그룹별로 나누어 事前計劃을 나름대로 치밀히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可樂洞으로 移轉해 온 商人數의 規模나 種類를 分析하여 보면 可樂洞 市場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에는 너무 商人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商人規模에 대해서 이미 可樂洞 新市場으로 移轉해 온 仲買人들조차 仲買人의 數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設問調査 結果에 의하면,특히 靑果物取扱 仲買人들의 75%가 商人規模가 施設에 비해 너무 많음을지적하고 있다〈表 3~13〉.

入住方法에 있어서 仲買人들의 意向은 특히 入住時期와 入住對象 商人 選定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表 3-14〉.

表 3-13 可樂洞 市場의 商人規模

單位:%

區		分	D ।उं	다	적	다	적 당 하 다		
青	果	物	75.0			5.8	19.2		
水	產	物	25	5.0	12.5		62.5		

資料:現地調査結果.

表 3-14 入住方法上의 問題點

單位:%

	入住	時 期	入住對象選定			
區 分	만 족	불 만 족	만 족	불 만 족		
青 果 物	9.8	90.2	7.8	92.2		
水產物	98.0	2.0	50.0	50.0		

資料:現地調査結果.

또한 入住時期에 있어서도 靑果物과 水產物取扱 仲買人은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表 3-15〉. 특히 靑果物取扱 仲買人이 겨울철을

表3-15 入住時期의 選好度

單位:%

區	分	봄	여	름	가	을	겨	울
青	果物	29.5		6.8	11.4		52.3	
水	產物	-	95.0 -		5.0			

資料:現地調査結果.

最適移轉時期로 생각하는 것은 物量面에서 靑果物은 非需期일뿐만 아니라 先貸資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盛需期인 여름과 가을에 移 轉을 하게 되면 이미 전년도에 살포한 先貸資金의 회수가 不可能하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좋은 예로 6월에 移轉한 可樂洞 市場의 仲買人들에게 設問調査한 결과 상당수에 해당되는 仲買人들이 先貸資金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단지 일부 商人만이 完全히 회수하였거나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市 입장으로서는 都市計劃에 따라 龍山市場을 閉鎖해야 하므로 商人 全體에 대한 對策의 일환이라는 政策的인 次元에서의 문제로 행하여 졌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可樂洞 市場의 商人規模는 〈表 3-16〉에서 보여 주듯이 可樂洞 市場의 活性化 次元에서 보면 너무 많은 商人規模임에는 틀림없다. 이렇듯 可樂洞 市場이 活性化되기 위해서 適正規模의 商人 숫자가 調整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表 3 - 16 可樂洞市場의 流通組織 및 人員의 事前計劃과 入住現況

				事前計劃	入住		定着後
區		分		1983	移 轉 時	'85.11.28 현 재	足 有 1次
				KREI	서 울 市	公 社	모 습
市場管	9 理 2	之社((名)	107	252	252	150 ~ 200
指 定	靑	果	物	4	5	5	4 ~ 2
	水	產	物	2	3	3	2
都賣	선		어	1	2	2	1
人數	건		어	1	1	1	1
(個所)	畜	產	物	1			
-	靑	果	物	849	1,220	1,164	400 ~ 500
仲 買	水	產	物	244	422	437	200 ~ 250
人(名)	선		어		174	172	
	건		어		248	265	
賣參人	靑	果	物			288	50
(名)	水	產	物			200	30
補助仲	靑	果	物		2,562	2,104	
買人佲)	水	產	物		400	491	
小荷文	靑	果	物		636	571	
小賣商	水	產	物	833	89	86	
(名)	關聯	商品	商人		93	88	105

資料:・ 韓國農村經濟研究,「可樂洞 農水産物 綜合都賣市場 運營方案」, 1983.10.

서울市 및 管理公社 資料 제공.

이러한 狀況을 미루어 보아 公營都賣市場建設에 따른 商人移轉에 있어서는 商人移轉 目的이 旣存市場 閉鎖에 따른 단순한 商人組織의 移轉인가, 아니면 새로운 制度市場의 活性化를 위한 適正規模 商人의 유치인가에 따라 商人의 移轉計劃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制度市場의 活性化에 중점을 둔 移轉計劃이라면 適正規模 商人의 概念이 강조되어야 하고, 商人組織의 分類에 있어서도 商人의 機能과 실적을 根據로分類할 수 있는 嚴格하고도 客觀的인 選定基準의 設定이 必要함을 알 수 있다.

라. 商人再分類 및 再配置의 必要性

現 可樂洞 市場의 商人組織은 能力爲主 商人으로 分類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정 施設不足으로 지금 水準의 商人數를 유지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都小賣商圈의 混合은 市場 活性化에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미 移轉된 商人組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仲買人中에는 분산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단순한 物量確保 즉 委託機能만 갖추어져 있는 商人들이 仲買人으로 당당히 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商人들이 制度市場에서 요구하는 仲買人 役割을 망각하고 旣存 관습대로 委託商의 業務를 하고 있다면 이는 市場活性化에 역행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仲買人과 關聯하여 可樂洞 市場에 처음 도입된 補助仲買人 制度를 검토해 볼 必要가 있다. 補助仲買人으로 分類된 商人組織의 성격을 보면 龍山市場에서 委託商에 소속된 앞자리상들이다. 이들은 委託商의 商品을 분산해 주는 분산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仲買人과 對立勢力이 아니라 補完組織으로 連繫시킬 목적으로 補助仲買人으로 商人組織을 하였으나, 원래의 目的과는 달리 仲買人과의 對立勢力으로 流通段階를 하나 더늘리는 현상을 빚고 있다. 또한 補助仲買人들이 小賣業을 자행하고 있어 小賣商人들과도 마찰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商人組織들의 活動과 機能들이 불합리한 점을 보아 商人再分類 작업을 통하여 商人規模를 縮小 調整하는 것이 必要하다. 즉 仲買人과 補助仲買人들을 機能別(收集 또는 分散)로 分類하여 分散能力이 없고 단지 收集能力만 갖추고 있는 仲買人들은 指定都賣人의 任員으로 吸收시켜 都賣會社의 物量集荷能力을 보강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仲買人은 分散能力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 商人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既存 補助仲買人 가운데 分散機能 遂行者들을 仲買人으로 分類하여 育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既存 仲買人들 가운데 收集,分散機能이 없는 商人이나, 既存 補助仲買人들 中에 分散機能이 없는 商人들은 他業種으로 유도할 必要가 있다.

5. 市場의 運營上 問題點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은 1985年 末까지로 보아, 開場初 市場의 移轉에는 성공하였으나 市場圈이 안정적으로 定着化되지 못하고 있고, 類似都賣市場으로 일부 商圈이 이동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可樂洞市場 전용시설에 旣存 都賣市場의商人을 收容能力 이상으로 一括 이전함으로써 競賣場, 仲買人店舗, 주차장 등이 제기능을 發揮하지 못하고, 특히 商人들이 旣存市場 去來方式을 그대로 답습하고, 都賣市場運營 經驗이 없는 委託商 중심의 新規法人 수용으로 資金 및 管理能力이 부족한 것으로 分析된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구체적으로 分類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 流通實態가 施設設計方向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즉 日本과 같이 選別 및 規格 · 包裝出荷, 見本去來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入住對象 商人의 급증으로 施設이 협소하며 搬出入物量 積滯, 競賣場 및 仲買人 店舖內 환기불량, 특히 仲買人 店舖가 협소하다.

둘째,指定都賣人 能力未治으로 制度市場機能이 未定着 段階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8개 法人中 5개 法人이 委託商 組合形式의 指定都賣人으로 仲買人에 대한 統制力이 약하며(株主의 대부분이 仲買人임),法人의 產地物量 確保 및 業務處理能力이 미약하다.

세째, 都·小賣機能의 未分離로 都賣市場의 固有營業이 위축을 보이고 있다. 즉 補助仲買人 및 小賣商이 지정된 장소에 入住하지 않고 競賣場 內 및 道路邊에서 營業을 하고 있어 都賣基盤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小 規模 仲買人 및 補助仲買人이 小賣業務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많은 消費 者의 都賣市場內 출입으로 都賣去來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네째, 仲買人의 委託去來 선호로 去來의 질서가 混亂을 빚고 있다. 旣存市場에서 委託業務를 해 오던 仲買人들은 先貸資金 미화수 및 收益減少로 法人上場을 기피하고 있으며, 去來物量 및 去來額 노출시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第4章

去來制度 및 荷役業務 改善方案

1. 去來制度 改善方案

가. 去來制度改善의 重要性

都賣市場에서의 원활한 去來와 價格의 安定은 市場運營의 活性化와 効率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農水產物都賣市場은 新鮮食料品流通의 中樞的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市場의 安定的인 價格形成은 物價側面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去來制度에 대한 基本方針을 樹立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方向은 適正한 競爭秩序를 유지하여 公正하고 安定的인 去來의 推進, 각종 流通經費의 節減등을 꾀하도록 하는데 유의해야한다. 또 安定的인 去來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計劃的인 集荷 및 販賣의促進, 豫約相對去來 등 長期的인 需給事情을 감안한 去來定着에 강력한 지도를 펴나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豫約相對去來를 推進함에 있어서는 大量去來에 의한 安定的인 價格形成, 효율적인 去來 등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去來條件의 適正化를 이룩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편 販賣方法에 있어서는 一括上場 分割販賣를 유도함으로써 大量集中 去來를 促進하고 規格化 및 貯蔵性이 있는 商品에 대해서는 見本去來 및商 標去來등을 推進해야 한다. 競賣에 있어서는 價格形成의 公正性과 安定性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수반되는 會計業務의 正確, 迅速處理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競賣士에 대한 教育擴大와 帳簿作成의 體系化, 競賣事務處理의 電算化, 情報處理센터 運營 등을 적극적으로 推進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종 代金의 迅速, 正確한 決濟는 出荷者의 保護, 市場信用力의增大 등 去來의 원활화와 流通費用의 節減등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代金決濟에 관한 規則의 制度확립과 그 遵守履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나. 都賣市場의 去來方法 分析

11 去來方法의 特性

都賣市場의 去來方法은 大量商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一般 產地收集市場이나 分散市場에서의 去來方法보다 効率的인 去來方法을 채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都賣市場은 農安法 第 28 條에 의하여 受託販賣를 原則으로하고 있으며,同法 第 29 條는 賣買方法을 明示하고 있다. 즉 都賣市場에上場된 農水產物은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으로 이를 賣買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去來方法은 특별한 事由가 발생하지 않아도 競賣 또는入札方法을 사용하지 않고 隨意賣買를 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都賣市場이 法定都賣市場,共販場 그리고 類似都賣市場으로 三元化되어 있고 특히 類似都賣市場의 去來方法을 規制할 수 없기 때문에전적으로 隨意賣買 즉 相對賣買를 하고 있다.

法定都賣市場과 共販場에서도 品目에 따라서는 相對去來가 많고 競賣方式도 형식적이거나 相對賣買에 가까운 去來方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公開的인 公正한 去來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制度市場의 公的 機能遂行과 商的 機能改善을 위한 流通關聯人의 노력에

¹⁾ 다만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定價 또는 隨意賣買 를 할 수 있다.

의해 점차 競賣方式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都賣市場 去來方法이 全量競賣方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農水產物 자체가 出荷過程에서 競賣가 가능하게 集荷되지 못하고 標準化,等級化되지 못한채 少量集合이 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競賣에 대한 商人들의 認識不足과 都賣市場이 公正한 競賣를 할 수 있는 受容力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類似都賣市場에서 相對去來를 하고 있기 때문에 生產者가 都賣市場 出荷를 기피하고 있기때문이다.

현재 慣行的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존 都賣市場의 部類別 去來方法을 보면 靑果物과 水產物은 手指式 競賣方法이 많고, 畜產物은 標札記錄式 競賣方法을 주로 쓰고 있다. 그러나 類似都賣市場에서는 競賣方法이아닌 隨意賣買를 통해 去來가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靑果物에 있어서 果實類와 일부 菜蔬類는 競賣方法을 채택하고 있으나 少量出荷되는 果實類와 대부분의 菜蔬類는 隨意賣買를 통해 去來가 이루어 지고 있다. 競賣가 이루어지는 品目중에서 大都市의 都賣市場에서는 手 指式 競賣方法을 쓰고 있고 그외의 小都市 都賣市場은 珠板式 競賣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小都市 都賣市場에서 사용되고 있는 珠板式 競賣는 競賣士의 주관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 競賣士가 物品需給을 조절하여 豫 想價格 水準까지 유도하지 못할 경우는 非効率的인 가격형성이 초래된다. 특히 買入者가 小數일 경우는 競爭條件을 갖지 못하여 物品의 豫定價格까 지의 유도가 매우 어렵다.

水產物은 手指式 競賣方法을 사용하고 있는데 魚種이 다양하고 少量인 品目이 많아서 競賣過程이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內陸地 都賣市場의 水 產物出荷者는 產地仲買人이 많기 때문에 競賣에 대한 手指方法을 이해하고 있어 出荷者의 의혹을 덜 사고 있다. 특히 水產物의 競賣는 高級魚種, 大衆魚種, 貝類 등으로 分類하고, 競賣士도 魚種別로 전담하여 競賣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乾魚物의 去來는 珠板式競賣에 의한 相對去來를 하기 때문에 非公開的이고, 有效한 競爭을 유발하지 못하며 買入者가 小數일 경우에는 時勢가 下

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畜產物 去來는 標札記錄式 競賣方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固定競賣方式을 쓰기 때문에 集中的이고 時間이 절약된다. 公開的으로 경쟁되기 때문에 出荷者나 仲買人들의 의혹을 사지 않아 비교적 공정한 去來方法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畜產物은 근본적으로 都賣市場에서의 枝肉去來는 公開競爭에 의해 去來되고 있지만 小賣段階에서의 精肉去來는 行政指導를 받는 去來이기 때문에 價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都賣市場에서 上場物量이 부족하여 枝肉競落價格이 精肉小賣價格보다 높아지는 경우 買入者는 價格의 차이에서 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입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品質마진을 초래하여 不公正去來를 조장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따라서 畜產物 都賣市場去來는 去來方法上의 問題라기보다는價格形成體系上의 非連察性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2 去來方法의 種類

(フト) 競 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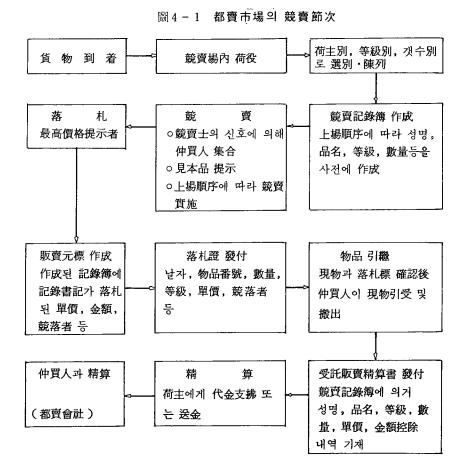
(1) 競賣의 本質

競賣라 함은 다수의 販賣人과 購買人이 일정한 場所에서 販賣할 物品의價格을 공개적으로 呼價하여 경쟁적으로 결정하는 方法이다. 競賣에 의한 販賣는 需要와 供給을 일치시키는 方向으로 유도하며 市場에 上場된商品이 많든 적든 언제나 購買人이 公開的으로 競爭的인 呼價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公開的 方法은 市場內에서의 각종 음성적 賣買를 방지함으로써 不正去來의 원인을 除去하고 나아가 公正去來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競賣는 일련의 商品이 계속하여 販賣되기 때문에 豫想購買者에게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購買하는 商品量 이 平均費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그 자신이 完全差別價格에 대해 책 임을 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競賣過程은 일반적으로 購買者로 하여금 商品購買에 관한 完全한 지식을 갖지 못한 일정시점에서 商品 한 單位 또는 그 이상의 單位를 購買 하도록 意思決定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價格受取者는 일정 商品에 대한 購買를 단 한번에 決定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競賣란 購買者로 하여금 처음 購買하려던 商品이 다음에 購買하려는 商品보다限界價值가 더 높다는 이유때문에 그들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만약 購買者가 購入한 商品의 限界收入과 限界費用이 같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아 購買者剩餘는 감소되지만 購買者 자신은 購買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다.

購買者側에서 보면 呼價方法은 대단히 중요하다. 呼價를 어느 정도 높여 가느냐는 購買者 자신이 해결해야 할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과제이다.



呼價方法은 購買者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競賣에 임하게 된다.

첫째, 購買者는 예상한 平均價格水準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각 等級別로 싸고 고르게 比例的으로 購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販賣될 總量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特定商品을 일괄적으로 大量購入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利潤을 極大化 하는 것이다. 購買者는 競落된 商品의 支拂費用과 購入價值의 차를 최대화함으로써 期待利潤을 極大化 해야 한다.

比例購買와 利潤極大化는 競賣制度下에서는 相互關係를 갖는다. 그러나이러한 目標는 販賣者側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相對的이다. 競賣制度가 出荷者에게 무조건 委託을 原則으로 하고 있는 한 競賣主催側도 受託拒否禁止를 지켜야 한다.

(2) 競賣方法

競賣의 方法은 英國式 競賣方法(競上式)과 네덜란드式 競賣方法(競下式)으로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가지 競賣方法은 競賣 法則, 施設, 呼價過程 및 方法에서 여러가지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英國의 競上式 競賣方法은 일반적으로 販賣者側에서 指示된 순서에 따라 公開的으로 買受希望價格을 最低價格으로부터 점차 最高價格으로 申込하게된다. 競賣士는 한번 또는 여러번 價格을 올려 부를 수도 있다. 이 과정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呼價가 이루어질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競賣方法은 需要와 供給實情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하겠다.

네덜란드의 競下式 競賣方法은 주로 販賣者側이 먼저 最高價格을 제시한다음 점차적으로 價格을 낮추면서 申込價格을 결정하여 競落이 결정된다. 따라서 각 去來段階마다 한번 呼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競賣에 있어서는 價格變動幅이 크고 競落價格水準도 심하게 변동된다. 특히 競賣市場에서 商品의 需給이 不均衡일 경우에는 競落價格 差異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이 두가지 競賣方法의 비교는 競賣市場의 施 設, 上場되는 商品의 量, 競賣에 적절한 商品의 具備條件, 賣買參加者의 水準등에 달려 있다. 특히 競賣士가 賣買雙方의 어느 쪽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上場된 商品이 어느정도 需給의 均衡을 이루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出荷量의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賣買雙方 어떤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競賣는 技術的인 면에서 固定競賣와 移動競賣가 있는데 場所와 品目에 따라 競賣方法을 바꾸어 가면서 하고 있다. 특히 채소류는 移動競賣를 많이하고 있으며 과일류는 固定競賣를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都賣市場에서의 競賣方法은 競上式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呼價가 上向的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購買者를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都賣會社는 營業實績을 올리기 위해 競賣實績을 높여야 하며, 出荷 者는 소규모 불규칙적 出荷 때문에 價格決定過程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지 못한다. 특히 豫想價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出荷者가 豫想最高價格을 예측할 수는 없다. 특히 競賣에 의한 價格決定은 購入者의 상황,내일의 入荷豫想量, 어제의 入荷狀況, 日氣, 去來品目의 人氣, 品質, 商標등에의하며, 競賣士의 판단에 많이 좌우된다.

(3) 競賣時 應札方法

競賣時 채택하고 있는 應札方法은 手指式方法,珠板式方法,標札記錄式, 方法,電光板式方法이 있다.

手指式方法은 願買者가 손가락으로 數字를 표시하여 應札價格을 표시하는 方法으로서 전원이 應札價格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競賣士는최고應札者에게 落札하는 方法으로 多量의 物量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이 方法은 주로 靑果物,水產物의 競賣方式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部類別,市場別로 手指方法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專門的인知識이없는 出荷者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

珠板式方法은 願買者가 珠板에 應札價格을 표시하는 方法으로서 競賣士 가 珠板을 가지고 仲買人이나 賣參人이 價格을 제시하면 最高價格을 제시 한 사람에게 落札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競賣士가 미리 計劃한 豫 定價格水準까지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時間이 많이 소요되어 많 은 願買者가 참여할 수 없으며 판단착오로 價格差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地方都賣市場이나 少量出荷가 되는 채소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競賣士의 역량과 판단력에 따라 높은 落札價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非公開的인 방법으로 願買者가 應札價格을 표시하기때문에 廉價販賣가 발생될 수도 있다.

標札記錄式方法은 仲買人이나 賣買參加人인 願買者가 나무판으로 된 흑 판에 자기가 원하는 希望價格을 기록하여 제시하면 競賣士가 최고 價格을 제시한 사람에게 落札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出荷者나 消費者가 모두 볼 수 있는 公開的인 방법으로 의혹이 없으며 정확성이 있으나 흑판에 일일이 기록하여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畜産物 都賣市場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법이다.

電光板式方法은 願買者가 자기가 희망하는 價格을 각 개인의 의자에 부착된 電光板 표시등을 눌름으로써 자기가 희망하는 價格을 표시하고 최고 應札者에게 競賣士가 落札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신속하고 公開的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方法이지만 出荷量이 많은 대규모 都賣市場이 아니면 施設費用이 화다한 단점이 있다.

(4) 競賣의 長短點

競賣에 의한 販賣方法은 다른 去來方法에 비해서 몇가지의 長短點이 있다.

먼저 長點으로는 ① 競賣制度는 公開販賣制度이다. 즉 販賣者와 購買者가 그들의 競爭者가 支拂하거나 受取하는 수준을 알 수 있는 公開市場이형성된다. 따라서 生產者,商人,消費者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情報를 전파하여 줄 수 있다. ② 모든 市場參與者들이 동등하게 競爭할 수 있어 購買者나 販賣者가 計劃去來를 할 수 있다. ③ 大量去來로 手數料를 낮출 수 있어 經濟的인 販賣手段이 된다. ④ 商品 出荷者에게 高級品과마찬가지로 低級品의 農產物에도 충분한 市場價值를 제공한다. 즉 商品의 等級에 따른 段階別 競賣는 각等級에 따르는 適正價格을 보장해준다. ⑤ 대규모 및 소규모 生產者에게 균등한 販賣機會를 준다. ⑥ 生產者가市場價格의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즉 市場의 競落價格이 生產費以下로 떨어지면 生產者는 出荷를 중단하여 價格下落을 방지할 수 있다. ⑦等級

化와 標準化의 필요성을 生產者에게 교육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이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한편 短點으로서 ① 競賣制度下에서는 低價格 또는 불안정한 價格이 형 성될 소지가 있다. 특히 購買者의 談合으로 인한 價格變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出荷者들의 出荷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②購買者가 數 的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競爭條件을 갖지 못할 수 있다. 市場開設者의 市場管理方法에 따라서는 購買者를 제한하여 需要制限現象을 가져오게 되어 價格下落을 초래할 수 있다. ③지나치게 많은 去來者, 取 扱者,投機人들이 모여 市場을 投機場化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 이 있다. ④ 重量去來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等級制度가 잘 지 켜지지 않아 不公正去來가 되기 쉽다. 즉 競賣는 標本 및 見本去來가 일 반적인데, 見本 商品이 전체 出荷商品의 量이나 質과 일치하지 않거나 出 荷者가 等級規定에 의한 標準化를 지키지 않아 出荷者와 購買者가 서로不 信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⑤ 出荷者는 出荷商品이 上場되기까지, 특히 集中出荷期에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競落된 商品의 販 賣代金을 受取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競賣場施設이 미비한 곳에서 는 競賣가 늦어짐에 따라 商品이 변질될 우려도 있다. ⑥ 많은 出荷者 가 저문적인 競賣方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항상 出荷者에게 불리하게 競賣가 이루어진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⑦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 해 競賣 手數料가 지나치게 높다. ⑧ 競賣場의 施設이 좁고 불완전한 경 우, 대량의 商品이 한꺼번에 집결됨에 따라 부패,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叶) 入 札

入札方法은 競賣方法과 비슷하지만 한 사람이 최고 申込價格을 한번밖에 申込할 수 없다. 즉 仲買人이나 賣參人이 종이에 자기의 希望價格을 적어 비밀리에 競賣士에게 제시하면 競賣士가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最高價格을 제시한 사람에게 落札시키는 방법이다. 이 方法은 정확하다는 長點이 있으나 公開的이 아니며 時間이 많이 소요되고 價格競爭을 유도할수 없다.

農水産物 去來에 있어서 入札은 原料 農水産物로서 일정조건의 豫定價格을 內定하고 있거나,輸入農水產物을 再販賣할 때 去來하는 方法이다. 또한 都賣市場에서 조건부 受託일 경우 채택할 수 있는 方法이며 內定價格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그것이 去來人에게 共通的으로 통용되는 조건이어야가능하다.

(叶) 隨意 및 定價賣買

隨意賣買는 購買者 한 사람과 販賣者 한 사람이 서로 相對方을 찾아 數量,價格,결제조건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賣買方法으로 개인과 개인의 去來이다.

都賣市場에서는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에 의해서는 去來가 어려운 경우로, 貯藏性이 있거나 去來量이 적은 品目, 競賣 또는 入札이 종료된 후入荷된 品目, 出荷者에 대한 적정한 價格保障 기타 農水產物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品目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隨意賣買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같은 隨意賣買方法은 出荷者의 價格을 지지하는 장점이있는 반면 價格決定의 非公開性, 去來時間이 과다하게 所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定價賣買는 生產者나 出荷者가 市場에 出荷한 商品에 대해 일정한 價格을 게시하여 販賣하는 去來方法이다.

③ 部類別 競賣可能品目 分析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都賣市場에 上場된 農水產物이 효율적인 競賣制度를 통해 去來가 되도록 유도해야 함은 재론의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選別,等級 및 包裝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品目만이 競賣가 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農水產物은 相對賣買 또는 定價賣買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相對賣買 또는 定價賣買에 의한 去來方法은 價格決定過程이 공개되지 않아 가격형성의 비효율성과 함께 公正性에 있어서 의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競爭條件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去來方法상의 前近代性,不合理性을 개선하지 않으면 항상 불신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都賣市場에서는 農水產物全品目에 대해서 公開的인 競賣를 원칙으로 去來하여야 하고 일부 少量으

로 出荷되는 品目에 대해서는 相對賣買 등의 去來方法을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都賣市場에 上場되는 農水產物은 選別,等級 및 包裝化의 水準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大量의 品目을 見本에 의한 競賣去來 가 당장은 불가능 하겠지만 都賣市場에서의 競賣制度의 조속한 정착을 위 해서는 選別,等級 및 包裝된 農水產物이 出荷되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즉 競賣를 통해 販賣될 수 있는 農水產物을 분류해 본다면 그 特性에따라 ①定期的으로 大量供給될 수 있고, ②等級 및 包裝을 통한 엄격한 標準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大量 出荷되는 品目이라도 이것이 변질되기전에 다수의 購買者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축하게 去來될 수 있는 農水產物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部類別로 競賣可能 品目과 競賣不可能 品目을 區分하여 보면 $\langle \mathbf{表} 4-1 \rangle$, $\langle \mathbf{a} 4-2 \rangle$ 와 같다.

	구분		경 매	가 능	- 품	목	7	병매 불	가능	- 품 5	구 *
류별		- 품목수	주	요	품	목	품목수	주	<u>\$</u>	품	목
과실류	33	21	사과, 비	ㅐ, 복숭	아,	포도, 감	12	유자,	수구	리, 오	-디,
			귤, 단7	ֈ, 바니	ᆉᆉ,	파인애플	,	뻣지,	머루	, 다라	, 개
			밤,떫	은감,돗	씃감,	잣, 대추		암, 으	름,	산딸기	, 나
			살구, 기	ት두, 은	-행,	호두, 모		무딸기	, <u>E</u> .	토리,	상수
			과, 석	류, 무호	}과 ,	앵두		리			
엽채류	5	5	배추, 역	양배추,	시금	[†] 치, 상치	,				
			미나라								
근채류	5	5	무우, 대	강근, 연	년근,	우엉, 토					
			란								
조미채류	9	9	마늘, 역	냥 파 , ㅍ	ት, ቻ	고추, 물					
			고추, 2	선고추,	락고	·, 생강,					
			부추								
과채류	11	9	오이, 3	호박, 침	}외,	메론,백	2	늙은오	이,	늙은호	박
			과,수	박,토미)토,	딸기, 가					
			지								

表 4-1 青果物의 競賣可能品目 分類

구분		경 매 가 능 품 목			경매불가능품목*		
류별		품목수	주 요 품 목	품목수	주 요 품 목		
양채류	12	12	쎄러리, 파세리, 레타스, 피				
			망, 브로코리, 칼리후라우어,				
			고라비, 케일, 비트, 아스파				
			라가스, 오크라루비볼				
버섯류	9	4	느타리, 양송이, 생송이, 표	5	옥이, 석이, 팽이, 싸		
			<u> </u>		리, 아카시아		
나물류	8	2	콩나물, 숙주나물	6	두릅, 고사리, 더덕,		
					도라지, 미위, 취나물		
들나물류	12			12	달래, 냉이, 소비름,		
					명아주, 고돌배기, 생		
					쑥, 씀바귀, 돈나물,		
					익모초, 토당귀, 죽순,		
					참죽나무순		
채두류	6	2	완두, 자두	4	동부, 녹두, 잠두, 채		
					두		
건조채소	4			4	마른고사리, 무우말랭		
					이, 박꼬지, 호박꼬지		
서류기타	5	5	감자, 고구마, 풋옥수수, 풋				
			수수, 땅콩				
기타채류	5			5	고구마줄기, 고추잎,		
					호박잎,깻잎,칡뿌리		
계	124	74		50			

^{*} 出荷頻度가 낮고 出荷物量이 적은 50 個 品目은 競賣 以外의 去來方式에 의한 去來 허용. 단 50 個 品目도 점차 競賣에 의한 販賣實施.

表 4-2 水産物의 競賣可能 品目 分類

구분			경 매 가 능 품 목 경매불가능품목*
류별		품목수	주 요 품 목 품목수 주 요 품 목
어 류	42	37	고등어, 갈치, 조기, 명태, 5 멸치, 똘락, 망둥어,
			가자미, 넙치, 삼치, 꽁치, 참치, 새치
			임연수어, 서대, 대구, 노가
			리, 돔류, 병어, 민어, 뱅어,
			강달이, 도루묵, 농어, 농성
			어, 눈볼때, 장어, 양미리,

	구분		경 매 가 능 품 목		경 매 불 가 능 품 목*
류별		품목수	주 요 품 목	품목수	- 주요품목
			숭어, 복어, 전어, 청어, 전		
			갱이, 준치, 가오리, 아꾸,		
			방어, 상어, 학꽁치, 뱀뱅이,		
			정어리, 쥐치		
패 류	15	8	굴, 홍합, 반지락, 꼬막, 새	7	소라, 전복, 맛, 개량
			조개, 동죽, 백합, 피조개		조개, 가무락, 골뱅이,
					키조개
연체동물	4	1	오징어	3	문어, 쯔끄미, 낙지
갑각류	6	2	대하, 중하	4	보리새우, 닭새우,
					꽃게, 왕게
해조류	5			5	생미역, 톳, 말, 우무
					가사리, 다시마
건어류	19	9	건명태, 건오징어, 건멸치,	10	건새우, 건홍합, 건해
			실치, 굴비, 김, 건다시마,		삼, 오징어채, 병어포,
			건미역, 염장미역		조개살, 쥐치포, 건우
					무가사리, 도박, 말
젓갈류	4	2	멸치젓, 새우젓	2	명란젓, 창란젓
기타	3			3	해삼, 성게, 멍게
계	98	59		39	

^{* 39} 個 品目은 隨意賣買.

4 部類別 適正去來 方法

農安法에 의하면 都賣市場에 上場된 農水產物의 去來는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現在 많은 都賣市場이 隨意賣買方法을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公正하고 신속하게 公開的으로 去來하기 위하여 隨意賣方法을 規制하고 하루 빨리 모든 都賣市場이 競賣方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部類別로 適正去來方法은 市場과 地域에 따라상이하겠지만 모든 市場이 통일된 標準去來方法이 권장,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靑果物의 경우 果實類와 열매채소류는 현행 手指式 競賣方法으로 통일, 보급하며, 菜蔬類中 大量出荷되는 品目은 手指式 競賣方法을 채택하고 기 타 少量出荷되는 品目은 珠盤式競賣 혹은 相對賣買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水產物은 手指式 競賣方法을 원칙으로 하며 大都市 大量上場되는 都賣市場에서 는 魚種別로 專門化된 競賣士를 양성, 이들이 전 品目을 순회하면서 競賣함으로 써 去來를 전문적으로 세분화 하도록 단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畜產物 去來方法은 현행 標札式 競賣方法을 채택하고 仲買人數를 늘리거나 賣參人數를 확대하여 競爭條件을 강화한다. 또한 畜產物 價格體系가生畜,枝肉,精肉價格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精肉小賣價格을 단계적으로 自律化하여 都賣市場의 枝肉競落價格을 完全競爭이 되도록 유도되어야한다.

다. 去來制度 定着化 方案

1 去來方法의 改善

현재 우리나라의 都賣市場去來는 出荷量 增大에 따른 改善된 去來方法 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都賣市場이 法定都賣市場, 共販場, 類似都賣市場으로 三元化되어 있고, 類似都賣市場에서는 競賣方法이 채택되지 않고 相對去來로 去來되기 때문이다. 또한 法定都賣市場도 일부 몇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競賣方法이 제대로 채택되지 못한채 公正去來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問題點이 따르고 있다.

첫째, 都賣市場의 去來方式이 競賣方法을 채택하고 있다지만 品目에 따라 地域과 市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실제로 많은 品目이 非公開的인 去來 方法으로 賣買되고 있다. 특히 類似都賣市場은 전량 隨意賣買를 하고 있 어 非公開的인 去來가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法定都賣市場이 開設되었거나 앞으로 開設될 地域에서는 기존類 似都賣市場의 個人委託商을 法定都賣市場으로 흡수하여 公開的인 去來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地方都市의 個人委託商 중심의 類似都賣 市場은 점차 단계적으로 일정조건과 基準을 제시하여 法定都賣市場으로陽 性化한다.

둘째, 競賣方法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競賣方法은 手指式 또 는 珠盤式 競賣方法을 쓰고 있으나 手指式을 제외하면 公開競爭的이 못된 다. 즉 珠盤式 競賣方法은 非公開的이고 時間이 많이 소요되는 점과 價格 形成이 競賣士의 주관에 따라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며, 去來人이 잘 못 판단하여 심한 價格差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珠盤式 競賣方法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生產者나 商人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手指式 競賣方法을 권장, 보급하는 것은 公正去來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세째, 競賣時間과 競賣順序의 올바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競賣時間은 上場物品이 완전히 集荷할 수 있고 新鮮度가 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시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競賣順序도 新鮮度와 價格決定에 影響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保管施設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 靑果物은 商品 도착순서에따라 下等級에서 上等級으로 실시하는 것이 商品性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네째, 呼價過程에서 談合行爲를 흔히 볼 수 있다. 購買商品의 교환, 사전 조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여 價格을 올려 부르거나, 한사람의 主導者에 의한 指導價格 채택과 같은 경우이다. 흔히 競賣市場에서의 競賣士나 都賣會社는 처음 商品을 出荷한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競落시켜 出荷者를 보호하지만 出荷量이 늘어나거나 超過供給이 이루어지면 購買者 측에 서서 競賣를 주선시켜 주게 된다. 특히 隨意賣買를 허용하는 경우는 이러한談 合現象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都賣市場은 지나친 예외 규정을 줄이고 원 칙대로 去來할 수 있으며 競爭을 유발할 수 있도록 出荷物量과 販賣先을 적절하게 확보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賣買參加者의 資質向上을 도모한다. 競賣士는 機能商人이기때문에 去來를 公正하게 주도해야 할 公益的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現行都賣市場은 競賣士가 적고, 專門化되지 못하여 客觀性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競賣士 임용조건을 강화하고 教育訓練을통해 專門的인 競賣士 양성에 힘써야 하겠다.

또한 仲買人과 賣參人도 競賣過程에 대한 자체 식별능력이 있고 商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需給에 대한 展望을 할 수 있어야 하고, 出荷者도 競 落價格음 예측하거나 예상가격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여섯째, 代金決濟方法도 여러가지 市場別로 차이가 있으나, 過程을 간소화 하여 出荷者가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 다음 去來 와 연결시키고 계속 出荷하도록 代金을 完全支拂하지 않고 항상 남겨 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標準規格化 等級化의 定着

都質市場 去來는 公正하고 신속하게 公開的으로 去來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商品의 量的,質的 통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標準化된 等級化가 필요하다.

農水產物은 去來單位가 統一되지 않고 去來單位가 복잡하며 包裝規格이 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인 主觀的 等級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去來를 能率化하고 公正去來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標準去來單位를 설정하고 去來 單位를 統一하여 단계적으로 重量 또는 包裝을 基準한 包裝規格化와 크기 또는 品質을 基準한 等級化를 통해 標準規格化된 去來를 定着시켜야 할 것 이다.

(力) 標準,規格化

標準이라 함은 일정한 財貨의 諸般測定을 위한 共通的으로 合議된 尺度를 말한다. 그런데 農水產物 流通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標準은 一括的으로 規定하기가 어려워 流通過程을 單純化하거나 流通費用을 節減시키는데는 많은 制約이 따른다. 標準 그 자체는 財貨의 賣買 즉 交換을 위한倫理的 기초를 提示하나 이것이 一定하지 않음으로써 去來上의 혼란,不公正去來 및 購買者 危險轉嫁 등의 現狀이 나타나며 生產者에게 損失을 초래한다.

특히 農水產物 流通過程에서 標準化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制定過程과 施行上에 制約이 많다. 現行 流通過程에는 農水產物 檢查法에 의하여 標準規格化되고 있으나 일부 品目에 制限되고 대부분 市場去來品目은 관행적인 去來單位를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標準化에 대한 基準設定도 없었지만 標準規格化 할 수 있는 包裝產業이 발달하지 못하여 非包裝된 商品으로 去來되었으며 去來過程에서 標準規格化된 商品이 去來條件에서 유

리하게 보장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去來單位로 產地,都寶,小寶段 階에서 통일된 去來가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취급기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現 都實市場 去來의 慣行을 基礎로 하여 農產物 檢査法이 規定하고 있는 내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實現可能한 品目을 對象으로 점진적으로 展開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山) 等級化

等級이란 일정하게 設定된 基準에 따라 商品을 分類하는 것으로서 等級決定 對象品目에 따라 여러가지의 等級으로 나누어진다. 즉 生產物을 品質的 屬性에 따라 專門化시키는 것으로서 모든 農水產物을 去來하기에 용이하도록 적절한 기본적 척도 또는 한계를 결정하는 標準値에 따라 等級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等級化는 商品價值를 결정하는데 특징적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야 하며 特定商品을 이용하는 데에 편리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편 等級基準은 部類別, 品目別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기, 產地, 색갈, 모양, 品種, 新鮮度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產地, 맛, 品種 등을 기준으로 한 質的 等級이 점차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去來等級은 上, 中, 下의 3가지로 주로 區分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等級이 아니라 出荷量에 따라 去來等級이 向上 또는 下向調整되고 있다.

等級化는 生產者, 消費者 그리고 商人에게 共通的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等級化는 각 流通參加者들이 그들의 目的을 추구하려는 相反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共通的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等級制定이 國家次元에서 하루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③ 競賣士 資質向上

都賣市場機能中 가장 중요한 機能의 하나는 價格形成機能일 것이다. 그런데 이 價格形成은 經濟理論上으로 需要와 供給에 의해 決定되지만 需 要와 供給의 一致點을 접근시켜 나가는 任務를 지닌 者가 競賣士이다. 이렇듯 競賣士는 指定都賣人에 소속되어 都賣市場에 出荷된上場物品의品 名,產地,等級 등을 소개하여 競賣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呼價를 物品의 需給에 적합하게 競爭시켜 公正한 價格決定下에서 競落者를 決定하는 중요한 機能을 수행한다. 따라서 競賣士는 物品의 入荷寶績,入荷豫想量,物品出荷地域,일기,物品의 人氣度,他市場의 價格 및 物品把握,需要者의 狀況把握 등을 판단할 수 있는 專門的인 知識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競賣士는 出荷者의 중요한 財產을 취급하고, 購買者의 事業과 消費者에게 영향을 미치며, 專門人으로 競賣業에 긍지를 갖고 上場商品에 대해 충분한 豫備調査實施, 활기있는 競賣의 지속, 競賣技術의 꾸준한 研究, 분별력의 배양, 정확한 事後處理, 항상 改善하는 麥勢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競賣士는 言語와 복장에 주의하며 公正한 人間關係와 法을 준수하고 언제나 냉정한 마음 자세로 자만과 과오를 범하지 않는 확고한麥勢와 모든면에 있어서 生產者와 商人 또는 所屬團體의 構成員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실력과 덕망을 갖추어야 하며 他人의 모범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都賣市場에서 막중한 역할과 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競賣士는 農水產物의 流通過程에서 최대의 流通効率의 성취는 물론 이를 통하여 農水產物의 出荷者와 消費者에게 서로의 利益이 가는 價格形成으로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는 동시에 流通過程에서 流通參加人의 適正利潤이 보장되기 위한 건전한 流通環境의 조성과 公正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서는 競賣士에 대한 教育訓練을 통해 競賣技術과 能力을 최대한 배양하여 競賣士의 資質을 向上시켜 都賣市場의 近代化에 앞장서야 하겠다. 그러므로 경매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에 의거하여 경매사 자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都賣市場의 指定都賣人은 都賣市場에서 公正하고 迅速한 去來를 수행하기 위하여 競賣士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農安法 第26條에 따라 指定都賣人이 開設者의 承認을 받아 任免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競賣士가 되기위한 資格要件은 農安法施行令 第19條에 명시되어 있다. 즉 競賣士가될수 있는 자는 첫째,該當部類 都賣市場에서 競賣士에 職에 종사한 經歷이

있거나 競賣士 補助業務에 1년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일것. 둘째, 農水產物都賣市場 指定都賣人協會가 農水產部 長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競賣士 教育過程을 이수한 者이다. 그러나 職務遂行上 法令에 위반한 경우나 현저하게 不公正行爲를 한 때에는 그 任命에 대한 承認을 取消할수 있다. 取消할수 있는 사유로서 첫째, 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둘째,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었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者 세째, 取消事由로 인해 任命의 承認이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者, 네째, 指定都賣人은 소속 競賣士중에서 農安法上의 命令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不公正한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開設者에게 그 解任의 承認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섯째, 解任承認要請을 받은 開設者는 그요청한 事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承認與否를 決定,通知하여야 한다.

이상의 現行 法令에 規定한 競賣士의 資格基準,任免承認 및 取消要件外에도 競賣士의 역할에 비추어 다소 補完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資格基準에서 競賣士는 仲買業이나 賣買參加業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하고 나아가 이들의 職員이 된다거나 使用人으로 있는 者는 排除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競賣를 遂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驗 또는 能力을 갖춘 者는 객관적인 選拔基準에 의거 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競賣士는 그 身分 法體系上 指定都賣人의 職員 또는 使用人으로 非公務員이지만,收路,제삼자 路物提供,收路後 不正處事 및 事後收路, 斡旋收路 등 그 職務와 관련된 不正行爲를 범하였을 때에는 公務員의 身 分을 갖도록 하여 刑法上의 처벌을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競賣 士를 단순한 民間會社의 職員으로만 보지 않고 社會,經濟運用에 있어 公 益的 使命을 遂行하는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2. 荷役業務 改善方案

가. 荷役組織

農水產物의 荷役業務 범위는 產地에서의 上車作業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去來가 종료된 다음에 小賣店舖로 향하기 위하여 上車되는 段階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와같은 荷役業務는 그 順序로 볼때 上車→下車→上車→下車라는 4段階의 作業過程을 거치게 된다. 이중 都賣市場에서 거치게 되는 과정은 中間段階에 속하는 下車와 上車過程인데 下車作業이 우선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去來의 대부분이 現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都賣市場內에 도착되면 일단 下車되어야 한다. 그밖의 荷役業務는 場內에서의단순한 場所移轉과 관련된 作業이 약간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荷役作業方法이 法令 및 規定등에 구체적으로 明示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制度的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當該 市場이 처한 형편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서울市內 都實市場의 例를 들면 全國港灣運輸勞動組合과 全國聯合勞動組合聯盟 2個 組織이 그 산하에 市場 單位組合을 結成도록 하여 荷役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市場荷役 單位組合이 結成된 곳은 서울地域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대부분 뚜렷한 組織이 없이 소위 作業班에 의해 遂行되고 있다. 이때 作業班은 都賣會社에 귀속된 직원의 일종이기도 하고 都賣會社와 전여 관계가 없는 단체의 직원이기도 하다.

한편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實市場內 荷役業務는 앞서의 2個 勞動組 合이 入住하여 遂行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전 龍山市場의 組織이 그대로 移 轉하여 成立된 것이다.

나. 荷役方法

荷役作業은 원칙적으로 手作業에 의하되 정해진 料金表에 의해 作業料를 生產者로부터 徵收하고 있다.

生產地에서 市場에 搬入된 貨物을 下車할 경우에는 出荷者인 生產農漁 民이 부담하나 일단 市場에서 去來가 끝나 市場外로 搬出하기 위하여 上 車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購買者가 부담한다. 과거 龍山市場에서는 委託販賣를 위주로 去來가 이루어져 대개 上車分에 대해서는 徵收치 않았 으나 현재는 上・下車를 분리하여 料金을 부담하고 있다. 이때 費用負擔 者는 購買者이다. 市場內 荷役方法을 "貨物의 흐름"에 따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각 산지로부터 到着과 동시에 시작된다. 農產物 특히 靑果物의 輸送手段은 거의 陸路輸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화물트럭이 그 主要 手段이된다. 따라서 市場內에 進入을 위한 특별한 레일(rail)을 設置할 필요가 없고 荷積臺(loading and unloading ramp) 設置는 필요하게 된다. 指定된 位置에 到達된 화물트럭은 競賣場 積置를 위해 바로 下車되어야한다. 이 경우 競賣場內에서는 重複移動이 없도록 일정한 去來場所에 積置할 것이 요망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競賣場內까지 運送車輛을進・出入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일 競賣場과 上・下車 位置를 분리시킬 경우에는 位置의 변동을 위한 별도의 施設(콘베어벨트)이 필요하거나 追加勞動을 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過程을 거쳐 일단 競賣(都賣會社去來)가 終了되면 去來品 대부분은 그 場所에서 販賣되어 上車,搬出되며 일부는 仲買人店舗에까지 運搬되어 積置하게 된다. 仲買人店舗에서去來가 成立되어야만 비로소 都賣市場을 떠나게 되며 "物的흐름"은 완료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같은 作業은 대부분 手動作業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기존 勞動組合組織 자체간 利害調整問題, 農產物商品 자체의 特性및包裝의 標準化未備 등 제요인으로 말미암아 機械化에 의한 省力化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다. 荷役所要人力 및 裝備

荷役作業遂行을 위한 所要人員判斷 基準은 市場의 流通量이다. 물론 市場面積을 基準으로 할 수도 있으나 取扱物量이 市場크기와 반드시 一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일치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基準은 不合理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밖에 機械化의 정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데 機械化가 진척될수록 荷役人員은 減少하게 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機械化를 可能케 하는 先決要件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規格化에 의한 農產物의 標準化이다. 이 標準化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機械化에 의한 省力化를 實現할 수 없을 뿐더러 荷役의 效率化 또한 달성할 수 없다.

荷役作業에 關하여 全國範圍에 걸친 調查資料 및 統計가 거의 없는 關係로 '82年度 過去 龍山地域圈을 對象으로 調査・分析한 資料에 의하면 荷役員 1人當 作業實績은 靑果物의 경우 약 8톤이었으며 24시간 隔日交代制 勤務였다. 이들의 月平均 收入은 '82년 기준 약 30萬원 水準이었는데 여기에는 비교적 높은 勞賃收入을 기록한 水產物 취급 勞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히 過大計上된 數值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 收入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表 4-3〉。

單位勞動	人員	荷役作業量	年間作業費 徴収額(千원)	1人當收入/年	1 人當作業量
組 合 名	(名)	(州)	上・下車	(원)	∕日 (५/)_
龍山共販場	32	23 ,734	67 , 331	2,104,094	2.1 (4.2)
太陽市場	98	205,470	437,492	4 ,4 64 <i>,</i> 204	5.8 (11.6)
龍山青果	52	73,655	284,232	5,466,000	3.9 (7.8)
龍山同化靑果	105	206,179	286,292	2 ,7 26 , 590	5.5 (11.0)
복개지市場勞組	92	98,868	381,735	4,149,293	3.0 (6.0)
水協龍山共販場	58	N.A	387,337	6,678,224	N.A
서울靑果勞組	179	271 ,887	418,229	2 ,336 ,475	4.2 (8.4)
計 · 平均	616	879.793	2,262,648	3,673,130	4.1 (8.2)

表 4-3 龍山圏市場 勞動組合 現況 및 活動, 1982. 12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運營方案」,1983. 10.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은 원칙적으로 龍山圈 市場을 그대로 移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나아가 四大圈에 新市場을 建設하는 것을 基本構想으로 하였다. 그런데 市場移轉에 즈음하여 荷役人員의 급격한 증가문 제를 야기시켰는데 이것은 市場移轉을 기화로 하여 果實 및 菜蔬類의 委託商數는 물론 荷役勞組員數까지도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인위적으로 增加시킨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상세하게 부연하면 '82년말에는 水協共販場 荷役勞組員을 포함하여 總 616명 이었으나 '84년 市場移轉時期에는 810명으로 무려 200여명이 늘어났고, '85년 11월말에는 1,051명으로 증가되었다. 물론여

기에는 中部市場의 人員이 加勢된 것이나 移動을 前後하여 대폭적인 人員 增加가 발생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移轉準備作業이 치밀하지 못한데 그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 외에 勞組運營과 관련한 內部事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表 4-4〉.

表 4 - 4 市場移転 前後의 荷役人員數 實態

單位:명

							<u> </u>
區	分	182 龍山市場	′84 龍山市場	' 85	可樂市場	備	考
서 울靑	果勞組	179	203		203	연합노조님	당
同和靑	果勞組	105	120)	•	강동, 동호	ㅏ, 복개지
복 개 :	지 勞組	92	145	}	310	노조 통합	
강동청	과勞組	52	71	J		항운노조님	
태 양 시	장勞組	98	137		154	주로 한국 화, 항운도	청과로 변 -조담당
農協共用	灰場勞組	32	39		121	1, 02.	- 2 0
水協	//	58	95	1	151	수협 및 경	동수산 노조
강동水	、產 勞組	_	_	}	131	항운노조두	당
중부건	해勞組	_	_		112	연합노조두	당
合	計	616	810		1,051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특히 移轉作業推進時 '82년 調査値와 '84년 實績値를 比較 檢討해 볼때 年間 荷役作業量 및 料金徵收額 규모는 '82년 調査値를 그대로 사용하고서 人員數는 200여명이나 증가된 數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1人當 徵收額 규모를 인위적으로 下向調整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作業量 또한 낮게 推定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交代制이므로 1人當 作業量은 약8.2 톤인데 이를 간과함으로써 4.0 톤을 荷役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한편, 現可樂洞 都賣市場이 보유하고 있는 各種 荷役裝備를 보면 고가 컨베어 5 組, 컨베어 벨트 15 臺, 전동트럭 70 臺, 대차 190 臺이며, 水產 物의 경우 전동지게차 4 대, 전동트럭 14 臺, 대차 133 臺를 보유하고 있다 (表 4-5) 및 (表 4-6). 이와같은 裝備는 各都賣會社別로 購入하여 勞動組合에 대역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可樂洞都賣市場에 入住한 各 指定都賣人 法人別 荷役裝備購入現況을 보

면 靑果物의 경우 고가콘베어의 경우 5 組에 90 百萬원, 콘베어 벨트 15 組에 147 百萬원, 전동트럭 70 墓에 238 百萬원, 대차 30 墓에 38 百萬원으로서 총 513 百萬원을 支拂하였으며 水產物은 전동지게차 4 墓에 51 百萬원, 전동트럭 14 臺에 48 百萬원, 대차 133 臺에 27 百萬원 총 125百萬원을 支拂하였다.

表 4-5 青果物 指定都質人別 荷役裝備購入 現況

單位:臺,千원

區	分	고가콘베어	콘베어벨트	전동트럭	대 차	비고
ત્રા ૦ - દ્રાની	수량	1 조	4	12	30	
서 울 청과	금액	18,000	39,200	40,800	6,000	104,000
농협공판장	수량	1	4	22	40	
তি পা কিশাপ	금액	18,000	39,200	74,800	8,000	140,000
강 동 국제	수량	1	4	12	30	
76 75 71 71	금액	18,000	39,200	40,800	6,000	104,000
용 산 동화	수량	1	1	12	50	
<i>হ</i> শ তপ	금액	18,000	9,800	40,800	10,000	78,600
 한 국 청과	수량	1	2	12	40	
안 ㅋ 경작	금액	18,000	19,600	40,800	8,000	86,400
계	수량	5	15	70	190	
71I	금액	90,000	147,000	238,000	38,000	513,000

資料: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와같이 구입한 장비는 지정도매인이 각종 荷役作業을 수행하는데 使用되어야 하는데 실제 上 · 下役作業을 맡고 있는 組織은 荷役勞動組合이므로 만약 이러한 機械를 使用할 경우에는 勞組와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3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과연 指定都質人이 왜, 무엇때문에 그와같은 各種裝備를 購入하였는가 이고둘째,이들 裝備購入과 關聯하여 指定都質人의 經營上 壓迫要因으로서의 작용문제와 세째, 機械化, 省力化의 추진상의 애로요인으로의 作用등이 바로 그것으로서 이와같은 상호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荷役方案은 農產物流通의 効率性을 저해할 것임은 당연하다 하겠다.

表 4 - 6 水産物 指定都受人別 荷役裝備購入 現況

單位:臺, 千워

區	分	전동지게차	전동트럭	대 차	비 고
	수량	_	5	98	
강 동 수산	금액	-	17,000	19,600	36,600
스윙기미기	수량	2	2	-	
수협공판장	금액	25,300	6 , 800		32,100
중 부 건 해	수량	2	7	35	
ত – বি লা	금액	25,300	23,800	7 ,000	56,100
 계	수량	4	14	133	
계 	금액	50,600	47,600	26,600	124,800

資料: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라. 荷役業務 改善方案

1 基本方向

都實市場을 建設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要素中의 하나가 荷役作業對策의 樹立이다. 특히 新設都實市場은 流通의 効率化를 追求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車輛의 動線計劃은 물론 市場內部設計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費用節約的인 荷役은 流通上의 經營效率 (operational efficiency)을 提高시키는하나의 주요한 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荷役作業遂行을 위한 組織,機構 및 運營등에 관해 基本方向 내지 目標를 設定해야 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첫째,全作業過程이機械化에 의한 省力化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기존 荷役人力의합리적調整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生產 農漁民의 부담을 輕減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

② 農産物 荷役作業의 特徴

市場內에서의 荷役業務는 港灣荷役이나 鐵道荷役등과는 다른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業務가 單純하다. 作業의 內容이 대부분 그 자리에서 下車만을 주로 하고 場所移動이 적다.

둘째,作業時間이 一定時間帶에 편중되는 경향을 지닌다. 作業은 農產物의 搬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대개 자정부터 새벽 3~4시경에 절정을 이룬다. 그외 시간은 거의 休息狀態에 있게 됨으로 일반적으로 勞動生產性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세째, 生產物의 破損, 壓傷, 腐敗, 變質등에 의한 滅耗 위험성이 높으므로 취급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네째, 年中 作業量이 일정한 水準을 유지한다. 물론 季節에 따라 搬入 物量의 振幅이 있으나 다른 貨物에 비하면 비교적 平準化되어 있다.

다섯째, 貨物의 換積機會가 他貨物보다 많고 去來를 위해서 迅速한 下車가 요구되며 同時多發的으로 作業이 이루어져 일시에 많은 勞力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荷役의 機械化가 대단히 곤란하다. 機械化의 先決條件은 包裝 및 規格化이다. 그러나 農產物은 商品의 特性상 實行에 있어서 매우 저 조한 水準에 놓여 있어 機械化를 推進하는데는 많은 制約要因이 뒤따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諸特性으로 인해 經濟的 効率性을 達成하기 위한 합리적 方案樹立이 어렵고 더우기 기존 勞動組合의 利害關係調整이라는 經濟外的 인 要因까지 고려한다면 현실적 代案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3 荷役機構의 組織改善方向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內 荷役機構의 組織 및 運營實態를 보면, 全國港灣運輸勞動組合聯盟 산하의 市場分會와 全國聯合勞動組合聯盟 산하의 市場組合등 2個 組合 1,063 명의 人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組織은 과거 龍山市場圈과 中部市場圈에서 활동했던 機構가 市場移轉에 따라오히려 自意的으로 增員을 하여 그대로 移徒를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더욱 더 不合理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勞動組合이 組織될려면 使用主나 雇傭主가 存在하여야 한다.

즉 使用主와의 交涉에 의해 勞動勤勞者의 權利가 주장, 관철되게 된다. 그러나 農產物都賣市場 荷役體系에서는 실제적인 雇傭主가 不在하므로 組合의 團體交涉權이 一方的으로 行事될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다시말해 勤勞者의 收益의 源泉이 주로 上・下車料임을 상기할 때 上・下役料負擔者를 使用主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下役料 負擔者는 거의 대부분 生產・出荷 및 賣出人들로서 不特定多數人들이 使用主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生產・出荷者는 市場內에서 流通機構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雇傭主로서 機能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바로 이점에서 勞組의 존재는 상대가 不分明確한 一方的 組織機構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實情아래 지금까지는 便宜的으로 個人委託商,都賣會社 또는 納稅組合등이 生產・出荷者를 代理하여 上・下役料를 정하고 또 徵收하는 業務를 代行하여 왔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社會 經濟的 및 論理的으로도 非合理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荷役料의 실제 負擔者는 生產・出荷者이므로 料金表에 의한 徵收制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負擔者의 意思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 保障되어야 한다.현재와 같이 負擔者와 協意決定者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流通費用의 節減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러한 制度로 인해 야기되는 生產・出荷者의 불만을 근원적으로 불식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使用者가 不特定生產・出荷者인 體制아래서 市場荷役勞組란 成立 그 자체의 당위성이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認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할때 별도의 荷役勞組 組織은 원칙적으로는 止揚되어야 한다.

실제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建設을 推進하게된 배경에도 그와 같은 불합리한 機構의 整備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條件아래서 콘베어벨트시스템, 지게차 및 전동차 導入에 의한 機械化推進이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그 것도 指定都賣人別로 막대한 資金을 投入하여 荷役勞組에게 貸與하도록 한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市場內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名目의 費用도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流通改善勞力과는 거리가 멀어지기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웃 日本이나 臺灣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體系를 채택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日本의 경우는 都賣會社가 職員으로 채용하여 各會社別로 荷役業務를 수행하고 있고 荷役料는 별도로 徵收 치 않고 있다. 한편 臺灣은 市場管理機構가 職員으로 채용하여 荷役業務를 遂行토록 하고 있는데 出荷主體別로(예를 들면 農會를 통한 出荷分에 대해서는 稅除, 搬出商 出荷分은 賦課) 구분하여 차별 적용하고, 料率도重量單位 定額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상의 日本 및 臺灣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制度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非經濟的인가를 인식함으로써 公營都賣市場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制度를 채택,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우리의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勞組의 統。廢合作業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人員數 調整 (특히 減員)問題는 더욱 더 至難하다. 사실 이러한 作業은 서울市,市場管理公社 및 農水產部 등 機關 단독으로 推進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主務管署인 勞動部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荷役機構組織이 일단 決定된 후 建物 및 施設의 設計段階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作業의 대부분이 深夜에 이루어지므로 宿泊施設이 필요하고 목욕시설과 같은 부수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設計前에 반영하는 것과 그 후에 반영하는 것과는 커다란차이가 있게 된다.

또 荷役作業方法에 있어서도 장래에는 반드시 機械化되어야 하므로 荷役組織이 이를 助長할 수 있는 방향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組織構成 및運用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決定(예를 들면 現行과 같이 市場이 建設되면市場開設者의 意思와 관련없이 勞組結成 또는 入住가 가능함)을 방지할 수 있는 制度的裝置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都賣市場管理運營指針書등에 구체적으로 明示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荷役組織形態는 指定都質人法人의 職員化,指定都賣人과 勞動組合間 團體協約,荷役用役會社의 別途設立,市場管理公社 直接遂行形態 5 4 가지種類 5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指定都賣人法人의 職員化와 市場管理公社 職員化形態

가 論理的으로 보거나 또는 名分상으로도 가장 說得力을 지닐 뿐만 아니라 經營效率의 極大化라는 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이상의 2 가지 形態중 指定都賣人法人의 職員化形態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근거로서는 生產・出荷者가 일단 都賣市場에서의 出荷를 決定할 때는 關聯都賣會社가 책임을 지고 販賣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都賣市場 競賣場內外서의 荷役業務는 去來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따르는 附隨的 業務로 간주하여 指定都賣人이荷役費用까지도 支拂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각 荷役方案別 長 • 短點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7 〉.

	第	1	案	第	2	案	第	3	案	第	4	案
EFΛ	指定都賣	人法人	신의	指定都	夏人괴	勞動組	荷役用	役會社	設立	市場管	理公	社
应 力	職員化			合간 團	體協網	的				直接渗	行	<u>.</u>
	○勤勞者	身分	保障	○ 勞使網	分糾 貞	最少化	○管理	・運營	의 分	○勤勞	者 身	分保
	○勞動의	質品	事級化	○作業的	定率 戊	句上	離로	勞使る	등	障障	可能	
	용이			○ 都賣1	會社 4	收支均衡	최소	화		○福祉	厚生	向上
長點	○福祉厚	生 向	上				○責任	意識强		용이		
	○機械化	·省	力化							○機械	化 •	省力
	推進 衮	易								化十	윤이	
	0料金關	聯 갈	등요인							○生産	・出	荷者
	배제									意見	反映	용이
	o 都賣會	社收	支壓	○身分	呆障 き	未治	○生產	・出荷	者 意	0公社	收支	壓迫
	迫 可能	性이	큼	○生產	・出荷	方主 意見	見反	映 裝置	未	要因	Ī	
短黑	4			反映	裝置	未治	治			○人力)管理	至難
				○勤勞	・福祉	上對策	○費用	發生要	因 큼	○作業	不良	可能
				不振						性も	<u> </u>	
				○費用	過多一	우려 큼						
	○短點에	비해	長點	0料金	表에 의	의한 徵业	○第2	案과 두	구사하	中。荷	役員-	을 公
備	이 많은	- 案	김	方案	斗 都線	給率에 의	다만	非勞動	加組合	에 社	職員	Έ
	○生産・	出荷	者의 負	한 支	拂方	失이 있음	의해	서 운영	경됨	○管	理公流	辻의
考	擔을 軽	巡滅を	<u>수</u> 있	1			o料率	制를 원	실칙으	로 豫	算 <u>。</u>	로 함
	유			ļ			함			1		

表 4-7 荷役機構別 長・短點 檢討

第 5 章

指定都賣人 및 仲買人制度 改善方案

1. 指定都賣人의 集荷機能強化 및 資金循環改善

가. 集荷機能強化의 意義와 目的

農水產物의 集荷機能은 都賣市場의 주요 機能中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集荷機能을 어떠한 流通機構가 遂行하고 나아가 어떻게 遂行하느 냐에 따라 都賣市場의 役割,다시 말해 市場의 存廢問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급기야는 한 나라의 農水產物 流通全般에 걸친 評價에까지 結 선된다.

이와 같은 集荷機能은 原則的으로 都賣市場內의 指定都賣人法人이 遂行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都賣市場機能이 制度의 未定着으로 말미암아 類似都賣市場의 個人委託商을 中心으로 發展되어 왔다. 그 結果制度圈 都賣市場의 役割이 相對的으로 衰退하였고 市場의 整備 發展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生產을 담당하고 있는 產地段階를 整備 '改善하여야 한다는 當然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農產物流通改善計劃의 根幹으로 인식되고 있다.

集荷機能을 충분히 發揮하기 위해서는 먼저 產地와의 連繫가 强化되어 야 한다. 그런데 指定都賣人 水準에서 全國의 產地를 效果的으로 管理한

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요하는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을 보면,

첫째, 産地의 生產規模가 일반적으로 小規模 零細하므로 指定都賣人法 人의 企業經營上 費用過多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둘째,消費地의 多樣한 流通情報를 產地에까지 파급 내지 전파시킬 수 있는 能力을 구비하지 못했고,

세째,指定都賣人法人의 公共的 使命意識의 不足

네째,傳統的인 商價習要因에 의한 것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農漁家段階의 諸要因 및 指定都賣人法人 自體水準을 벗어난 要因 등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指定都賣人의 責任으로 歸屬될 수 있는 要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그 反證의 例로서 同一한 여건 아래서도 個人委託商들은 物量集荷를 能動的으로 遂行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手段과方法上 制度的 規範을 逸脫한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都賣市場建設에 대한 投資가 個人事業者 다시 말해 私企業的 水準에서가 아닌 中央政府나 地方政府水準에서 公共投資의 一環으로 이루어 지는 만큼 그 속에서 都賣去來活動을 遂行하는 指定都賣人法人은 그 맡은 바 社會的 責任을 完遂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類似都賣市場의 整備作業을 同時에 併行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個人委託商이 遂行해 온 集 荷機能을 반드시 인계받아야 한다. 바로 여기에 指定都賣人의 產地開發機能의 遂行과 產地連繫機能의 强化의 意義가 있다.

나. 産地의 農産物 出荷實態

일단 生產된 農產物이 消費되기 위해서는 生產地로부터 消費地로 그 場所的 位置가 변경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出荷樣狀이 매우複雜하고 또 輸送形態 또한 다양하여 工產品의 그것과 區別되게 한다.

먼저 出荷形態를 보면 品目部類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農產物은 一定量의 自家消費分을 除外하고 販賣하게 된다. 쌀이나 보리등의 穀物類,果實類 및 菜蔬類, 그외 特作物은 각각 出荷形態가 판이하게 다르다. 穀物類의 경우 대개 政府收買가 絕對量을 차지해 生產者가 자기 責任으 로 處分해야 할 몫이 相對的으로 적어 價格變動 등에 의한 危險負擔可能性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또 比較的 長期間 保存이 可能하여 간단한 저장시설을 통해 出荷時期를 調節할 수도 있다. 그 밖의 특성으로 共同出荷 및 系統出荷의 必要性이 적고 流通過程上 精米所의 介入이 不可避하여 精米所를 통한 出荷가 주종을 이룬다.

果實類 및 菜蔬類는 小規模 零細性, 腐敗。變質性, 標準化의 困難 등의 特性을 지님으로써 共同出荷 내지 系統出荷의 必要性이 强調되고 있으며 產地 直去來를 주장하기도 한다.

참깨나 마늘, 고추 등 特作物類는 生產規模의 零細性,產地의 分散性등으로 인해 收集。搬出商의 活動이 旺盛하고 또 이들에 의해 消費地에 出荷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農產物의 主要 部類別 出荷形態 및 方法 등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諸特性 및 特徵은 都賣市場內 指定都賣人의 產地活動과 關聯을 맺게 된다.

다. 産地流通機構 및 活動

取扱하는 部類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產地流通機構로는 일반적으로 收集商,搬出商,收集。搬出商,定期市場(5日 農村市場 및 家畜市場) 및 協同組合이 運營。管理하는 產地委。共販場 등이 있다. 이 중에는 定期市場 및 委。共販場처럼 制度的으로 公式化된 流通機關이 있는가 하면 收集。搬出商처럼 非正規的인 流通機構도 있다. 그 외로는 政府가 집중적으로 育成하고 있는 協同出荷班,作目班 等이 있으나 이러한 組織들은 任意團體에 속하는 것 들이다. 이들의 活動을 보면,먼저 收集。搬出商의 경우,이들이 擡頭하게 된 근본적인 背景은 生產規模의 零細性과 生產者의 各種 意思決定을 위한 諸 資料의 부족,다시 말해 流通下部構造의 未備 2가지要因으로 集約할 수 있다.

靑果物,畜產物 및 水產物 등의 生產規模를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零細하여 그 結果 農漁家 單位의 獨自的인 出荷決定이 困難하다.또 農漁村地域의 通信施設 및 裝備의 未備,流通統計,市場情報의 不足과 不 正確,標準化 및 等級化의 未定着 등 이른바 流通下部構造의 落後로 말미암아 生產者 個人 單獨으로는 市場에 對應해 나가기란 대단히 어려운 狀況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生產 農漁民의 市場對應力을 補完 내지 代替하는 機能을 가진 機構가 收集。搬出商이다. 그런데 이들은 仲買人의 경우와 반대로 당국으로부터 업종 許可를 받지 않고서도 流通活動이 가능하고나아가 稅務當局에 事業者 登錄을 하지 않고서도 영업이 가능함으로써 法律的 내지 制度的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이들은 專業的으로 從事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季節的 또는 副業的으로 從事하므로 그 實態 파악이 대단히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개 生產 現地에 거주하는 농업생산자들로서 30~40代가 主流를 이루며, 教育水準은中・高卒 水準이며 이들이 取扱하는 農產物의 部類와 品目은 比較的 專門 化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대부분 消費地 都賣市場의 委託商과 緊密한 人間的 紐帶를 맺고 그들로부터 상당한 資金을 前貸받아 產 地生產者에게 撒布하여 流通金融機能의 일부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의 役割·機能 및 特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대부분의 商品 그 자체에 대해서는 所有權을 지니지 않고 다만 執行業務를 담당한다. 즉 出荷業務에 대해 決定權은 없고 決定者의 要求 를 執行하는 일을 한다.

둘째,生產調整活動으로서 收集·出荷 및 貯藏時期를 商人 스스로 決定 하는 役割을 한다. 특히 圃田去來된 農產物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이들의 意思에 의존하게 되며 非圃田去來商品이라 할지라도 비교적 專門的技術과 正確한 情報를 가진 이들에게 相談·問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기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째, 危險負擔의 轉嫁處로서 役割한다. 生產農家가 감수해야 할 生產 및 出荷上의 各種 危險을 이들 收集。搬出商이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役割은 肯定的으로 받아 들여지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論難이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네째,政府나 公共機關이 遂行해야 할 各種 流通造成機能을 遂行한다. 즉이들의 責任下에서 乾燥,加工,選別,包裝 및 輸送 등이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產地活動은 流通上 국히 重要한 機能들로서 만약 이들이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消費地都賣市場과의 連緊樹立은 긴요한 課題가 된다. 특히 都賣市場內 指定都賣人은 이들과의 連結을 주도적으로 計劃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克服해야 할 과제는 個人委託商들과 맺어온 紐帶關係를 어떻게 하여 制度圈流通機構가 자연스럽게 승계하는가이다.

產地流通機構의 또 다른 형태로는 制度的으로 育成。擴散되고 있는 作目班,協同出荷班 및 農漁民 스스로가 設立한 自生組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產地流通機構가 대두하게 된 근본적인 要因은 生產規模의 零細性에기인한 것으로서 收集。搬出商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公共政策側面에서 生產者의 市場對應力(market power) 또는 市場交涉力(bargaining power)을 增大시키려는 目的意識을 內包하고 있는 점에서 人爲的인 機構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前者와 달리하고 있다. 또 收集。搬出商에 대해서는 그 地域別 分布,構成組織數,活動內容 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설혹 상세하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자체의 결속력이 대단히 미약하므로 이들 組織과 消費地 都賣市場의 指定都賣人과의 組織的,體系的인 連繫性 또한 强力히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作目班이나 協同出荷班 組織은 政策的 次元에서 重點的으로 育成하고 있으므로 都賣市場 流通機構가 組織的으로 약간의 誘引만 제공한다면 制度化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조직과 消費地 都賣市場間의 連繫는 指定都賣人의 物量確保를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流通經路의 單純化를 促進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農協單位組合이 中心이 되어 育成하고 있는 作目班은 全體的으로 볼 때 振幅은 있지만 그 수가 年次別로 꾸준히 增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組織과의 연계강화는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表5-1〉.

그런데 作目班은 원래 計劃的인 生產을 유도하기 위해 單位農協의 支援

아래 組織된 것으로서 嚴密히 말하면 產地流通改善活動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生產과 流通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前。後方間의 連繫線上에 있으므로 생산조직을 出荷活動機構로까지 擴大。發展시키는 것 은 經濟的인 것이 될 것이며 生產者의 市場對應力을 높이는 것이 될 것 이다.

年度別 1978 1979 1981 1982 1983 1976 1977 1980 1972 1973 1974 1975 區分 作目班數 10,919 3,458 7,029 9,977 12,035 15,000 14,492 13,387 10,742 6,264 6,178 (841)(個)

表 5-1 年度別 作目班組織 狀況

註: '83 ()는 先進作目班數임. 資料:農協中央會 새마을指導部.

그 밖에 協同出荷班이 있는데 이는 品目別(김장무우, 배추, 마늘, 양파, 사과 등 24개 品目)로 20~30 戶를 1個組織으로 구성한 것인데 '84年末 7,500個 결성되어 있고 '85年까지는 10,000個로 증가시킬 計劃이다.이 組織 역시 政府의 强力한 支援 아래 구성된 것으로서 市場對應力을 증대시켜 生產者의 流通上의 地位를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產地流通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農村定期市場과 產 地共販場이 있다. 이와 같은 2개 기관은 賣買雙方이 去來를 위해 集合하 는 具體的 市場으로서 機能하는데 기능수행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前者는 開設者가 商去來活動을 直接的으로 수행하지 않는데 반해 後者 는 그들의 責任下에 集荷와 販賣를 하는 등 商活動을 직접 수행한다. 또 市場費用捻出方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前者는 店舗使用人으로부터 定額 制로 徵收하는데 비해 後者는 出荷者로부터 一定率의 販賣手數料를 徵收 한다. 또 營業方式에서 前者는 農產物의 販賣場所로서 機能하기도 하지만 農家生必品을 購入하는 場所로서의 機能도 한다. 그러나 後者는 단순히 農 產品의 賣買만을 수행하다.

이상과 같이 收集。搬出商,作目班,協同出荷班과 같은 產地流通機構外

定期市場 및 產地共販場과 같은 產地流通機關의 現況과 문제점 등에 관해서 살펴 보았다.

라. 指定都賣人의 産地開發과 資金循環

現行 法令上 產地로부터 農產物의 受託을 받을 수 있는 機關으로는 都 賣市場內의 指定都賣人 즉 都賣會社와 農·畜·水協의 共販場이 있다. 그것 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受託만을 받아 販賣를 遂行하고 買取에 의한 販賣는 原則的으로 禁止되고 있다. 따라서 制度圈內에 있는 都賣業事業 者는 生產者의 信任을 받아 가능한 限 좋은 條件으로 販賣해 주고 法律이定한 一定率의 販賣手數料를 差減 徵收하고 販賣代錢을 支拂하는 것을 주된 任務로 하고 있다.

指定都賣人이 產地로부터 農產物을 確保하는 方法은 매우 多樣하여 一律的으로 說明하기는 어렵다. 現在까지 알려진 一般的 慣行으로는 產地搬出商들이 各 地域의 指定都賣人들과 긴밀한 連結을 가지고 그때 그때 出荷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指定都賣人의 生產地에서 商活動內容에 관해 자세한 調査 結果가 그다지 많지 않고 나아가 명실공히資格과 能力을 갖춘 指定都賣人法人 또한 매우 드문 狀況이다. 따라서 產地와 都賣市場間의 商活動에 관해서는 信賴할만한 각종 統計資料가 未備돼 있고 그나마 있다 하여도 不正確하여 使用上 限界가 따른다. 따라서 이들 個人 委託商의 產地商活動에 대해서는 事例調查에 의한 結果만을 사용할 수 있다

可樂洞農產物綜合都賣市場의 建設・開場에 즈음하여 全國의 主要都市에도 公共投資에 의한 農產物 都賣市場 建設을 計劃하고 있다. 이와 같은 計劃을 推進함에 있어 반드시 考慮해야 할 事項중의 하나가 指定都賣人의 育成・發展方案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都賣市場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流通機構는 個人委託商들로서 사실상 이들이 指定都賣人(都賣會社) 役割을 수행하였으나 市場의 整備로 인해 이들이 指定都賣人組織에 吸收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現實的으로 困難한 점들이 매우 많다. 즉委託商들이 產地의 信任을 獲得하여 農產物 集荷를 수행하기 까지에는 대

개 장기간(과거 龍山市場의 委託商 商活動經歷이 15~16年임을 勘案¹⁾ 이 所要되었고 또 이들과 產地 生產者와의 人間關係(human relation)는일 반적으로 매우 敦篤하므로 이들을 排除한 새로운 集荷業者(制度圈內에서 都賣會社임)의 活動은 相對的으로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狀況 아래서는 지정도매인과 중매인이 競爭相對로 역할하게 되고 지정도매인의 役割이 相對的으로 弱化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制度的으로 整備된 新都賣市場에서는 集荷機能이 委託商이 아닌 指定都賣人의 責任 아래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미 可樂洞 市場 移轉事例에서 보았듯이 個人委託商들을 仲買人으로 組織하여 指定都賣人法人의 管轄下에 놓은 것은 形式的 要式行爲에 不過한 것임을 실증하여 주었다고 하겠다. 바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지정도매인의 集荷機能이 微弱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仲買人을 統括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關聯해서 대두되었던 또 하나의 形式的 要式行為는 委託商의 都賣會社株主化였다. 이것은 市場移轉方針에 따라 移轉對象에서의 脫落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方便으로 考案된 것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순전히 일부 業者가 集團組織化를 통한 資金募集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委託商 個個人이 都賣會社의 株主로,일부는 任職員이 되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變身은 都賣市場 本來의 役割을 심대하게 歪曲시킬 우려가 있어 政府는 '84年末 農安法施行令을 改正하여 仲買人은 指定都賣人의 株主가 될 수 없음은 물론 任職員 또한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바로 이 점과 관련된 難題로서 대두된 것이 委託商이 지니고 있는 農產 物의 集荷能力을 여하히 指定都賣人이 吸收하느냐의 문제다.

集荷力의 讓渡。讓受는 다른 것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有形物의 移動이 아니고 오랫동안 맺어온 信賴性을 바탕으로 한 無形財產的 屬性으로 인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現行 農安法 精神側面이나 都賣市場 運營改善側面에서 보더라도 指定都賣人

¹⁾ 韓國農村經濟研究院,「可樂洞 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 運營方案」,1983.10, p.68

이 빠른 時日內에 반드시 吸收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 의할 점은 어떠한 人爲的 강제만으로는 결코 달성하기 어렵고 指定都賣人 과 仲買人 兩者의 競爭關係를 적절히 調和시킬 수 있을 때에야 비로서 달 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收集。搬出商,作目班 및 協同出荷班 등과 같은 產地流通機構外定期市場 및 產地委。共販場 등과 같은 產地流通機關을 여하이 制度圈 都 實市場과 연결하는가이다. 이러한 問題에 接近함에 있어서는 우선 連繫에 관한 基本原則을 樹立하고 農業生產 및 農村社會與件을 考慮하여 漸進的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 주요한 基本原則으로는,

첫째,產地 單位協同組合을 통한 產地開發 및 產地流通機構의 整備。育 成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協同組合中心의 產地體系化 및 組織化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協同組合은 組合 本來의 目的에 充實토록 하고 產地開發機能은 指定都賣人과 같은 民間 流通機構가 遂行토록 하여 야 한다.

둘째, 都賣會社는 그들의 責任下에 主要都市의 都賣市場 去來內容을 綜 合的으로 파악, 각종 정보를 계속적으로 提供토록 한다.

세째,中央政府나 地方政府의 直接的인 介入은 가능한 限 배제하고 指 定都賣人間 自律的 競爭을 助長토록 한다.

네째,產地流通機構가 비교적 양호하게 발전된 곳이나 그 實績이 두드러진 곳에 대해서는 포장자재를 無料提供하거나 또는 보조해 주고 기타 度量衡器의 擴大普及에 우선적으로 支援한다. 그 밖에 長距離自動公衆電話등의 通信機器의 우선적인 가설도 중요한 支援手段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섯째, 旣存 委託商中 영향력이 큰 大商人은 仲買人 보다는 우선적으로 新設指定都質人法人의 任。職員으로 參與토록 유도한다. 이때 유의할점은 이들이 仲買人이 되지 못하게 함은 물론 그 使用人이 되게 해서도 안된다. 여기서 가능한 한 仲買人보다는 任。職員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判斷基準으로는 當該 委託商 스스로가 集荷能力과 物量處理能力中 어느 것이 더 活潑하느냐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만일 集荷能力이 强하

다면 더욱 더 指定都賣人 設立에 우선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고 處理能力이 뛰어나다면 仲買人化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만일 兩面에서 活潑하다면 가능한 한 仲買人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作業을 實行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市場移轉에 착수하되 商人들과 事前 意見交換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몇몇 有力商人들만으로 構成된 組織이나 혹은 有力한 資本家만으로 구성된 組織과의 協議는 多數商人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지 못하기 쉽다. 이는 결과적으로 單純한 市場의移轉은 成功할지 모르나 의도하는 市場에로의 定着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여섯째, 앞으로 生產體系가 營農後繼者에 의해 주도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生產規模 大型化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또 產地의 組織化도 중전보다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여 그때에는 制度圈 都賣市場과의 連結이 보다용이하고 合理的으로 進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指定都賣人法人의 資本力을 大幅的으로 증대시켜 이들과 產 地의 각종 流通機構와의 유대를 실제적으로 강화시킬 것이 要望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制度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都賣市場에서의 圓滑한 資金循環은 매우 重要한 課題中의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農產物都賣市場機能이 주로 類似都賣市場의 個人 委託商業者를 中心으로 수행됨으로써 市場을 둘러싼 資金融通도 주로 이들 委託商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 實例로 서울 龍山圈 市場에서 調査된 結果에 의하면 全商人의 75.8%가 先貸資金을 撒布하였으며 그 對象人員은 委託商當 약74.5名,金額은 平均 33.3百萬원을 貸與한 것으로 나타났다〈表5-2〉。

이를 근거로 龍山圈 市場에서 全國을 相對로 하여 撒布한 先貸資金規模 및 使用者數를 推定해 보면 약 214 億에 總 48 千名에 이를 것으로 推算되 었다.

그러나 營業活動을 하는 事業者는 事業機密上 기본적으로 노출을 꺼려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調査를 통해 資金融通狀態를 正確히 파악하기란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다행히도 可樂洞 都賣市場內 各種 流通機構의 資金循環狀態는 旣存 龍山市場의 調査資料와 서울市가 設定한 仲買人 保證

金 最高限度를 參考로 하여 間接的이나마 이들의 所要資金을 推定할 수 있었다.

C					
A.	、區 分	貸與比率	貸與人員	貸與金額	回收率
地域	别	(%)	(名)	(千원)	(%)
서 울 靑 果	菜 蔬	21.0	55.8	16,200	76.3
서 울 靑 果	果實	25.0	75.6	12,000	95.2
農協共販場	菜蔬	_	_	-	-
展 励 光 舣 勿	果實		_	-	-
太陽市場	菜 蔬	95.0	87.8	43,105	76.2
人 物 川 参	果實	100.0	58.3	58,743	80.4
나 진 시 징	菜蔬	96.8	75.4	36,013	66.5
기 전 기 7a	果實	93.8	77.1	18,687	82.1
서울靑果(委託)	菜 蔬	93.2	52.8	45,192	67.0
平	均	75.8	74.5	33,297	73. 5

表5-2 先貸資金 貸與現況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可樂洞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運營方案」,1983,10.

그런데 制度都賣市場內 流通機構中 政策的 次元에서 支援·育成해야 할 對象은 크게 보아 指定都賣人法人과 仲買業者이며 그 외로 賣買參加業者, 關聯商品商人 등이 있다. 이중 특히 指定都賣人의 資金需要가 가장 크고 仲買業者가 그 다음이다.

指定都賣人의 資金使用處已 固定資產購入費,對仲買人 運轉資金 및 對 生產。出荷者의 先貸資金이며 仲買業者의 對象處已 小賣商과의 去來에 따 르는 信用供與이다.

이와 같이 볼 때 現 可樂洞 綜合都賣市場의 指定都賣人이 確保해야 할 資金規模는 靑果類 取扱會社의 경우 自體 調達이 容易한 農協共販場을 제 외하고 약 190.5 億이 所要되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만일 農協共販場이 필 요로 하는 資金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230 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水產部類의 경우는 水協共販場을 제외하면 73.5 億원이며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 100 億원이 所要될 것으로 推定된다〈表5-3〉,〈表5-4〉。

특히 指定都賣人이 앞서 나온 정도의 資金을 確保해야 하는 理由는 지

금까지 個人委託商이 遂行해 온 商品集荷機能을 이제는 指定都賣人이 떠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정도매인의 자금력이 微弱하여 과거 委託 商이 遂行했던 物品集荷能力을 떠맡지 못할 경우에는 都賣市場機能은 正 常化되기 困難하게 될 것이다.

表 5 - 3 可樂洞 市場法人別 資金實態 및 所要推定,青果物

單位:億원

區 分	서울청과(쥬)	한국청과(주)	강동국제 청 과 ㈜	용산동화 청 과 ㈜	농협공판장
設立資本金 (A)	15	16	15	16	*
指定都賣人保證金 (B)	0.5	0.5	0.5	0.5	*
裝備購入資金 (C)	1.5	1.5	1.5	1.5	1.5
運 轉 資 金 (D)=(A-B-C)	13	14	13	13	*
仲買人運用資金 (E)	15.0	12.9	18.4	12.6	11.0
産地先貸資金 (F)	31.5	27.1	38.5	26.5	23.1
追加所要資金規模 (G)=(E+F)-(D)	33.5	26.0	43.9	25.1	35.6
總 資 本 金 (H) = (A) + (G)	48.5	42.0	58.9	41.1	中央會配定可能
仲買人數(名) ('85,11,28)	250	215	306	210	183

註) A:法人體 設立時 資本金.

B:開設者에게 納付하며 日平均 去來金額의 20%以上.

E:1人當 保證金 最高 限度額 600 萬원을 基準으로 하여 仲買人數를 급하였음.

F:龍山市場 商人 1 人當 先貸資金 規模 25.2 百萬원을 適用하여 推定하였으며 資金回轉은 年2 回로 看做했음.

* 農協共販場은 農協中央會의 資金配定에 의해 所要資金充當이 可能함.

表 5 - 4 可樂洞 市場法人別 資金實態 및 所要推定, 水産物

單位:億원

區 分	강동수산㈜	수협공판장	중부건어㈜
設 立 資 本 金 (A)	15	*	32
指定都賣人保證金 (B)	0.5	*	2
要 備 購 入 資 金 (C)	1	1	1
運 轉 資 金 (D)=(A-B-C)	13.5	*	29.0
仲買人運用資金 (E)	7.5	2.8	13.3
產地 先:貸資金 (F)	18.2	6.8	30
追加所要資金規模 (G)=(E+F)-(D)	12.2	9.6	14.3
總 資 本 金 (H) = (A) + (G)	≥ 27.2	中央會配定可能	46.3
仲 買 人 數(名)	125	47	265

註) A:法人體 設立時 資本金.

B:開設者에게 納付하여 日平均 去來金額의 20%以上.

E:鮮魚의 境遇 600 萬원, 乾魚는 500 萬원을 適用, 推定.

F:既存 市場의 先貸資金 規模를 適用效음.

* 水協共販場의 資金은 中央會 配定에 따라 充當 可能.

2. 仲買人制度 및 運營改善

가. 仲買人 現況 및 運營實態

① 仲買人 現況

仲買人은 指定都賣人이 集荷 또는 受託받은 農產物의 去來에 參加하여 一定量을 購入, 이를 小賣商에게 販賣하는 商人을 일컫는다. 이때 仲買人

의 去來行爲는 商品所有權을 移轉시키는 賣買行爲가 아니라 단지 指定都 賣人과 小賣人間 去來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手數料受取事業이다.

仲買業의 許可는 部類別(靑果物,水產物,畜產物 등)로 市場開設者로부터 許可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仲買業의 許可基準은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基準(現在 100萬원 以上)의 保證金을 納付할 수 있거나 擔保를 提供할 수 있어야 하고 그의 具體的인 資格要件으로는 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하였거나,農安法令을 위반,業務의 停止 또는 取消를 받아 3年을 經過하지 않았을 경우 및 仲買業을 하고자 하는 本人이나 그 同一 호적내에 있는 者가 當該 都賣市場 指定都賣人의 株主로 되어 있는 者등은 仲買人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仲買人의 機能은 都賣市場의 去來에 參加하여 指定都賣人으로부터 買出人에게 生產品의 所有權 移轉을 매개하는 役割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 를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첫째,選別機能으로서 市場內에 上場。陳列된 生產物에 대하여 產地,形狀, 크기, 色調, 鮮度, 熟度 및 맛 등 그 商品의 效用을 識別하는 것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生鮮食料品은 產地가 地域的으로 散在해 있고 또 品目數가 많아 同一產地, 同一品種이라 할지라도 品質에 차이가 심하므로 이選別機能은 重要視되고 있다.

둘째, 評價機能으로서 일단 商品效用을 識別한 다음에는 市場全體의 入 荷量과 小賣處의 需要量을 豫測하면서 購入量과 購買價格을 豫定하게 된 다. 보통 競賣場에서 이루어지는 價格決定은 매우 짧은 時間內(一般的으로 數秒所要됨)에 이루어지므로 正確한 商品知識과 豊富한 經驗을 必要로 한다.

세째, 金融決濟機能으로서 購買物品代金을 定해진 期日內에 指定都賣人에게 納付하게 되며 販賣對象者인 各種 小賣業者에 대하여 支拂을 猶豫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네째,分荷。保管 및 加工機能으로서 一括 또는 分割販賣하며 또 自身의 責任下에 一時的으로 保管하기도 하며 때로는 간단히 加工하는 機能도遂行한다.

② 仲買人 運營貸態

仲買人은 制度的 側面에서 볼 때 中間流通機構의 하나로서 存在한다. 그러나 制度圈 밖(non-statute)에는 名稱만 다를 뿐 그 遂行機能面에서 거의 同一한 商人群으로서 委託都賣商이나 一般都賣商 및 小賣業登錄者가 있다. 이와 같은 都賣商이 遂行하는 機能은 法律的으로 正當하다. 왜냐하면 비록 이들이 農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에 의한 仲買業許可를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稅法에 의해 事業者登錄을 필한 경우에는 法的으로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營業을 행하는 場所가 市場이건 또는 아니건 간에 商去來 自體는 일단 적법한 것이 되고 農水產物 都賣業이라는 業態에 합법적으로 從事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都賣市場에서 이와 같은 都賣業에 從事하고 있는 流通機構로는 크게 仲買人,委託商이 있고 委託商部類에 屬하는 商人으로는 個人委託商은 물론 仲販,下買人,仲商 等이 있다. 이와 같은 委託商들은 農安法에 의해 그 營業이 許容된 流通機構가 아니라 稅法에 의해 都賣業,小賣業 또는 都・小賣業으로 登錄된 流通機構라는 점에서 그 법적 배경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들의 商行為는 農安法에 의한 規制對象이 되지 못하므로 실제 無規範的으로 運營되고 있다.

또 이들은 本質的으로는 相互 競爭的인 關係에 있으나 狀況 또는 與件에 따라 離合集散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水平的으로 對等한 位置에서 競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從屬的 關係를 이루면서도 協同的 次元에서 營業을 遂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屬性을 지니고 있는 여러 部類의 商人을 制度圈內로 수렴하는 것은 都實市場去來의 正常化를 기하는 데는 물론 仲買人經營의 健全化를 도모하는 데도 매우 重要하다.

나. 仲買業의 法人化

1 法人化의 趣旨

現 우리나라와 같은 都賣市場體制 아래서 仲買業의 法人化를 구상하게 된 背景은 몇가지 側面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都賣市場 仲買人規模가 대부분 매우 零細하기 때문에 이를 大型 化하여 規模의 經濟를 實現한다.

둘째,個人事業보다는 團體 또는 法人形態의 事業이 稅制上의 惠澤은 물론 經營上으로도 有利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장점을 충분히 시현토록 한다. 세째,可樂洞綜合都賣市場에의 移轉,受容을 위시해 全國主要 大都市에建設 또는 推進中인 新設都賣市場의 早期活性化를 이룩할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한다.

네째, 既存商人 吸收時 商人數의 新設市場의 店舗數를 合理的으로 調整하기 위한 手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法人化에 의한 大型化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혹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법인체로 發展시키기 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을 勘案하여 現 個人營業形態의 長。短點을 檢討。分析하고 나아가 法人形態의 그것과 相互比較 檢討함으로써 仲買業의 育成 發展方向을 모색。제시하고자 한다.

② 仲買業 個人營業의 特色

個人營業이란 法律上 個人이 事業의 主體가 되어 그 營業으로부터 發生하는 一切의 權利・義務가 그 事業主人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事業上의 經濟的 損失과 利得은 모두 그 個人의 어깨에 달려 있고 營業上의 義務에 대해서는 事業主가 無限의 責任을 負擔하는 것이 特色이다.

個人營業에서는 事業主가 생각하는 대로 事業을 運營하고 利益이 남게 되면 그것 또한 事業主 任意대로 利用할 수 있다. 또 시급을 要하는 事業 上의 決斷도 即席에서 내리는 것이 可能하기 때문에 會社組織에 비하여 매우 簡單明瞭하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일단 判斷을 그르쳐 損失을 發生했을 경우에는 全財產을 다 바 쳐 이를 處理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대단히 危險스럽다는 短點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都賣市場의 仲買業者는 原則的으로 法人營 業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또 現 個人營業 形態의 仲買業도 可能한 限 法人營業으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會社形態의 意義와 經濟的 機能

會社라 함은 商行爲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으로서 商法의 규정에 따라 設立된 것을 말한다.²⁾

오늘날 產業의 發達과 더불어 商去來가 複雜하게 발전하고 競爭이 극심하여 個人企業形態로서는 營利의 目的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共同企業形態의 會社制度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共同企業形態는 個人企業과비교할 때 많은 利益을 올릴 수 있으며, 競爭力이 강하고 損失이 다수인에게 분담되며 또한 法人格이 있기 때문에 特定人의 死亡 등에 의하여 企業이 解體되지 않는다는 利點이 있다. 이러한 共同企業形態의 長點은 그構成員의 數가 많을수록 더욱 有效하게 發揮될 수 있는 것이다. 즉 會社制度는 「勞力의 補充」,「資本의 調達과 結合의 용이」,「危險 및 損失의 分散」,「企業의 維持」 등의 특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다.

會社制度는 이상과 같은 長點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의 弊害를 수반한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小數人이 자기의 利益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대외적으로는 會社가 搾取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한 特殊產業이나 業種을 獨占하여 不當利得을 취하거나 公害를 유발하여 環境을 汚染시키는 폐단이 따른다.

④ 法人의 設立과 登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會社法人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지 않고서도 設立할 수 있는데 반드시 法律의 規定에 의해서 成立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都賣市場內에서 仲買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仲買業許可를 받기전에 法人을 設立하여 登記를 필한 후 仲買業許可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會社設立을 위한 財團 및 社團法人은 農水產部의 承認을 받지 않고서도 法律要件만 갖추면 任意로 設立이 可能하다. 이에 비해 만일 學術,宗教,慈善,技藝,社交 등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財團 또는 社團法人을 設立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²⁾ 崔基元,「商法學槪論」,博英社,1984.

따라서 仲買業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므로 實務的 次元에서 용이하게 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한편 法人種類와 營利目的 有無에 불구하고 會社로서 機能하기 위해서는 一定한 節次가 필요하다.

社團法人의 設立要件에 의하면, 먼저 設立者는 定款을 作成。提出하여 야 하는데 그 記載事項을 보면,

- ① 目的
- ② 名稱
- ③ 事務所의 所在地
- ④ 資產에 關하 規定
- ⑤ 理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 ⑥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하 規定
- ⑦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等 7가지이다.

財團法人의 경우에는 一定한 財產을 出捐하고 앞서의 ①~⑤號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提出해야 한다.

한편, 法人의 登記는 設立許可가 있는 때에 3週間內에 주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登記事項을 作成,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登記事項은,

- ① 目的
- ② 名稱
- ③ 事務所
- ④ 設立許可의 年月日
- ⑤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 ⑥ 資産의 總額
- ⑦ 出資의 方法을 定한 때에는 그 方法
- ⑧ 理事의 姓名, 住所
- ⑨ 理事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 등 9가지이다.

이상은 仲買業을 會社法人化로 유도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法人의 設立과 登記에 관한 가장 기본적 절차 및 內容을 소개한 것이다. 보다

具體的인 內容과 實務的 次元에 속하는 것은 본 研究의 領域을 벗어난 것이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別途의 法律 專門家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이다.

5 會社의 種類

商法上의 會社種類로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 및 有限會社의 4種이 있다. 이와 같은 會社種類의 法的 基準은 會社의 構成員인 社員의責任 限界에 있는 것이다. 즉 會社의 種類는 會社의 債務에 대한 社員의責任이 一定額을 限度로 하는 有限責任인가 또는 無限責任인가 하는 점과또 社員이 會社債權者에 대한 直接責任인가 또는 會社財產만이 責任을 지는 間接責任인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각 會社別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株式會社 (corporation): 株式會社란 고유한 法人格을 갖는 會社로서 세분화된 일정한 資本을 가지고 社員(株主)이 株式引受價額을 한도로 하여 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그 밖에 會社의 債務에 대하여는 아무런 責任을 지지 않는다. 株主는 그가 소유하는 株式을 아무런 制限없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投下資本의 回收가 용이하고 그 때문에 株式은 널리 投資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株式會社를 통할 경우에는 大資本의 형성이 가능하다.
- (나) 合名會社 (partnership): 合名會社는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직접 連帶。無限의 責任을 지는 無限責任만으로 구성되는 會社를 말한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社員은 會社의 業務執行과 會社代表에 관하여 權利와 義務를 진다. 이 形態는 人的 結合이 강한 소수인의 共同企業에 적합한 會社로서 持分을 자유로이 양도하지 못하며, 모든 社員의 財產總額과 個人的能力이 직접 會社의 信用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合名會社는 財產과 勞力의 共同體라고 할 수 있다.
- (다) 合資會社(limited partnership): 合資會社는 會社債務에 대하여 直接 責任을 지는 無限責任社員과 有限責任社員으로 구성되는 二元的인 組織의 會社이다. 이것은 合名會社의 形態에 資本的 結合性이 가미된 中間形態로 서 실질적으로는 合名會社와 유사하다. 그리하여 合資會社에 관하여 특별

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合名會社의 규정을 準用한다. 有限責任社員은 資本的으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業務執行이나 會社代表에 대한 權限이 없으며 有限責任社員의 持分은 無限責任社員의 全員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

(라) 有限會社 (private company): 有限會社는 株式會社와 마찬가지로 모든 社員이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자기의 出資額을 한도로 하여 有限責任을 지는 社員만으로 구성되는 會社이다. 이 형태는 비교적 소수인에 의한 中小規模의 기업경영에 적합한 회사로서 株式會社와 달리 非公衆性, 非公開性을 띠고 있으며, 法規의 嚴格性과 複雜性이 緩和되고 있다. 또한 社員의 個性이 다소 중시되어 持分의 양도가 제한된다는 점과 특별한 경우에資本의 補填責任을 지는 점이 株式會社와 다르다.

이상과 같이 現 우리나라 商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4가지 種類의 會社에 대해 各各 그 基本構造와 特徵을 簡略하게 살펴 보았다. 이를 다시 社員의 出資,責任의 정도,會社財產의 獨立性,社員數의 多少,社員이 경영에 參加하는 정도,意思決定의 方法,社員의 地位의 이전에 關한 難易度,解散의 事由, 淸算의 方法 등 그 性格을 中心으로 하여 다시 人的 會社와 物的 會社로 區別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區別은 仲買業을 法人化로 유도할 때 과연 어떠한 屬性을 지닌 法人形態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나아가 거기에 따 르는 각종 施策方案을 樹立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人的會社의 전형적인 형태는 合名會社이며,代表的인 物的會社는 株式會社이다. 合資會社는 兩者의 要素를 병유하는 中間形態라고 할 수 있으나,無限責任社員이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므로 人的 會社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有限會社도 兩者의 要素가 有機的으로 結合된 中間形態이지만모든 社員이 有限責任을 지는 점에서 物的會社의 性格이 강한 會社라고 할수 있다. 물론 이러한 區別은 어떤 絕對的인 基準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人的會社와 物的會社의 諸特徵과 그 差異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人的會社는 個個社員의 個性에 기초를 둔 會社로서 社內的으로 社員과

會社와의 關係가 密接하여 社員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所有와 경영이 일치하여 會社는 自己機關에 의해 운영되고, 勞務와 信用도 出資로 인정되며 意思決定은 全員一致를 요하고, 社員의 數가 소수이며, 各社員의 人的 事由에 의하여 退社。除名의 制度가 인정되고, 內部關係에 관한 규정은 任意法規이며, 社員의 地位는 원칙적으로 移轉이나 相續이 制限을 받고, 社員이 1人으로 된 때에는 해산하며, 淸算은 任意淸算의 方法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法人性이 약하고 組合性이 강한 會社이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社員은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직접 連帶責任을 지며 會社財產은 중요성이적고 社員의 財產과 個性이 會社의 신용의 기초가 되는 會社이다.

이와 같은 人的會社에 비하여 物的會社는 社員들의 個性보다 資本을 기초로 한 會社로서 대내적으로 社員과 會社와의 關係가 희박하여, 社員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는 참여하지만 직접 業務執行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어 會社는 특별한 第3者機關에 의하여 운영되고, 出資는 金錢 기타 財產에 한하며, 會社의 意思決定은 多數決의 原則에 따르고, 또한 社員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會社債權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內部關係에 대한 규정도 强行法規로서 法의 干涉이 많다. 또한 會社의 整理制度가 존재한다.

基 進 的 會 社 物 的 社 **(1)** 出 金錢 기타 財産・勞務・信用 金銭・기타 財産 資 責 任 直接・連帶・無限 間接・有限 (2) (3) 財産의 獨立性(社團法人性) 弱하다 强하다 4 社員의 數 少 數 多 數 社員의 經營參加 (5) 自己機關(個人主義的會社) 第三者機關(團體主義的會社) 意思决定 6 全員一致 多數決 社員의 지위의 移轉 自 由 (7)制限 (8) 1人會社 不 認 認定 清算의 方法 (9) 任意清算도 認定 法定清算 内外의 法律關係 **10**0 內部關係(任意法規) 全部强行法規 外部關係(强行法規) 00) 設立取消의 訴 不 認 認定(商法 184條) (12) 기 타 退社・除名制度 이정 整理制度 인정

表 5-5 人的會計의 物的會計의 區別

이상과 같은 諸 特徵을 整理하면 다음 表와 같다〈表5-5〉.

다. 日本의 農産物 仲買業

① 仲買業의 特徴

다른 점은 日本의 仲買業은 購入價格과 販賣價格의 差額이 주요 收益源 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仲買人은 法律上 一定率의 仲介手數料를 수취하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手數料를 받는 仲買人은 거의 없고 日本 仲買 人과 마찬가지로 賣買差額을 收益源으로 하고 있어 同一한 形態를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한편,日本의 都賣市場은 그 種類를 開設者의 主體,市場規模의 크기, 供給圈의 크기 등에 따라 中央卸賣市場,地方卸賣市場 및 其他卸賣市場等 3가지 形態로 分類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市場形態에 따라 仲買人資格要件을 달리한다. 즉 中央卸賣市場의 仲買人은 開設者의 許可를 獲得하면 可能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地方卸賣市場에서는 一般的으로 開設者의 承認을 받아 知事에게 계출하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다른 점으로서 우리의 경우는 仲買業을 遂行하려면 반드시 開設者로부터 許可를 받아야만 가능하지만 日本의 中央卸賣市場에서는 同一하나 地方卸賣市場에서는 承認만 받으면 가능케 함으로써 日本의 경우는 보다 融通性 있게 都賣去來體系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미세한 차이점이 都賣市場의 種類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仲買人資格獲得 基準을 달리 함으로써 보다 門戶를 開放하기 위한 것인지는 確實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仲買業의 資格要件이 規程中心的이 아니고 實務中心的으로 돼있어 商去來能力이 양호할 경우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仲買人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仲買業의 規模

우선 仲買業數를 보면 中央都賣市場에 '83年7月 現在 6,668名이 許可를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이중 靑果物이 2,636名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1市場當 平均 37名으로서 少數의 仲買人이 所屬돼 있다. 한편, 仲買業者의 增加趨勢를 보면 絕對數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中央都賣市場의 新規建設을 除外하면 거의 증가하지 않음을 표시한다 하겠다.

水產物은 3,887 名으로서 58.3 %를 차지해 仲買人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1市場當 平均 73 名으로서 靑果物보다는 훨 씬 많은 數字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仲買人數 또한 안정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新規許可가 있기는 하나 1市場當 規模는 거의 變化가 없다.

특히 食肉의 경우는 東京都에 유일하게 都賣市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971 ~ 1982 年까지 仲買人數가 49 ~ 51 名을 나타내 거의 變化가 없다.

表 5 - 6 日本中央都管市場 仲買業數의 推移

單位:名

. @		分	1971	1975	1978	1979	1980	1981	1982
青	Ħ	總數	1,959	2,386	2,565	2,588	2,573	2,580	2,636
円	果	1市場當	42	37	35	35	35	34	37_
水産	. A.L.	總數	3,275	3,605	3,730	3,742	3,770	3,785	3,887
小庄	190	1 市場當	109	86	7 8	78	. 77	74	73
	n ás	總數	50	49	49	49	49	51	51
食	肉	1市場當	(50)	(49)	(49)	(49)	(49)	(51)	(51)
花	+	總數	-	19	18	18	19	23	29
16	卉	1市場當	- :	3	3	3	3	3	3_
	<i>Ш</i> +	總數	96	63	63	63	63	65	65
其	他	1 市場當	7	5	5	5	5	5	7
計		總 數	5,380	6,122	6,425	6,460	6,474	6,504	6,668
								······································	

資料:市場流通要覽, 1984,大成出版社.

기타 花卉 및 其他部類 仲買人은 국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表5-6〉.

한편 地方卸賣市場에는 '82 年 4 月 現在 總 1,594名이 있는데 이들은 該當市場이 所在한 市內에 거주하면서 買受人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든 中央卸賣市場의 仲買業者數는 每年 그 絕對數가 增加하고 있는데 '71 年에 비해 '82 年에 1,288 名이 증가하여 10 여년간에 약 24 %의증가를 나타냈다.

한편,仲買業者의 事業規模를 보면 우선 經營形態別로 보았을 때 個人事業者가 1,631名으로서 약 25%를 차지하고 法人은 4,916個로서 75%를 나타내 日本의 仲買業은 法人이 압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食肉은 全部가 法人이고 花卉 역시 대부분 法人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部類別,取扱規模別로 볼 때 靑果物은 1~5億円이 53%,5~10億円 20.3%이며,水產物은 각각 54.6%,17.3%,食肉은 33.3%,21.6%를 나타냈다. 특히 食肉의 경우는 年間 20億円이 넘는 仲買業者가 25.5%로서 13個에 이르고 있다. 이중 最高額을 나타낸 事業者는 年間 46億円에 이르렀다. 그러나 水產物 最高取扱業者는 무리 152億円을 나타내 규모가 작

表 5-7 取扱規模別 仲買業者 狀況。1982

	經營	杉態別	業者數	取 扱 規 模 別					仲買業者當(百萬円)		
區 分	個人	法人	計	1億円 未 滿	1~5 億 末 滿		10~20 億 末滿	20 億 以上	平均	最髙	最低
青果部	583	2,053	2,636	351	1,398	535	258	94	512	7 201	0
4m 7x m	(22,1)	(77.9)	(100.0)	(13.3)	(53.0)	(20,3)	(9.8)	(3.6)	312	7,281	
水產物部	1,044	2,791	3,835	606	2,095	662	305	167	523	3 15,202	0
小庄1000	(27,2)	(72 . 8)	(100.0)	(15.8)	(54.6)	(17.3)	(8.0)	(4.3)	323	13,202	
食肉部	_	51	51	1	17	11	9	13	1,402	4,611	86
及以即	_	31	J1	(2.0)	(33.3)	(21.6)	(17.6)	(25.5)	1,402	4,011	00
花卉部	4	21	25	6	16	1	2	_	284	1 200	50
花 卉 部	(16.0)	(84.0)	(100.0)	(24.0)	(64.0)	(4.0)	(8.0)		204	1,209	50

註:()內는 構成比(%)

資料:市場流通要覽,1984、大成出版社.

은 都賣會社보다 더 많은 額을 취급한 셈이 된다. 한편 靑果物 最高額은 73 億円을 나타냈는데 業者當 平均은 5.1 億円으로 水産物의 5.2億円과 비슷한 水準을 보여주고 있다〈表 5-7〉.

賣買參加人은 都賣市場 開設者의 承認을 받아 仲買人(仲卸人)과 동일한 資格으로 競賣에 참가하여 商品을 定期的 또는 大量으로 購入 및 販賣하는 事業者이다. 따라서 이들은 都賣會社와는 相互 補完的 關係에 있고 仲買人과는 競爭的이라고 볼 수 있다.

日本은 일찌기 都賣市場內에서의 競爭對象을 確保하여 流通經濟의 價格 效率을 증진시키고자 기도하였다. 그 결과 仲買人의 數는 가능한 限 적게 그리고 法人化 誘導로 仲買業의 大型化를 達成하였고 나아가 이들의 大型 化。少數化에 의한 談合 등 各種 不公正 去來行爲를 未然에 防止하거나 最 少化하기 위하여 賣買參加人制度를 政策的으로 育成하였다. 그 結果 '82 年末 中央都賣市場에서의 販賣先別取扱狀況을 보면 靑果物의 경우 仲買業 者 67.6 %로 前年의 66.9 %보다 약간 증가되었고 賣買參加者 역시 28.4 %로 前年度의 28.2 %보다 약간 증가되었다. 다시 말해 市場會社에서 購 入하는 購入先은 仲買業者가 67.6%, 賣買參加業者가 28.4%를 記錄해 상당한 物量을 처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水產物은 賣買參加者의 購入比率이 비교적 적으나 食肉과 花卉은 월등히 높아 그만큼 流通經路가 單純化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중 東京都 中央都賣市場의 경 우를 보면 靑果物의 경우 仲買業者 51.8% 賣買參加者 44.9%로서 全國 平均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水產物은 각각 69.0%, 15.0%로서 全 國値와 큰 차이가 없으나 食肉의 경우는 全國 平均値와 反對로 仲買業者 64.0 %, 賣買參加者가 34.1 %를 차지하였다.

한편 大阪市 中央都賣市場의 경우는 仲買業者의 比率이 월등히 높아 또다른 樣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水產物의 경우는 仲買業者나 賣買參加者가 아닌 기타 業者의 購入比重(31.5%)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이러한 현상은 水產物 小賣體系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5-8〉.

表 5 - 8 日本中央都賣市場의 販賣先別 取扱 狀況。1982

單位:%

<u> </u>	^		販 5	美	
<u>pe.</u>	分 —————	計	仲買業者	賣買參加者	其 他
	青果物	(100.0) 100.0	(66.9) 67.6	(28.2) 28.4	(4.9) 4.0
X ===	水產物	(100.0) 100.0	(64.1) 64.5	(11.4) 11.1	(24.5) 24.4
全國	食 肉	(100.0) 100.0	(28.1) 26.9	(70.3) 71.4	(1.6) 1.7
	花卉	(100.0) 100.0	(31.0) 30.9	(68.6) 68.8	(0.4) 0.3
	青果物	(100.0) 100.0	(49.4) 51.8	(43.1) 44.9	(7.5) 3.3
東京都中央 卸 賣 市 場	水產物	(100.0) 100.0	(68.0) 69.0	(16.2) 15.0	(15.8) 16.0
	食 肉	(100.0) 100.0	(67.1) 64.0	(31.0) 34.1	(1.9) 1.9
大阪市中央	青果物	(100.0) 100.0	(90.7) 90.9	(2.2) 2.2	(7.1) 6.9
卸寶市場	水産物	(100.0) 100.0	(67.1) 66.9	(1.6) 1.6	(31.3) 31.5

(備考) 1. 農林水產省 「中央卸賣市場業務關係資料」、

- 2. 販賣金額 比率.
- 3. ()內는 '81 年度 數值.

資料:市場流通要覽, 1984,大成出版社.

日本의 賣買參加人制度 確立은 都賣市場을 적극적으로 育成·發展시키기 위한 政府 方針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즉 仲買人의 法人 組織化를 通한 大型化를 모색하는 가운데서도 市場內에서의 競爭狀態를 일정수준에 유지시켜 市場의 公正性과 效率性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다. 특히 業者數에 있어서 仲買人보다 훨씬 많은 數字를 차지함으로써 물량처리능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都賣市場內에서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82 年末 現在 中央都賣市場으로부터 承認을 받은 賣買參加者數는 總 55,685 個이며 이중 靑果部가 39,370 個所로서 70.7%, 水產物部 11,244 個 20.2%, 食肉部가 2,516 個로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花卉類도 2,555 個로서 4.6% 차지하고 있다. 取扱規模는 部類別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數字만 가지고서는 그 影響力을 추정하기는 困難하지만 단순히 業者 만을 比較할 때는 靑果部類가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달리 설명한다면 그만큼 競爭이 치열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세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賣買參加者들의 店舖位置는 中央都賣市場의 開設區域內가 40,533 個로서 72.8 %를 차지하고 區域外가 15,152 個로서 27.2 %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中央都賣市場制度가 갖는 장점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비록 市場開設區域外에 位置한 販賣業者라 할지라도 價格形成上의 有利性(대개 購入價格이 낮다)과 商品의 良質性 등으로 말미암아 中央都賣市場을 利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部類別로 보면 靑果部가 75.3:24.7, 水產部 68.5:31.5, 食肉部 66.1:33.9, 花卉 60.3:39.7로서 食肉과 花卉類의 購買者 分布가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賣買參加者를 구성하고 있는 業態를 分析해 보면 一般小賣商이 48,750 個所로서 全體의 87.5 %를 차지해 賣買參加人 대부분이 小賣商임을 나타내 流通經路의 單純化가 매우 높게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그외로 슈퍼業者,加工業者 등이 소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特徵的인 현상은 地方都賣市場의 都賣業者가 賣買參加者로 登錄하고 있는例가 靑果部에 499 個,水產部類에서 180 個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流通經濟側面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現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지정도매회사의 物品集荷力이 相對的으로 그만큼 낮고 나아가 轉送등에 의한 流通費用을 上昇시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表 5-9〉.

	_			店舗	位置		 業		態		别	
1	丽	分	計	開設區域內	開設區域外	一般小賣商	介퍼 業者	消費	給食, 外食納 入業者	加工業者	地方市 場等都 賣業者	其他
青	ŕ	密 數	39,370 (100.0)	29,628 (75.3)	9,742 (24.7)	35,246 (89.5)	1,589 (4.0)	182 (0.4)	862 (2.2)	580 (1.5)	499 (1.3)	412 (1.0)
- 1	-	六大都市	2,187	1,646	541	1,958	88	10	48	32	28	23
果部	市場	其他都市	472	340	132	424	21	3	6	7	4	7
144	當	計	579	436	143	518	23	3	13	9	7	6_
水	*	忠 數	11,244 (100,0)	7,702 (68.5)	3,542 (31.5)	9,037 (80.4)	457 (4.1)	7.1	195 (1.7)	735 (6.5)	180 (1.6)	569 (5.1)
產	_	六大都市	57	44	13	8	2	1	-	20	6	20
物	市場當	其他都市	273	185	87	230	11	2	5	13	3	9
部	當	計	225	154	71	181	9	1	4	15	4	11
食	*	密 數	2,516 (100,0)	1,663 (66.1)	853 (33.9)	2,054 (81.6)	14	16	51	125	1	255
肉	=	六大都市	255	210	45	2 20	1	1	1	12	, -	20
部	市場當	其他都市	247	111	146	183	2	3	12	13	-	34
	富	計	252	166	86	205	1	2	5	13		26
花	糸	惠 數	2,555 (100.0)	1,540 (60.3)	1,015 (39.7)	2,413 (94.4)	20	1	0	0	17	104
, _	1	六大都市	352	252	100	350	0	0	0	0	2	0
卉	市場當	其他都市	309	173	136	286	3	-	-	-	2	18
	當	計	320	193	127	302	3	_			2	13

表 5 - 9 日本中央都資市場 質買參加者 業態別 業者數

- (備考) 1. 農林水產省,「中央卸賣市場業務關係資料」.
 - 2. 六大都市는 東京都,大阪市,横浜市,名古屋市,京都市,神戶市임。
 - 3. 782年3月31日 現在 業者數.

資料:市場流通要覽, 1984,大成出版社.

라. 仲買業의 問題點 및 改善對策

仲買業과 關聯, 現在 當面하고 있는 流通上의 問題點은 크게 보아 2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制度上의 未備에 기인한 것과, 둘째, 運營上의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制度上 未備에 의한 것으로는 仲買人數의 적정수준을 決定해 주는 基準이 未備돼 있고 仲買人資格基準이 실제 商活動을 遂行할 수 있는 能 力本位로 돼 있지 못하고 形式要件中心,包括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 로서 이에 抵觸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중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두번째의 運營上의 要因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현 可樂洞 都賣市場에의 移轉事例처럼 사전준비가 未治한 것으로서 이를 부연설명하면 용산시장을 비롯 統合移轉對象市場商人의 選定 및 整備計劃이 치밀하지 못했던 점이고, 둘째,그동안 仲買人의 役割이 非正常的으로 遂行됨으로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세째, 이들 상인에 대한教育 및 訓練機會가 거의 없었던 점이다. 특히 類似都賣市場의 個人委託商을 仲買人化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計劃이 매우 허술하였던 점도 지적될수 있다.

사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제도 및 운영상의 어떤 單一的 요인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 여러 요인이 關聯,複合的 要因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仲買業의 育成 指導에는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計劃이 樹立되어야 하고 그 施行 또한 빈틈없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可樂洞 都賣市場의 仲買人移轉事例는 우리에게 教訓 的인 示唆를 주고 있는데 市場建設을 위한 妥當性 調査。硏究와 그 實行間의 커다란 차질 발생이 그 典型的인 例이다.

즉 移轉對象 仲買人數를 確定함에 있어서 당초 調査에서 受容 仲買人對象者를 849 名으로 確定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전을 했을 당시에는 1,219 名으로 무려 370 名이나 증가하여 店舗不足事態의 야기는 물론 指定都賣人의 確保豫想 仲買人數의 過多策定 등의 問題點을 노정하기에 이르렀던 事實을 상기할 必要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龍山市場圈에서 소위 앞자리상, 仲販 등 中間都賣商으로 불리우는 상인들 數 역시 1,725名으로 把握하였으나 실제 이동시에는 무려 704 名이나 증가된 2,429名에 이르렀던 事例는 市場移轉對策 樹立에 있어 重大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不一致 現象은 당초의 市場設計와도 相馳되어 施設의 變更을 불가피하게 하였다〈表 5-10〉,〈表 5-11〉.

앞서의 事例에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仲買人 뿐만 아니라 市場移轉과 관

表 5 - 10 龍山市場圏 商人分布現況 1983. 6

單位:名

商人别	仲;	仲買人		委託商		小		中間都	都賣商	
市場別品目別	과일	채소	과일	채소	과 일	채소	계	과 일	채소	
태 양 시 장			12	144	12	144	156	20	500	
나 진 시 장 (하치장포함)			105	66	105	66	171	250	100	
농협공판장	43	10			43	10	53	20	15	
왕 대 상 가			69		69		69	150		
용 산 청 과			23		23		23	30		
복개지 시장				143		143	143		340	
서울청과	96	71		67	96	138	234	100	200	
합 계	139	81	209	420	348	501	849	5 7 0	1,155	

表 5-11 都賣會社別 商人現況, 1985, 7.15

單位:名

						平成· 1
晶	分	總計	仲買人	補助仲買人	關聯商人	小賣商人
1	合 計	5,608	1,658	2,928	233	789
一一	小 計	4,262	1,219	2,429	-	614
円	서울靑果	769	258	424	-	87
per	韓國靑果	1,132	229	763	-	140
果	同和靑果	875	220	515	-	140
44.	江 東 國 際	1,013	310	563	-	140
物	農 協	472	202	164	-	107
	小 計	1,025	440	499	_	86
水	江東水産	427	126	228	-	73
產	水 協	63	47	3	-	13
物	中部乾海產	534	266	268	-	-
뤪	小 計	322	-	-	-	89
關聯商品	青 果	241	-	-	-	7 9
品 -	水 産	81	-	-	-	10

資料: 서울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1985.

런된 諸事項은 가능한 한 計劃段階와 實行段階가 一致되어야 하는데 특히 商人의 選定方法에 있어서는 客觀的 基準과 事實에 입각, 嚴格히 遂行되 어져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그 主要 節次 및 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첫째,市場設計完成前 移轉對象市場 및 吸收對象市場을 確定한다.

둘째, 旣存店舖가 類似都賣市場內에 位置할 경우에는 事業者別 名單을 파악함은 물론이려니와 一店舖 多數商人占有事例 등을 探問 調査 등을 통하여 重複計算 등에 의한 2重計上을 철저히 예방한다. 다시 말해 1개 점포에 數名의 事業者名義로 등록된 경우는 1개사업자만을 移轉對象으로고려토록 한다.

세째,各事業者別 事業實績을 國稅廳 등에 電算照會하여 脫漏, 重複計算, 僞造 등을 防止한다.

네째, 仲買業許可時 日本의 例처럼 制度的으로 法人化를 유도토록 그 條件을 嚴格히 할 必要가 있다.

다섯째, 法人의 形態 또는 種類는 原則的으로 그 事業者 自身에게 일임하되 우리의 與件을 勘案하여 가능한 限 合名會社 등 人的會社로 유도한다. 여섯째, 法人化된 仲買事業者에 대해서는 稅制上의 惠澤은 물론 大型店舗의 우선배정 등 市場運營側面에서도 유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仲買人 資金運用과 관련, 國家的 次元에서의 支援 또한 必요한 바일단 法令에 의거 正規仲買人으로 選定된 事業者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외상한도 규모확대가 必要하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現 可樂洞 都賣市場 指定都賣會社의 仲買人 保證金의 現金預置方式도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처럼 仲買人이 現金을 預置해 놓고 物品을 購入한다는 것은 仲買人에게 二重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될뿐 아니라 市場體系上에도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즉 指定都賣人이 그들의 資金을 이용하여 物量을 確保하고 販賣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仲買人을 통해 資金을 확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可樂洞 市場內에서는 農協 및 水協共販場만이 仲買人 保證金을 現金 아닌 擔保로 갈음하고 있어 仲買人의 現金運用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第 6 章

農水産物流通關聯法規 및 税制改善方案

1. 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에 관한 法令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가. 農水産物都賣市場 關係法令의 變遷狀況

1945년 解放과 더불어 美軍政下의 過度期的 業務를 遂行하면서 처음布告한 조치가 1945년 10월 20일 發布한 "自由市場 設置에 關한 件"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실시 4개월 만에 價格이 暴落하는 등 전면적인실시가 어렵게 되자 米穀은 配給制로 환원되고, 米穀外에는 모두 自由販賣制로 되었다.

解放後 제일 먼저 制定된 市場關係法으로는 中央都賣市場法 (法律 第207號)이 1951년 6월 22일에 制定되었고, 1952년 6월 11일에 同法 施行令으로 大統領令 642號가 公布되었다. 이 法은 日帝下의 中央都賣市場法 (1923년)을 대부분 모방한 것으로, 그 내용은 「1都市 1市場」원칙하에 獨占的 商權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靑果物,水產物,畜產物 都賣市場의 開設은 地方公共 團體와 公益法人에 한하되 1都市, 1市場 原則을 적용하며,都賣業務는 民間法人에 代行시키도

록 되어 있다.

한편 1960년까지 一般市場과 市場關係事項을 規定하는 市場法 없이 中央都賣市場法으로 農水產物都賣市場의 關係事項을 부분적으로 規制해 왔었다. 그러나 1961년 日帝時代의 市場規則 대신 市場法(法律第704號)을 制定・公布하기에 이르렀다. 이 法에 의거 定期市場을 포함한 각종 市場이 法的存立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 法에서는 1號市場으로 常設市場, 2號市場은 定期市場(5일市場), 3號市場으로는 20명 이상의 營業者가 동일 건물내에 賣買를 하는 場所(商街,百貨店)로 規定하였다.

그 후 流通法律의 監督體系 一元化와 都賣市場과 農水協과의 競賣紛爭調整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1973년 2월 6일 中央都賣市場法을 폐지하고 업무관장을 農水產部長官에게 移管할 것을 골자로 하는 農水產物都賣市場法(法律 第2483號)을 公布하였고,同年 9월 18일에 同法 施行規則(農水產部令 第544號)이 公布되었다. 그러나 이 法은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法과 상호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고 都賣市場의 開設은 部類別로 1都市 1市場制度를 채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여 1976년 12월 31일 法律 第2962號로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을制定・公布하기에 이르렀다.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令은 1976년 12월 31일 法律 第 2962 號로 公布된 이래 1978년 12월 5일 法律 第 3118 號로 改正・公布되고, 다시 1980년 1월 4일 法律 第 3248 號로 改正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法令은 總 8 章 68 條로 構成되어 있고,施行令은 總 35 條,施行規則은 16 條로 되어 있다. 그 內容을 보면,第1章 總則,第2章 農水產物의 生產 및 出荷調整,第3章 農水產物都賣市場,第4章 農水協共販場,第5章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第6章 農水產物流通機構의 整備,第7章監督,第8章 罰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農水產物流通의 合理化를 기하고 適正한 價格을 유지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이 法은 農水產物都賣市場의 開設 및 運營에 대하여 기존 農水產物 價格安定法과 통합하였고,農水產物都賣市場은 農水產部長官의 최종 감독하에서 地方自治

團體의 長이 開設者가 되고 그 運營은 民間法人에 대행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 現行 農水産物都賣市場關係法令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에 의하면 都賣市場의 開設者인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產物都賣市場의 運營 및 去來를 지도·감독하며, 市場의 施設整備改善을 위한 計劃을 수립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는 所有 및 管理者가 될 수 없으며, 指定都賣人을 두어 都賣市場을 運營・管理토록 하고 있다. 또한 都賣市場에서 仲買業을 수행하는仲買人의 營業을 허가하며, 市場施設의 整備・改善과 公正한 去來秩序의확립과 環境改善, 商品性向上을 위한 規格化와 包裝改善 및 鮮度維持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都賣市場이 그機能을 원활히 遂行하기 위해서는 流通行政의 機能發揮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都賣市場에 관한 法律과 行政은 都賣流通機能 수행의 본래 목적보다는 規制와 監督,許可權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開設者인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投資를 하지않고 民間會社가 施設을 投資,運營하기 때문에 開設者로서의 역할수행이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都賣市場運營의 效率化를 위해서는 都賣市場의 開設者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施設投資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점차 公營市場으로서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흡수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先進國에서는 物的流通施設을 社會間接資本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충 개선하는 것을 政府의의무로 삼고 都賣市場에 대한 公共投資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都賣市場의 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農水 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의 改正이 불가피 하다.

첫째, 현행 都賣市場法은 部類別 · 個所別로 開設토록 되어 있으나 都賣市場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규모 物量을 신속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公營都賣市場의 開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同一區域內 2개部類이상의 綜合都賣市場을 開設할 수 있도록 開設根據가 마

련되어야 하겠다. 이리하여 都賣市場은 開設 主體別로 國·公營市場, 一般市場으로 구분하고 部類別로 單一市場, 綜合市場으로 구분되도록 法的措置를 취해야 하겠다.

둘째,都賣業者들 상호간에 동일한 여건하에서 서로 競爭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제약요인을 해소시켜야 하겠다. 즉 都賣機能을 수행하는 市場이라면 동일한 조건에서 制度 및 租稅 등을 서로 競爭할 수 있게 하여 競爭 價格形成과 公正한 去來가 확립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째,都賣市場의 運營方法이 일부 改善되어야 하겠다. 즉 競爭에 의한 公正한 價格이 형성될 수 있도록 都賣市場에 出荷되는 상품에 대하여 점 차 標準化 및 等級化를 制度化 하고 현재 競賣順位도 入荷順位別 標準化 된 상품을 우선 경매토록 하고 仲買人과 賣參人數도 市場規模別로 조정하 고 그 下限線을 法制化 해야 한다.

네째, 競賣士 및 仲賣人과 流通關聯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課程을 制度化 해야 한다. 현행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19條1項에서는 競賣士의 資格要件을,都賣市場에서 競賣士의 職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農水產物都賣市場 指定都賣人協會가 시행하는 競賣士教育課程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都賣市場의 公正한 去來의 확립과 流通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公共機關이 시행하는 競賣士와 仲買人의 教育課程을 이수토록 하며 試驗에 의한 資格證賦與를 制度化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행 法律에 의하면 法定都賣市場에는 指定都賣人과 仲買人,賣買參加人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외에도 中間都賣商, 小賣商들이存在하며, 이들은 流通의 중요한 機能을 담당하고 있어 法律상 商的機構의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都賣市場에는 仲買人외에 中間都賣商, 小賣商 등이 있어 農水產物의 中間都賣 또는 小賣를 함으로써 物量의 分散機能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仲買人들로부터 物量을 받아 小賣市場의 小賣商에게 販賣하고 있다. 이와 같은 商機能을 감안 法的인 측면에서 商機能의 현실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政府는 農水產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도모하고 流

通施設의 近代化를 촉진하기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을 설치토록 하였다. 그리고 基金은 600億원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農產物 중 商品化되는 流通額('84년 현재 31,389億원) "에 비하여 基金造成額의 過少로 支援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政府收買量 및 民間備蓄事業이 부진할 경우 生產者 및 消費者保護를 위한 價格安定事業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農水產物의 需給安定 및 價格調節과 生產者 및 消費者의 동시 보호로 物價安定을 도모하기위하여는 適正水準의 農安基金의 資金擴大가 필요하다.

2. 農水産物 都賣市場 活性化를 위한 税制 改善方案

가. 現行 租税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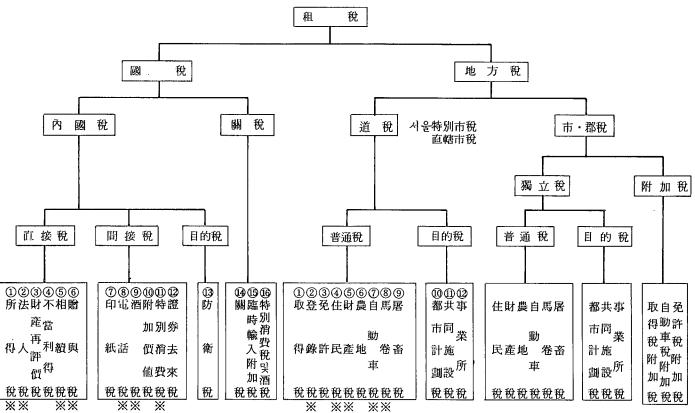
우리나라의 현행 租稅體系는 國稅와 地方稅로 구분되며 國稅는 內國稅와 關稅로 內國稅는 直接稅,間接稅,目的稅 등 16種이 있다. 또한 地方稅는 道稅 및 市·郡稅로 구분되며, 각각 普通稅와 目的稅가 있고 總12種이 있다. 國稅 및 地方稅 중 12개 稅에는 防衛稅가 附加 徵收된다 〈圖 6-1〉.

한편 稅法은 事業者에 대하여 業態와 種目으로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課稅事業者와 稅稅事業者로 구분한다, 農水產物 流通關聯 事業者를 業態,種目,區分別로 分類하면 3個業態,15個種目으로 分類되며 農水產物 流通關聯事業者는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다〈表 6 - 1〉.

農水產物流通에 있어서 都質市場 機能을 수행하는 市場形態는 法定都質市場, 農畜水協共販場, 類似都質市場이 있다. 法定都實市場의 流通關聯事業者로는 指定都賣人, 仲買人, 小賣商人이 있고 共販場은 都賣機能을 담당하는 組合과 仲買人, 小賣商人이 있다. 共販場은 政府代行機關으로 附

¹⁾ 經濟企劃院 產業 1 課, 「農水產物 價格安定基金」, 1985.6.13

岡6-1 韓國의 組税體系



註 1) ※ 表示稅目은 그 稅에 대합 防衛稅도 부과됨. 2) 상기 稅法 以外에 租稅滅免規制法이 있음.

業 態	種目	區 分	準用種目 및 適用範圍				
都賣業	穀 物	쌀	政府放出米 圣함				
		其 他					
	家 畜		家畜 및 家禽				
	고 기	고기副産物	食肉副產物				
		고 기	소, 돼지, 닭 등의 食肉				
	梅產物具	生 鮮					
	민물고기	其 他					
	果實吳菜蔬	果 實	사과, 배, 복숭아, 귤, 감, 밤, 호두, 잣				
			등의 果實				
		菜 蔬	무우, 배추, 시금치 등 菜蔬				
	其他農產物		땅콩, 고추, 마늘, 호박, 고구마				
_	및 食 料 品		其他 農產物				
小賣業	穀 物		쌀, 보리, 콩, 참깨 등의 곡식(政府放出米				
ı			포함)				
	고 기		소, 돼지, 닭고기 등 食肉				
İ	海產物具		첫갈, 乾魚物, 海藻類, 甲穀類 등				
	민물고기						
	果實吳茱蔬		마늘, 고추, 땅콩 등				
	其 他						
	一般小賣						
	綜合小賣	其 他	百貨店, 슈퍼마켙, 하이퍼마켙				
서어비	其他仲介業	海產物					
스 業		青果物					
		家 畜					
	/IS =====	其 他	6.65./\\\\\\\\\\\\\\\\\\\\\\\\\\\\\\\\\\				
	代理	υ.	各種代理				
	委託販賣	海産物					
		青果物					
		其 他	•				

表 6-1 農水産物 流通關聯事業者의 分類

加價值稅 등 國稅와 財產稅 등 대부분의 地方稅를 면제받고 있으며,仲買 人은 附加價值稅와 所得稅의 納稅義務를 진다. 한편 類似都賣市場은 都賣 機能을 담당하는 主體는 없고 個別商人이 그 機能을 代行하는 體系로서 事 業者形態로는 都賣業 登錄者가 소수 있어 이들은 所得稅를 納付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商人은 일정한 市場開設許可가 없는 장소에서 多數의 未登錄 事業者가 집단적으로 納稅하지 않고 營業活動에 종사하고 있다. 市場形 態別。業態別 稅種과 稅率은 〈表 6-2〉와 같다.

한편 稅率 및 課稅計算處理過程을 보면, 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과 稅率은 年間 180 萬원 이하일 때는 6%이며 이 때 累進控除額은 없다. 課稅標準은 180 萬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段階마다 일정한 累進率을 적용 하며 總 16 段階로서 最高 6,000 萬원 초과시에는 個人綜合所得稅의 累進 率은 55%이다 〈表 6-3〉.

또한 課稅計算處理過程을 보면 일정한 所得이 있는 사람은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을 결정받는다. 즉 당해 년도의 收入金額 總額에서 收入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경비와 所得特別控除를 하고 所得金額이 算出된다. 이 所得金額에 基礎配遇者 및 扶養家族 控除額으로 控除하면 비로소 課稅基準이 된다. 課稅基準은 바로 稅金을 부담하여야 할 課稅基準이 되는셈이다. 所得標準率 역시 國稅廳 所得標準率審議會에서 매년 결정하게 된다.이러한 所得標準率은 決定稅額을 算出해 내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標準率은 業態別・業種別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는데,都賣業에 대해서는 外形去來額을 기준으로 하여 그 率을 달리 적용하고 小賣業은 일률적으로 一定率을 적용한다. 仲介,委託販賣業 등의 적용구분은 外形去來額이 아닌手數料를 供給代價로 하여 3,400萬원 미만과 이상으로 그 率을 적용하고 있다.〈表 6 - 4〉。

나. 税制運用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① 税制運用上의 問題點

(才) 稅金計算書 作成不能

計算書 事務處理規定은 현재 우리나라 農水產物 流通構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시키고 있다. 이는 附加價值稅制의 실시에 따라 所得資料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制定된 것이다. 現行 計算書 事務處理規定에 의하 면 法定都實市場의 指定都賣人은 出荷者에게 計算書를 作成交付토록 되어

表 6 - 2 市場形態別・業態別 税種斗 税率

市場形態	法	都 賣 市	步	類似都賣市場
區分流通主體	指定都賣人	農水畜協共販場	仲 介 人	個人委託商
業 態	都	서 비 스	서 비 스	都・小賣, 小賣
計算書作成	出荷者・買入者를 밝히는	計算書作成		없 음
記帳義務	-	一記 帳 義 務 -		없 음
所得(法人)稅	法 人 稅	公 共 法 人 稅	所 得 稅	所 得 稅
法人(所得)稅率	課稅金額의 20 ~ 30 %	課稅金額의 5%	課稅金額의 6~55%	
稅 源	4	一稅 源 100% 露 出		稅 源 隐 蔽
防 衛 稅	法人税의 10~20%	中央會에서 一括 納付	所得税의 10~20%	所得稅의 10%
住 民 稅	法人税의 7.5%		所得稅의 7.5%	所得稅의 7.5%
			(課稅特例者),一般課稅	
			者는 年 5萬원(균등)	
附加價值稅	免 稅	発 稅	仲買手數料의 3.5%	없 음
			(課稅特例者)	
			仲買手數料의 10%	
			(一般課稅者)	

表 6-3 基 本 税 率 表

綜合所得稅課稅標準	稅		率	累進控除額
180 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 분의 6	
180 만원초과 250 만원이하	108,000 + 180 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8	36,000
250 만원초과 350 만원이하	164,000 + 250 "	"	100분의 10	86,000
350 만원초과 480 만원이하	264,000 + 350 "	"	100 분의 12	156,000
480 만원초과 630 만원이하	420,000 + 480 "	<i>''</i>	100분의 15	300,000
630 만원초과 800 만원이하	645,000 + 630 "	"	100 분의 18	489,000
80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	951,000 + 800 "	"	100 분의 21	729,000
1,000만원초과 1,250만원이하	1,371,000 + 1,000 "	"	100분의 24	1,029,000
1,250 만원초과 1,550 만원이하	1,971,000 + 1,250 "	"	100 분의 27	1,404,000
1,550 만원초과 1,900 만원이하	2,781,000 + 1,550 "	"	100 분의 31	2,024,000
1,900 만원초과 2,300 만원이하	3,866,000 + 1,900 "	<i>"</i>	100분의 35	2,784,000
2,300 만원초과 2,900 만원이하	5,266,000 + 2,300 "	"	100 분의 39	3,704,000
2,900 만원초과 3,700 만원이하	7,606,000 + 2,900 "	"	100 분의 43	4,864,000
3,700 만원초과 4,700 만원이하	11,046,000 + 3,700 "	<i>"</i>	100분의 47	6,344,000
4,700 만원초과 6,000 만원이하	15,746,000 + 4,700 "	"	100분의 51	8,224,000
6,000 만원초과	22,376,000 + 6,000 "	"	100분의 55	10,624,000

※ 세율적용방법

과세표준이 3,854,000일 때

1) 1법 264,000 + (354,000 × 12/100) = 306,480(원), 2) 2법(3,854,000 × 12/100) - 156,000 = 306,480원

资料:弘文館,「稅法全集」.

表 6-4 所 得 標 準 率, 1982年度分

都賣業・農産物	都	翼業	٠	農	產物
---------	---	----	---	---	----

		T- 1/9			
種	目	區 分	適用區分	82基 本率	準用種目 및 適用範圍
穀	物	쌀	6,000 만원미만	2	政府放出米 포함
		其 他	// 이상 // 미만	2.2	강남콩
			// 이상	2.4	
家	畜		// 미만	3	家畜 및 家禽
			<i>"</i> 이상	3.3	
<u> </u>	기	고기 副産物	// 미만	3.5	食肉副產物
			" 이상	3.8	
			// 미만	4	소, 돼지, 닭 등의 食肉
			∥ 이상	4.4	·
海產	物 및	生 鮮	# 미만	4.8	
민물.	7 7		// 이상	5.2	
L E -		其 他	// 미만	6	젓갈, 乾魚物, 海藻類 등
			// 이상	6.6	,
果實및	菜蔬	果 實	# 미만	4	사과, 배, 복숭아, 귤, 감, 배, 호두
			" 이상	4.4	잣 등의 果實
			// 미만	4.7	무우, 배추, 시금치 등 菜蔬
		<u> </u>	// 이상	5.1	

小賣業・飲食料品

種目	區 分	適用區分	82基 本率	準用種目 및 適用範圍
穀 物			3.7	쌀,보리,콩,참깨 등의 穀食 (政府放出米 포함)
고 기	包 裝 肉 (輸入쇠고기)		5.5	소, 돼지, 닭고기 등 食肉
副産物 및 リ 물 고 기	生 其 他		5.5 8	
果實以茶蔬			7	마늘, 고추, 땅콩 등

仲介・委託販賣

其他仲介業	梅	產	物	3,400 만원미만	29	
	青	果	物	// 이상 // 미만	31.9 27	
	FFI .	木	100	// 이상		
	家		畜	// 미만	29	
				// 이상	31.9	
委託販賣	海	產	物	# 미만	27	
	ļ			// 이상	29.7	
	靑	果	物	// 미만	33	
				// 이상	36.3	
	其		他	// 미만	35	
				<i>॥</i> 이상	38.5	

있으며, 仲買人은 買入者를 밝히는 計算書를 作成交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類似都寶市場의 個人委託商은 計算書의 作成·交付義務가 없다.

이와 같은 計算書 處理過程은 農水產物의 流通秩序를 와해시키거나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例를 流通段階別로 보면 첫째,都 賣市場에 上場하는 者가 事業者인지 生產者인지 그 區分이 어렵다. 또한 구분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事業者 登錄證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심지어는 住民登錄證 조차 휴대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類似都賣市場이 共存하기 때문에 法定都賣市場에서만 강력히 要求할 경우 자연 類似都賣市場을 택하게된다.

둘째,都賣市場을 경유하는 경우 仲買人段階까지는 計算書의 作成 및 交付가 가능하나,小賣段階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去來相對方이 行商,座商,구멍가게 등으로 事業者登錄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仲買人이 이들에게 物件을 판매할 때는 그 所在地,商號,事業者登錄番號,이름 등을 指定都賣人에게 告知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類似都賣市場의 都賣商들은 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부분의 小賣商들은 稅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類似都賣市場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이러한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仲買人들은 여러가지 非合法的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指定都賣人이나 仲買人측에서 볼 때 都賣市場에 上場하는 件數가 많고 去來額이 소규모이고 小賣商이 많아 일일이 計算書를 作成 交付 하는데 많은 時間과 費用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현행 計算書 事務處理規定을 農水產物 流通從事者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計算書 處理規定이 오히려 小賣商들의 脫稅를 助長하고 法定都賣市場의 機能을 弱化시키고 있으며 그 반면 類似都賣市場을 번성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4) 附加價值稅制上의 問題點

附加價值稅는 最終 消費者에게 轉稼되는 間接稅이다. 都賣市場의 仲買 人중 課稅特例者의 경우 仲買手數料의 3.5%, 一般課稅者의 경우 10% 를 附加價值稅로 納付하고 있으나 類似都賣市場의 個人委託商의 경우 이 를 納付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稅制運用상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購買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예로서 買入者는 稅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法定都賣市場의 仲買人과의 去來를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法定都賣市場은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類似都賣市場이 번창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都賣市場에 上場되어 競賣된 금액은 仲買人이 仲介한 금액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仲買人의 去來金額 合計額은 都賣市場 委託販賣 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仲買人에 대한 推計調査決定(認定課稅)은 稅制의 운영상 모순을 나타낸 것이며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

農水產物의 小賣業을 담당하고 있는 綜合直賣店,水產物直賣店,畜產物直賣店,糧穀直賣店 등은 手數料 事業者이다. 일부 水產物直賣店을 제외한 대부분의 農畜水協直賣店은 課稅特例者이면서 附加價值稅 納付 의무자이다. 이들에 대한 附加價值稅와 所得稅의 申告·納付時 所得金額에 대한 확정은 각 共販場에서 발행하는 手數料에 대한 確認證만으로 所得金額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自動賦課率 등을 적용함은 根據課稅主義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仲買人의 課稅特例 限度의 問題

현행 稅制에 의하면 法定都賣市場 및 農畜水協共販場의 仲買人의 경우 년간 手數料收入이 600萬원 이하일 때는 課稅特例者이고 그 이상일 때는 一般課稅者이다.

이와 같이 課稅特例限度額이 600萬원이하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課稅特例限度額을 초과할 경우 計算書 作成義務 및 附加價值稅,所得稅, 住民稅,防衛稅 등 租稅負擔의 증가로 인하여 仲買人은 그 限度額內에서 만 法定都賣市場에서의 去來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課稅特例限度額이 초과될 경우에는 計算書作成義務 및 租稅負擔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類似都實市場과 去來를 하고 있으므로 流通秩序는 파괴되고 類似都實市場을 비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 税制改善方案

(가) 計算書事務處理規程

農水產物은 生產者인 農。漁民의 손을 떠나 最終消費者에 이르기까지는 收集,價格決定,配分 등의 機能이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事業者가 있게 되고 財貨의 所有權移轉에 따른 處理規定이 따른다.

이에 대한 그 대표적인 規程은 計算書事務處理規程 第 11 條로서 生產者 指定都賣人, 仲買人, 都賣人 및 小賣人과 連緊되어 財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실정은 小賣段階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고 특히 靑果物은 더욱 그러하므로 仲買人에서 小賣段階에 이르 는 부분은 상당 기간 유보하거나, 規程에 의한 대로 仲買人을 供給받는 者로 하더라도 買取事業者로 간주하여 推計決定하는 것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稅務次元에서 조절토록 하는 것보다 都賣市場 管理· 감독 차원에서 해결토록 하여야 되리라 본다. 현 法定都賣市場은 類似都賣市場과兩立하고 있으며 더우기 類似都賣市場의 市場占有率이 상당히 높으며, 法定都賣市場의 經路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현상을 불식 내지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山) 仲買人의 課稅特例限度의 改正

년간 外形去來額을 기준으로 하여 一般課稅者와 課稅特例者로 구분하고 있다. 都賣業은 원칙적으로 一般課稅者이며 課稅特例者가 될 수 없고, 農水產物 小賣業 종사자는 水產物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課稅特例 者이다. 또한 仲介, 代理, 委託販賣業은 年間 去來額이 600萬원 이하일 때는 課稅特例者이고, 그 이상일 때는 一般課稅者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仲買人에 대한 課稅特例限度額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그 이상의 去來를 할 때에는 類似都實市場과 去來를 하여 稅源 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課稅特例限度額을 上向調整하여 法定都賣市場의 機 能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 稅源의 調整

農水產物流通에 있어서 類似都賣市場의 都賣業者와 一般小賣業者를 제외한 대부분의 事業者는 一定料率의 手數料를 收入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收入에 대한 稅源은 事業에 대한 所得,附加價值에 대한 所得 등으로 區分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法定都賣市場과 관련된 事業者에 대해서는 法人稅나 所得稅 등을 부과할 때는 一定率의 手數料만을 收入 또는 所得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類似都賣市場과 관련된 事業者는 事業所得을 그 稅源으로 하여야 될 것이다. 農水產物의 都賣나 小賣에 참여하는 事業者는 동일한 課標報告의의무를 지우든가 아니면 法的拘束力이 미약한 類似業者와 동일하게 課標報告의 업무를 완화하는 조치가 바로 公正去來를 形成케 하는 지름길이될 것이다.

(라) 稅率의 引下

農水產物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며, 그 價格은 日,季節,時間에 따라 그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그 폭 또한 극심하다. 따라서 流通從事者의 損益에 대한 예상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生必品에 대한 稅金은 價格에 파급되어 消費者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되므로 國民厚生의 증대 효과를 고려할 때 流通關聯事業者에 대한 租稅는 가능한 單純化하고 그 稅 率은 國民皆稅原則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農水產物 指定都賣人은 事業의 규모면에서 볼 때 대부분 中小企業에 속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어 中小企業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中小企業이 받고 있는 혜택과 동등하게 稅率을 下向 調整해야 할 것이다.

附録

可樂洞農水産物綜合都賣市場의 事業推進 經緯

1977.11.11: IBRD의 農水産物 流通借款事業 推進과 關聯하여 政府와 IBRD間에 農水産物 綜合流通計劃 및 制度改善計劃作成에 合議

1977.11.28: IBRD의 農水産物 流通借款案 國會同意(40百萬달러)

1977.12.27:第54次 經濟長官 協議會에서 同借款 事業計劃을 일부 수 정하는데 의결, 즉 農水產物 共販場 建設計劃을 農水產物 綜合都賣 市場建設로 變更

1977.12.28:서울市는 江南區 일부 지역을 用途指定 지적고시함

1978. 2.14 : 建設豫定敷地의 地價鑑定 의뢰

1978.3.9: 서울市와 韓國開發硏究院과 同事業計劃 및 妥當性調査 用 役契約締結

1978. 4.15 : 第 21 次 經濟長官協議會에서 經濟企劃院 次官 주재로 각 부 처 實務者會議에서 구체적 設置方案 작성토록함

1978. 6.10 ~ 7.15 : FAO 技術支援團 來韓하여 事業計劃書準備作業 협조

1978.7 : 韓國開發硏究院 事業計劃書 完成

1978. 9.10 ~ 10.19: I BRD 豫備評價查調團 來韓하여 事業內容補完 및 追加調査 必要性 지적

1978.10.13:關係機關 및 IBRD 間 合同會議

1978.11.13 : IBRD 農水產物 流通借款 修正案國會同意 (50 百萬달러)

1978.11.20:經濟企劃院次官 주재로 綜合都賣市場建設 推進에 對한 關係機關 協議會 開催

- 敷地選定 및 買入:서울市가 農水產部와 協議하여 買入함 (程特豫算 10억위 지원)
- 運營主體 및 借款主體:事業計劃을 보다 研究發展시켜 확정함
- IBRD의 追加 補完調查事業은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주관하 여 기관별로 담당실시
- 1978.12.26 :서울市는 서울市 告示 687 號로 江南區 可樂洞의 156 千坪 을 流通設備地域으로 告示
- 1978.12 : 政府支援(糧特豫算) 10 억원으로 제 1 후보지 14,470 坪을 996 百萬위에 1 次 買入(68,828위/坪)
- 1979. 1.16 : 事業主管은 政府, 서울市는 政府計劃 執行만 담당토록 요청 1979. 2.5 : 國務總理(行政調整室)本 事業計劃 재검토 指示
 -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建設計劃에 대해 서울市가 많은 문제 점 제기
 - 一 交通分散施策斗 都賣市場의 大單位化 綜合化 計劃의 問題點
 - 農水協으로 하여금 同事業을 主管, 運營시키는 문제
- 1979. 2.16: 關係機關 實務者會議 開催
 - 農政次官補, 國務總理 第2行政調整室, 서울市 關係局長 参席
 - 事業主體, 運營方法 등 기본 사항은 部處間 政策決定 次元에 서 결정
- 1979. 2.25 : UNDP支援에 의한 流通專門家 來韓
- 1979.3.6: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建設 事業推進,農水產部 長官州 보고
- 1979. 2.18 ~ 3.14: 中間調査事項 및 事業推進 方向을 協議하기 위해 I BRD Mission Leader Berman氏 來韓
- 1979. 8. 6 : 第 20 次 經濟長官 協議會에서 事業推進 方針決定
 - 事業主體:서울市
 - 一 資金負擔:總 52,041 百萬兒(政府 45 %)
- 1979. 9.20 : IBRD 使節團 來韓하여 事業推進 專擔機構의 설치와 市場物動量 및 交通量 調査요구
- 1979.11.17 : 서울市告示 473 號로 流通業務 設備 指摘 承認告示

1979.12. 1 ~ 1980. 6.30 : 韓國農村經濟硏究院에 市場規模決定을 위한 物動量과 交通量調査 및 經濟性 검토를 위한 用役發注

1980. 2.14 ~ 2.21: IBRD 協議團來韓

1980.3.4:韓國農村經濟研究院 第1次 中間報告

1980. 4.22:韓國農村經濟研究院 第1次 中間報告를 근거로 綜合都賣市 場建設計劃 樹立

- 敷 地: 166,433坪

- 建 物: 58,000 坪

- 投資所要: 59,420 百萬원(糧穀제외)

1980.5.3: IBRD 使節團 來韓

一 都賣市場 建設計劃 檢討

- 借款協定을 위한 最終評價 協議

1980.5.14~9.30: 市場建設 基本計劃 및 基本設計

1980. 6.20: IBRD 使節團來韓, 基本計劃 및 基本設計에 따른 協議

1980. 6.26 : 한양엔지니어링 施設配置計劃과 交通計劃, 交通體系 改善에 관한 分科委員會 開催

1980. 6.30: 市場代表者 會議開催

1980. 7. 2 ~ 7.23 : 市場 實務代表者 意見聽取,建築審議會에 회부 심의

1980.8.8:建設專擔機構 설치

1980. 8.17: 하양엔지니어링, IBRD지정 외국자문회사와 協議

1980.8.20~8.26: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建設 小委員會 회부,심의

1980.10.28:基本設計 確定에 따라 綜合都賣市場 建設計劃 修正(案) 作成

- 敷地面積: 165,547 坪

- 建物面積: 59,510 坪

- 投資所要: 75,404 百萬위 (양곡제외)

1980.11.1~11.13: IBRD 技術評價團 來韓 基本計劃 및 基本設計 결과 에 대한 技術評價

1980.11.25 : 建設實施設計 用役發注(주, 한양엔지니어링)

1980.12.26 : 市場建設 新築 1 次工事發注(주, 한양주택)

1981. 2. 4:綜合都賣市場內 食肉市場 設置方針 決定

1981. 2 :都市計劃用涂地域 變更告示(建設部)

1981. 2.20 ~ 2.28 : IBRD 事業最終評價 準備團來韓

1981. 5. 4 ~ 5.30 : IBRD 最終事業評價 실시

1981. 5.18 ~ 12.31 :新築 第 2 次 工事發注(주, 한양주택)

1981.11.16~12.15:國際入札 參加資格審查 申請書 接受

1981.12.17: 入札參加資格 審査

1982. 2. 8 ~ 2.12 : 借款協定 最終協議(위상돈)

1982. 3. 6:新築工事 入札實施(落札者:주,한양주택)

1982. 4. 5 : IBRD 借款 協定締結(借款金額: 50 百萬달러)

1982. 4.13 : 新築工事 都給契約 締結(주, 한양주택)

- 契約金額: 34,549,900 千원

- 工事期間:契約日로早日 24 個月

1982。7.10:食肉市場과 屠畜場 併設方針 決定

1982.8.6:借款協定 發効

1982.10.30: 市場管理公社 設立推進委員會 구성

1983. 2.12:市場管理公社 實務推進班 구성

1983. 7. 1: 借款協定 修正

1983. 8.25 :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運營協議會 設置

1984.4.10: 서울市 農水産物 都賣市場管理公社 設立認可(設置條例 및 定款承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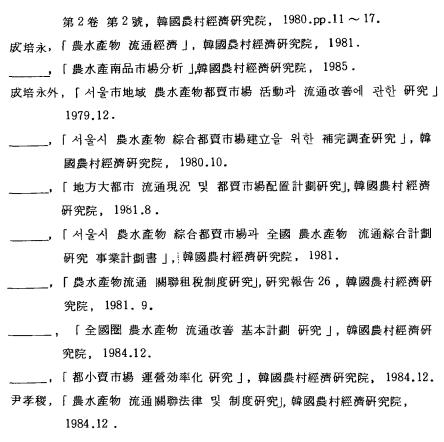
1984. 5.29: 付号市 農水産物 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任命(農水産部 第 2 次官補 金東俊)

1984.11.27: 大統領에게 業務推進狀況 報告

1985. 6.19: 可樂洞 農水產物 都賣市場 開場

參 考 文 獻

權元達,「農產物 流通論」,先進文化社,1983.
金成勳, "流通의 經濟學", 「行政情報」(4)
1982. 6. pp $105 \sim 108$.
, 「農產物 流通近代化의 展開方向」, 1979.8.
金正璂, "農產物流通 關聯稅法斗 流通助成機能",
「農村經濟」第3卷 第3號,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0.9.
農水產部,「農政主要指標」, 1985.
,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令集 」, 1983. 5.
, 「可樂洞 都賣市場運營推進委員會 會議資料」,1985.
, 「公營都賣市場 活性化를 위한 稅制 改善方案 」, 1985.
農漁村開發公社,「農水產物 都賣市場便覽」, 1984.7.
, [農水產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解說], 1984.11.
農協中央會,「農水產物 流通改善의 課題斗 方向」, 1984.
大韓商工會議所,「流通近代化의 推進方向」,1978.11.
徐箕源外,「農水產物의 產地流通斗 農協販賣事業强化研究」, 韓國農村經
濟研究院,農協中央會調査部,1984.12.
서울特別市, [首都圈 綜合交通計劃 樹立을 위한 調査硏究], 1978.1.
,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運營計劃」,1984.3.
서울特別市 農水產物都賣市場 管理公社,「社規集」, 1985.
, 「 業務推進狀況 報告 」, 1985.
成培永, "經濟成長斗 農水產物 流通改善", 「農村經濟」第1卷 第3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1978.pp20 ~ 27.
, "先進國 農水產物 流通制度의 비교고찰", 「農村經濟」



- 鄭燦吉外,「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運營方案」,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10.
- 崔基元, 「商法學概論」, 博英社, 1984.
- 韓國開發研究院, 「서울綜合都賣市場 事業計劃」, 1978. 7.
- 韓國農村經濟研究院,「서울市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斗 全國農水產物 流 通綜合計劃研究事業計劃書 |, 1981.1.
- 韓國產業經濟研究院,「 서울特別市 可樂洞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運營方案 研究 」, 1983.10。
- 韓國食品流通學會,「農水產物都賣市場 運營改善을 위한 調査研究」, 1984.12.
- 弘文舘、「稅法全書 | .

農林水産省 食品流通局市場課,「卸賣市場の現狀と課題」, 1983.9.

農業と經濟,「卸賣市場の今日的課題と對策」, 1983.10.

山本博信,「生鮮食料品の流通」,大成出版社。1984。

大阪府中央卸賣市場, 「大阪府 中央卸賣市場 關係法令集」, 1983.

卸賣市場法研究會,「卸賣市場法 解說」,大成出版社, 1984.

卸賣市場法研究會,「市場流通要覧」,大成出版社、1984。

森祐二, 「トギユメソト青果物市場」, 家の光協會, 1983.

秋谷重男, 「中央卸賣市場"セリ"の功罪」, 日本經濟新聞社, 1981.

- Brain, H.R., Improving the Wholesale Marketing of Locally Grown Vagetables in the Niagra Frontier Region, Cornell Univ., Apr., 1981.
- Brauson R, & D. Norvell,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Marketing

 McGraw Hill. 1983.
- FAO, [Food Marketing in Asian Countries, Bangkok, 1983.
- Kaynak E, & R. Savitt, Comparative Marketing System, Praeger Publishers, 1984.
- KDI, Korea First Urban Wholesale Markets Project, July, 1979.
- Knuston, R.D., J.B. Penn & W.T. Boehn,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Prentice-Hall, Inc., 1983.
- PaarLeberg . D, Farm and Food Policy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1980 .
- Rhodes, V, The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GRID, 1978.
- USDA, "New York City Wholesale Fresh Fruit and Vegetables Market ", Marketing Research Report 389, Washington.D.C.1960.
- Waite, W.C, Food Marketing and Economic Growth, OECD, Paris, 1970.

研究報告 100 農水産物 都賣市場 活性化 方案

1985년 12월

發行人 金 築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③ □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 - 102登録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2~5

印刷 (株) 文 苑 社

無斷 複製斗 轉載量 殿禁計